

연구보고서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Support for the Socially Excluded toward Social Integration

The Dynamics and Multipl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김안나 · 노대명 · 김미숙 · 신호성
홍인옥 · 김태완 · 강민희 · 이소정
원일 · 윤필경 · 유정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8-10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김안나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인쇄처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예원기획
가격	9,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495-7 93330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적 배제현상의 심화와 계층 간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 계층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촉진시켰고 사회통합의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연합(EU) 등은 다양한 빈곤집단과 사회적 차별현상에 대한 정책적 극복을 위해 사회적 배제의 실태 파악과 국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정책적으로 국가별 사회적 배제 현상의 극복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목표와 이에 따른 국가별 행동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유럽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 국가에 다양한 빈곤현상 및 차별계층에 대해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배제론적 접근은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 수행되어 온 기존의 배제 관련 연구들이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과 한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둔 경험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즉 소득, 근로,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제의 실태 및 배제화의 과정에 기반한 동태적 분석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전통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해 소득빈곤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내부 구성과 배제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안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노대명 연구위원, 김미숙 연구위원, 신호성 연구위원, 김태완 연구위원, 강민희 연구위원, 이소정 연구위원, 원 일 연구원, 윤필경 연구원, 유정예 연구원과 한국도시연구소의 홍인옥 박사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방대한 내용의 연구와 분석결과에 대해 많은 자문을 주신 신광영 교수, 김호기 교수, 장세훈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원내에서 많은 조언을 주신 김수봉 연구위원과 강신욱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본 연구가 향후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연구에 기본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목 차

Abstract	17
요 약	19
제1장 서 론	26
제1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연구의 필요성	26
제2절 연구의 내용	27
제3절 연구의 구성	30
제1부: 이론적 개요	35
제2장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	37
제1절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37
제2절 사회적 배제 접근의 방법론적 특징과 측정의 의의	50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57
제1절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의 선행 연구	57
제2절 지표 소개	65
제3절 분석자료	69
제2부: 영역별 접근	73
제4장 소득빈곤과 사회적 배제	75
제1절 서론	75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77
제3절 소득빈곤과 사회적 배제 측정지표	80
제4절 분석결과	87
제5절 소결	103

제5장 노동과 사회적 배제	105
제1절 들어가며	105
제2절 이론적 검토	106
제3절 지표의 구성과 조작적 정의	113
제4절 분석결과	123
제5절 소결	130
제6장 의료와 사회적 배제	133
제1절 서론	133
제2절 이론적 배경	135
제3절 건강영역 지표 선정	137
제4절 분석결과	143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48
제7장 주거와 사회적 배제	150
제1절 서론	150
제2절 주거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1
제3절 주거와 사회적 배제 지표소개	157
제4절 정책적 개선방안	166
제3부: 대상별 접근	169
제8장 노인과 사회적 배제	171
제1절 서론	171
제2절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2
제3절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 소개	175
제4절 노인과 사회적 배제	179
제5절 사회적 배제 노인계층을 위한 지원방안	211

제9장 장애인과 사회적 배제	214
제1절 서론	214
제2절 이론적 검토	215
제3절 지표의 구성과 측정	220
제4절 지표의 분석	221
제5절 정책적 제언	256
제10장 아동과 사회적 배제	260
제1절 서론	260
제2절 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261
제3절 아동의 사회적 배제 실태	263
제4절 정책적 제언	306
제11장 결 론	308
참고문헌	314

표 목 차

〈표 2- 1〉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구분	45
〈표 2- 2〉 사회통합 국가의 구조	52
〈표 3- 1〉 Bradshaw et al의 사회적 배제 지표	58
〈표 3- 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 · 60	
〈표 3- 3〉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2003년 수정-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 62	
〈표 4- 1〉 소득관련 선행연구 분석지표	81
〈표 4- 2〉 소득관련 분석지표	82
〈표 4- 3〉 소득보장영역의 핵심지표(전가구기준)	88
〈표 4- 4〉 가구주 성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 89	
〈표 4- 5〉 가구주 성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 89	
〈표 4- 6〉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90	
〈표 4- 7〉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 91	
〈표 4- 8〉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92	
〈표 4- 9〉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93	
〈표 4-10〉 가구유형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 94	
〈표 4-11〉 가구유형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 94	
〈표 4-12〉 소득종류별 빈곤율(전가구기준, 최저생계비기준)	96
〈표 4-13〉 소득종류별 빈곤율(전가구기준, 중위소득)	96
〈표 4-14〉 소득종류별 가구주 성별 빈곤율(전가구기준, 중위소득) ····· 97	
〈표 4-15〉 빈곤 수준별 빈곤지표 변화(전가구, 가처분소득기준) ····· 98	
〈표 4-16〉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99
〈표 4-17〉 소득종류별 지니계수(전가구기준)	99

〈표 4-18〉 빈곤지속성 I (전가구: 가구기준)	101
〈표 4-19〉 빈곤지속성 II (전가구: 가구기준)	101
〈표 4-20〉 OECD주요국가 동태적 빈곤(중위 50%, 경상소득)	102
〈표 5- 1〉 노동관련 사회적 배제지표의 구성	113
〈표 5- 2〉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지표 기본안	115
〈표 5- 3〉 검토가 필요한 지표안	117
〈표 5- 4〉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최종 지표	119
〈표 5- 5〉 지표의 조작적 정의	121
〈표 5- 6〉 지표측정을 위한 데이터	122
〈표 5- 7〉 성별 고용률 추이(1주 기준)	123
〈표 5- 8〉 연령별 고용률 추이	124
〈표 5- 9〉 성별 실업률 추이(1주 기준)	125
〈표 5-10〉 연령별 실업률 추이	126
〈표 5-11〉 저임금근로자 추이	127
〈표 5-12〉 비정규직근로자 추이	128
〈표 5-13〉 취업빈곤층 비율	129
〈표 5-1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130
〈표 6- 1〉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배제의 건강영역지표	138
〈표 6- 2〉 암종류별 검진 대상자 및 검진주기	141
〈표 6- 3〉 사회적 배제 건강영역 지표(핵심지표)	142
〈표 6- 4〉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미충족의료	144
〈표 6- 5〉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규범적 의료이용 여부	145
〈표 6- 6〉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146
〈표 6- 7〉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계조사)	147
〈표 6- 8〉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한 건강영역 배제 지표	148
〈표 7- 1〉 사회적 배제 중 주거빈곤 지표	155

<표 7- 2> 주거권 지표 구성안	156
<표 7- 3> 주거부문 사회적 배제지표 구성안	158
<표 7-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160
<표 7- 5> 시설기준 항목별 미달가구 규모 추이	161
<표 7- 6> 3인 이상 방 한 칸 거주가구수 추이	161
<표 7- 7> 임대료 연체 및 연체의 부담으로 인한 주거이동 경험여부	162
<표 7- 8> 쪽방 수 변화추이	165
<표 8- 1>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	175
<표 8- 2> 고유지표의 조작적 정의	178
<표 8- 3> 독립변수 정의	179
<표 8- 4> 연령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180
<표 8- 5> 성별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181
<표 8- 6> 교육수준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182
<표 8- 7> 연령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183
<표 8- 8> 성별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184
<표 8- 9> 교육수준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185
<표 8-10> 소득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186
<표 8-11> 연령과 노동시장 배제	187
<표 8-12> 성별과 노동시장 배제	188
<표 8-13>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배제	189
<표 8-14> 노동시장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190
<표 8-15> 연령과 주거 배제	191
<표 8-16> 성별과 주거 배제	191
<표 8-17> 교육수준과 주거 배제	192
<표 8-18> 주거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193
<표 8-19> 연령과 건강 배제	194

<표 8-20> 성별과 건강 배제	195
<표 8-21> 교육수준과 건강 배제	196
<표 8-22> 건강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196
<표 8-23> 연령과 사회활동배제1(평생교육 기준)	197
<표 8-24> 성별과 사회활동배제1(평생교육 기준)	198
<표 8-25> 교육수준과 사회활동배제1(평생교육 기준)	199
<표 8-26> 연령과 사회활동배제2(사회참여 기준)	200
<표 8-27> 성별과 사회활동배제2(사회참여 기준)	201
<표 8-28> 교육수준과 사회활동배제2(사회참여 기준)	202
<표 8-29> 사회활동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203
<표 8-30> 연령과 관계적 배제1(가족관계 기준)	204
<표 8-31> 성별과 관계적 배제1(가족관계 기준)	205
<표 8-32> 교육수준과 관계적 배제1(가족관계 기준)	206
<표 8-33> 연령과 관계적 배제2(이웃친구관계 기준)	207
<표 8-34> 성별과 관계적 배제2(이웃친구관계 기준)	208
<표 8-35> 교육수준과 관계적 배제2(이웃친구관계 기준)	209
<표 8-36> 관계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210
<표 8-37> 노인과 영역별 사회적 배제	211
<표 9- 1> 지표의 구성영역과 선정지표	221
<표 9- 2> 소득영역(최저생계비)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23
<표 9- 3> 소득영역(중위소득 50%)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24
<표 9-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225
<표 9- 5> 소득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26

〈표 9- 6〉 노동영역(고용여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29
〈표 9- 7〉 노동영역(저소득)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30
〈표 9- 8〉 변수의 조작적 정의	231
〈표 9- 9〉 노동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32
〈표 9-10〉 주거영역(화장실 사용형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35
〈표 9-11〉 주거영역(임대료 연체여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36
〈표 9-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37
〈표 9-13〉 주거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38
〈표 9-14〉 의료영역(주관적 건강 상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40
〈표 9-15〉 의료영역(자부담 의료비)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41
〈표 9-16〉 변수의 조작적 정의	242
〈표 9-17〉 의료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43
〈표 9-18〉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교육수준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44
〈표 9-19〉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혼인상태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46

〈표 9-20〉 비장애인과 장애인가구의 가족유형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48
〈표 9-21〉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49
〈표 9-22〉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50
〈표 9-23〉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사회친분만족도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51
〈표 9-24〉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여가생활만족도 비교: 한국복지패널 1차 데이터	252
〈표 9-25〉 사회적 배제 영역별 장애인 연령 분포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254
〈표 10-1〉 아동의 사회적 배제 관련 선행연구	262
〈표 10-2〉 아동의 사회적 배제 측정지표	264
〈표 10-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영역(최저생계비)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266
〈표 10-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영역(최저생계비)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267
〈표 10-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영역(중위소득 50%)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268
〈표 10-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영역(중위소득 50%)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269
〈표 10-7〉 소득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270
〈표 10-8〉 소득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조사)	271
〈표 10-9〉 소득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차 조사) ..	272
〈표 10-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영역(고용여부)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274
〈표 10-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영역(고용여부)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275
〈표 10-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영역(중위임금 및 중위사업소득)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276
〈표 10-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영역(중위임금 및 중위사업소득)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277

〈표 10-14〉 노동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278
〈표 10-15〉 노동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조사)	279
〈표 10-16〉 노동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차 조사)	280
〈표 10-1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영역(단독수세식 화장실)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282
〈표 10-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영역(단독수세식 화장실)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283
〈표 10-1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영역(임대료 연체여부)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284
〈표 10-2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영역(임대료 연체여부)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285
〈표 10-21〉 주거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286
〈표 10-22〉 주거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조사)	287
〈표 10-23〉 주거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차 조사)	288
〈표 10-24〉 의료영역(주관적 건강 상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1차 조사)	290
〈표 10-25〉 의료영역(주관적 건강 상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2차 조사)	291
〈표 10-26〉 의료영역(자부담 의료비)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1차 조사)	292
〈표 10-27〉 의료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293

〈표 10-28〉 의료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조사)	295
〈표 10-29〉 의료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차 조사)	296
〈표 10-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교육비의 사회적 배제의 정도 (2차 조사) ·	298
〈표 10-31〉 사교육비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299
〈표 10-32〉 사교육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부가조사) ···	299
〈표 10-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학교생활적응도 사회적 배제의 정도 (1차 부가조사)	301
〈표 10-34〉 학교생활적응도 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02
〈표 10-35〉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차 부가조사) ·	302
〈표 10-3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존감 사회적 배제의 정도(1차 부가조사)	304
〈표 10-37〉 자존감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305
〈표 10-38〉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부가조사) ···	305

그림 목차

[그림 3-4] 영역별 사회적 배제 핵심 지표	67
[그림 3-5] 대상별 사회적 배제 핵심 지표 및 고유 지표	67
[그림 6-1] 건강, 빈곤, 사회적 배제의 상호관계	135
[그림 7-1] 사회적 배제와 주거문제의 관계	153

Abstract

A Study of Support for the Socially Excluded toward Social Integration

The Dynamics and Multipl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This study carries out detailed empirical analyses of the various groups and areas of social exclusion and thereb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The analyses cover not only poverty, the core of previous studies conducted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but also the many aspects_including work, health, and housing_of such socially excluded groups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children. In the process, this study goes over the welfare panel survey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and produces "core indicators" and "supplementary indicators" with which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social exclusion. The core indicators of each area are used further to analyze how each group is socially excluded and how devoid they are of various social resources. Based on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goes on to suggest ways in which each group and area of social exclusion can be supported for social integration.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 경제적 결핍에 집중한 기존의 빈곤개념은 최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근로빈곤층의 급증, 빈곤계층의 복합화)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임
 - 본 연구는 기존의 소득빈곤 차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 및 배제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과 다차원성에 기반한 배제의 현황 및 과정을 파악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내부 구성과 배제의 동태적 과정을 연구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배제 영역 및 대상에 대한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사회적 배제로의 추락과 탈출을 연구하는 배제화 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시도할 것임
 -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효과, 배제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담론

- 사회적 배제 개념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란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

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으로 봄

- 따라서 유럽연합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활동 등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계의 결핍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함

□ 사회적 배제 개념의 방법론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빈곤문제를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함. 둘째,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복합적·가변적·상호작용적·중층적이므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셋째, 기존의 분배적 시각으로부터 사람들 사이의 (사회) 관계적 접근방식으로 초점을 이동시킴

□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사회적 배제 개념은 분석의 지평을 확장하고 보다 가치 지향적이면서도 개방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님

□ 또한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불평등과는 ‘동태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과의 비교우위를 유지함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사회적 배제지표의 영역별 핵심지표와 대상별 핵심지표 및 고유지표를 구성하여 분석시도

□ 영역별 핵심지표는 소득, 노동, 의료, 주거부문에서 제시됨

- 소득영역에서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여부로 핵심지표 구성
 - 노동에서는 고용여부와 저소득여부로 구성
 - 의료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과부담의료비로 구성
 - 주거에서는 단독수세식 사용여부, 임대료 여체여부로 구성
-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대상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지표 선정
- 노인의 사회적 배제 지표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노인 사회단체 참여여부,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6개월에 1회 이하 여부,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3개월에 1회 이하 여부’로 구성함
 -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지표로는 ‘교육수혜정도,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 사회생활에의 만족정도’로 구성함
 - 아동의 사회적 배제 지표로는 ‘07년 월평균 사교육비 22만원 미만 여부, 낮은 학교생활 적응도 평균 2.5 미만 여부, 낮은 자존감 평균 2.5 미만 여부’로 구성함
-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복지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 즉 2006년, 2007년 데이터를 통해 핵심지표를 측정하였음. 각 대상별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각 대상과 관련한 타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차 분석을 시도함.
- 사회문제의 오랜 주제인 소득, 노동, 의료, 주거 등의 영역과 대표적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별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 및 역동성 분석을 시도

4. 분석결과 및 정책제언

- 소득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 분석결과 2003년 이후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볼 때 시장소득의 불평등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지속성은 3년중 1년 이상 절대빈곤율 이하인 경우가 6~7%, 2년 이상 절대빈곤율 이하가 4% 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여전히 해당집단의 생활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현재 한국의 빈곤 및 소득분배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빈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구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노동부문에서의 사회적 배제 분석결과, 고용률의 경우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외환위기 이전 시점(1996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근로 비율이 매우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취업빈곤층의 증가속도가 빈곤율의 증가속도를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근로가능집단 중 상당수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점은 정부로 하여금 ‘감춰진’ 노동인구를 ‘현재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으로 연결됨
 -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는 결국 가구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향후의 빈곤정책은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요구함

- 현재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유연한 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의료부문에서의 사회적 배제에서는 소득과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4가지 건강영역의 불평등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건강영역의 의료적 배제가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중첩됨을 보여줌
 - 건강영역 배제지표의 개발과 함께 건강불평등을 해소/완화하는 정책들 간의 통합추진이 필요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개입들에 있어서 건강영역 배제의 주류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질병 예방프로그램의 추진보다 여러 질병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정책개입을 우선시하거나, 주택·교통·고용 등을 포함하는 다분야·다협력관계 방식이 요청됨
- 주거부문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으로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2000년에서 2005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저소득가구의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여전히 적절한 주거로부터 배제된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
 - 향후의 주거정책은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주거배제 계층(홈리스, 비닐하우스, 쪽방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주거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와 관련된 조사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일례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문항을 구체화하거나 별도의 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인대상에서의 사회적 배제에서는 연령(고령), 성별(여성), 교육(저학력)인 경우 다차원적 영역에서 배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인계층의 구조가 이질적임을 뜻하며,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도 노인내 특성에 따라 보다 예각화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함
 - 고령노인의 경우 향후 노인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지원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노인의 경우 노인주거정책, 건강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함
 - 교육변수는 다른 변인(소득, 직업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년기 복지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생애주기 전체에 확대되어야 함
- 장애인대상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4개의 핵심영역에서 장애인의 배제가 뚜렷이 나타나며 여성, 고령,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을수록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이에 대해 장애연금 등의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지급권,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생애주기를 통해 교육지원책이 필요하며 가사도우미지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 아동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제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핵심지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여성가구주, 고연령, 저학력, 한부모 및 기타가족 가구주로 파악됨. 반면 고유지표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아동집단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

이 속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여성가家主 및 소년
소녀가정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보충급여나 특별수당 등)이 보완되
어야함

- 아울러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지원 또한 필요함. 사회심
리적인 침체는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resilience(적응유
연성)를 낮추어 배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 결혼이민자 가구,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것은 연구
의 아쉬움으로 남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배제 계층
및 영역에 대한 세밀하고 분화된 경험적 연구결과는 다각적이고 중
합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리라 사료됨

제1장 서론

제1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연구의 필요성

1.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 및 배제 계층 연구의 필요성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 빈곤여성 가구주 등 전통적 빈곤 계층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빈곤계층의 등장과 함께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경제적 결핍에 집중한 기존의 빈곤개념은 최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노년기 빈곤층, 주거빈곤층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빈곤의 유형 및 사회적 차별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80년대 이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다양한 빈곤집단과 실태에 대해 사회적 배제현상이라 규정하고 이의 실태파악과 국제적 비교를 실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국가별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 수립을 통해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목표와 이에 따른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유럽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빈곤 및 차별계층에 대한 배제론적 접근은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패러다임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는 빈곤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는데 일조한 반면, 연구의 내용은 국가별 사회적 배제에 관한 기술적 분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취약계층 연구의 핵심을 이루던 소득 빈곤의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근로,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에서 한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과 다차원성에 기반한 배제의 현황 및 과정을 파악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제 대상 별 세부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소득, 근로,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배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배제로의 유입과 탈출 등 사회적 배제의 과정에 기반한 동태적 분석에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전통적으로 취약한 대상의 경우 소득빈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의 복합적 사회적 배제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영역 및 대상별 복합적 배제 현상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제 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1. 빈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배제 연구의 필요성

일단의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종의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배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차원에 이르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라 할 수 있다(박병현, 최선미 2001). 이는 기존의 경제적 빈곤에 집중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빈곤정책이 빈곤의 경제적인 관점 뿐 만이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통합적 빈곤정책의 개발이 시급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는데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기존 임금의 70%정도 만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해 갑자기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진 여성가장주 등은 금전적 결핍으로 인한 경제적 단절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단절하게 되는 사회적 격리 현상을 겪게 된다. 우리 사회가 특수하게 겪었던 외환위기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안겨 주었으며 이는 기존 경제적인 관점에 치중한 빈곤 개념 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복합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빈곤정책이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빈곤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빈곤의 확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배제의 내부 구성과 배제의 동태적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개념의 등장배경과 이론적 함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등을 살펴본다. 사회적 배제 개념과 영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과 대상에 대한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기초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의 평면적 분석에서 벗어나 배제로의 추락과 탈출을 연구하는 배제화 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배제의 내부 구성과 배제화 과정을 기초로 배제의 원인과 효과,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유럽연합 등 기존의 사회적 배제 연구는 소득,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적 배제의 발생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인식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접근 역시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배제의 영역 뿐 만이 아니라 배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집단에도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황 또한 파악할 것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별 지표뿐 만이 아니라 세분화된 대상별 지표를 생산하여 배제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시도한다. 먼저 소득, 노동, 주거, 의료 등 배제의 영역별 분석과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대상별 분석을 바탕으로 각 영역과 대상에 대한 세분화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생산하고자 한다. 각 영역별 분석에서는 영역별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배제 영역별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그 외 중요하게 나타나는 각 영역별 배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별 분석에서는 영역에서 제시한 각각의 핵심지표를 우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대상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대상 각각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사회 문제적 상황에 대한 측정을 통해 대상 각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특수한 영역 또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영역과 대상을 측정하기 위해 생산된 지표를 기초로 측정한 사회적 배제 현황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대상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 계층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문제 영역의 오랜 주제인 소득, 노동, 의료, 주거 분야와 이러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하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바탕으로 배제 현상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다.

이론적 개요에 해당하는 제1부에서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2장)를 검토한다.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이후 유럽연합에 의해 사회적 배제 개념이 채택되고 확산된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일반적 적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다양한 쟁점 사안들,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방식과 여타 개념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 정의를 기초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특징과 지표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 및 분석지표를 소개한다. 먼저 유럽연합 등 사회적 배제 지표 개발을 시도했던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각 영역과 대상을 소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선정의 원칙을 살펴본다. 이후 각각의 사회적 배제 영역과 대상 분석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는데, 지표선정에서는 영역·대상별 핵심지표와 세부지표를 소개한다. 각 영역별 핵심지표는 차후 대상별 배제 측정에서 다양한 배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상들의 대표적 배제 실태를 측정하는데 그 기초가 된다. 각각의 세부지표들은 배제의 영역과 대상에서 각 분야별 특수한 배제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측정지표로서 고려되어 진다.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기 위한 일차자료분석(primary data analysis)이 불가능한 현실

에서 사회적 배제의 동태성 분석을 하기 위한 시도는 더욱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사회적 배제 관련 영역과 대상의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차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을 시도하는데 연구에 사용된 대표적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복지패널이다.

제2부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별 접근을 시도해 본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문제 영역인 빈곤과 노동시장, 주거, 의료 영역의 배제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이 집중했던 횡단적 분석에서 나아가 사회적 배제의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는데 주력하였다. 4장 소득영역의 사회적 배제에서는 빈곤의 동태성, 역동성에 주목하여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친 빈곤율, 지니계수의 변화 등 빈곤과 분배지표의 변화를 토대로 경제적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영역의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5장 노동영역의 사회적 배제에서는 취업여부와 임금과 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속하는 경우를 노동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노동영역에서의 특수한 배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영역의 고유지표를 소개하면서 2006년과 2007년 복지패널데이터와 경찰자료 등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6장 의료영역의 사회적 배제에서는 의료비과부담, 주관적 건강상태 등 건강 영역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해 1998년에서 2005년까지 3년 주기로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각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7장 주거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고용, 건강 등 타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영역으로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과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주거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측정하고자 한다. 주거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측정은 복지패널자료를 주된 자료로 분석하되 기타 주거배제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주거배제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제3부 대상별 접근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가장 첨예하게 대면하고 있는 대표적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소득, 노동, 의료, 주거 영역에서 제시한 핵심 지표들에 대한 대상별 분석을 중심으로 대상별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후 각 대상별로 고유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 현황 파악을 위해 대상 별 고유지표들을 분석한다. 8장 노인의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나 사회단체 참여여부를 통한 사회활동의 배제, 가족 및 친척, 친구와의 접촉빈도를 기초로 측정된 관계적 배제 등이 고유지표로 제시되어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9장 장애인의 경우 특히 기존 연구들이 장애인의 빈곤이나 저소득에 집중된 만큼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대면하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격리가 빈곤의 문제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분석은 시급히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앞서 제기한 사회적 배제 영역의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소득, 노동, 의료, 주거 영역의 다차원적인 배제 현상을 살펴보고 장애인 대상 배제의 고유지표들을 이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장애인 특유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고유지표는 교육수혜정도,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사회참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지막 10장에서는 거의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되고 공급자인 성인의 시각에서 복지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사회적 배제 분석을 시도한다. 아동은 특히 성인에 비해 낮은 사회적 지위뿐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바, 본 장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 장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경우 우선 각 영역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들을 기초로 아동가구의

가구 현황이나 아동가구 가구주의 고용상태 등에 대한 배제 영역별 분석을 시도한다. 아동의 경우 특히 교육부분에서의 배제를 중심으로 고유 지표를 제시하는데 사교육비, 학교생활적응도와 낮은 자존감 등으로 고유한 아동의 사회적 배제 영역을 분석하고 있다.

제 1 부: 이론적 개요

제2장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

제1절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배제 논의의 등장 배경

가. 사회적 배제 논의의 공론화

사회적 배제 논의의 시초는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한 형태로 사회적 배제를 이해한 막스 베버(Max Weber)에서 유래하였다. 한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하였다.(BLP, 2002; 문진영, 2004) 막스 베버의 언급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프랑스의 정치관료들에 의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1960년대 당시 경제기획성의 책임자였던 피에르 마세(Peirre Masse)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를 사용하였다. 프랑스에서 국가의 행정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the socially excluded)로 지칭하면서 최초로 공론화¹⁾되었다.

이후 1980년대를 지나면서 프랑스는 앞서 개념정의에서 확인하였던 기술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신빈곤’ 현상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의 대두, 사회적 유대의 약화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빈곤과 독립적인 개

1) 이러한 논의는 1974년 시라크 정부의 사회부 장관이었던 르네 르노와르(Rene Lenoir)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는 저작 *Les Exclus, un Francais sur Dix*에서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 자포자기한 사람들, 장애노인, 학대받는 아동, 약물중독자, 문제가정 등을 지칭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배제집단은 프랑스 인구의 약 10%라고 주장하였다.

념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간주하게 되었다(강신욱·김안나 외, 2005).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개인이나 집단간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상호몰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되었고, 연령, 성, 인종, 공간적 의미의 배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은 경제적 차원의 빈곤개념을 다소 확장한 것(1970년대)으로부터, 결과로서의 빈곤에서 과정으로서의 사회적 배제로 초점이 전환되고(1980년대), 이후 사회적 차원의 주요 이슈집단들의 사회적 배제 양상과 과정에 대한 관심(1990년대 이후)으로 변화되었다.

나.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개념 수용 과정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관심은 1970년대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980년대를 전후로 빈곤 및 실업이 증가하는 양상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공통된 현상이었으며, 더욱이 세계화의 물결은 기존의 현금이전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경기침체의 시기에 실업이 장기화되고 감소하던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면서 대규모의 장기실업과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는 수많은 근로빈곤층들, 노숙자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가 등장하면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기 시작했다(박병현·최선미, 2001: 191-192).

1970년대의 성장과 1980~1990년대의 빈곤 및 실업증가 경향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통된 현상이었다. 통합 논의가 진전되고 있었던 유럽에서는 단일한 시장 건설을 위해 사회적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 사회정책이 구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가 핵심적 정책개념으로 제시되었다(강신욱, 2006: 12).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유럽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회원국 간의 정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사회적 배제 철폐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사회적 배제 용어가 처음 사용된 유럽사회헌장(The European Social Charter, 1989)과 사회적 배제 철폐를 유럽연합의 추구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한 암스텔담 조약(The Amsterdam Treaty, 1997),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유럽사회모델의 중심요소로 규정하고 사회적 지표개발에 합의한 리스본 정상회담(The Lisbon European Summit, 2000), 그리고 국가실천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니스 이사회(The Nice EU Council, 200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신욱, 2006).

2000년 유럽이사회는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향후 10년간 유럽이 지향해야 할 전략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로 선언하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국가행동계획(NA)의 수립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김성환 2005). 유럽연합 공동보고서의 4가지 공동목표로는 ① 고용에의 참여와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촉진, ②배제의 위험 방지, ③가장 취약한 사람들 지원, ④모든 관련기관들의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극복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진행되는 유럽연합 차원의 국가행동계획은 각국마다 내용이 상이하다(김안나, 2007). 이는 각국이 빈곤에 대한 특수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정책면에서도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법률적 토대가 취약하며, 국가별로 목표의 해석에 있어 상이한 형태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배제 개념

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다양한 정의방식

프랑스에서 탄생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초기에는 빈곤이나 실업 등 전통적 사회문제로 포착되지 않는 집단, 제도적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해 주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프랑스적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란 빈곤개념과 독립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즉 비숙련 노동자나 이민자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들, 사회로부터 고립된 일인 가구, 급증하는 노숙자 등이 경험하는 개인과 사회와의 단절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 사회적 배제였던 것인데 이를 ‘광의의 사회적 배제’라 할 수 있다(강신욱, 김안나 외 2005).

광의의 사회적 배제 개념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행위자)과 사회(구조, 제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연대의 해체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다. 즉 개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에 의한 개인의 편입(사회화)이라는 쌍방향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방향적 관계로 왜곡되거나 편향되는 현상을 사회적 배제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빈곤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단절 또는 왜곡됨으로써 다중적 결핍(multiple deprivation)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즉 빈곤을 사회적 연대가 와해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산재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데 따른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20-21).

한편, 사회적 배제는 유럽연합이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미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 배제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거나 빈곤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배제 개념이 빈곤개념에 대해 지니는 보완적 효과가 강조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한

개인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 다양한 계층에 속하며 부지불식간에 이 계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동태적 측면에 대한 중시’라는 사회적 배제 접근의 방법론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장기화 되는 실업으로 인해 특정집단에 대한 사후적 보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과 노동시장의 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을 구성하는 새로운 요소들 즉 성, 연령, 교육수준, 사회적 능력, 사회적 자본 등에 주목했다는 것으로 이는 ‘다차원적 접근’이라는 사회적 배제 접근의 방법론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협회의 사회적 배제’ 혹은 ‘빈곤 중심적 사회적 배제’라 칭할 수 있다(강신욱, 김안나 외 2005).

협회의 사회적 배제 개념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과 개인 간, 집단과 집단 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시각이다. 사회적 배제의 주체와 대상의 설정 및 그 전개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규정되지만, 실제로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배제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주체자와 소유 대상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자원의 결핍·부족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빈곤개념과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Room, 1990).

나. 사회적 배제의 유형 구분을 통한 배제 개념 이해

사회적 배제는 속성상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의미 측면을 지니고 있는 모호한 용어로서, 유럽연합의 한 보고서의 결론대로 한 가지 정의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ilver, 1994: 535, 심창학 2001 재인용).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차원을 유형화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표적 학자인 실버(Silver)와 포강

(Paugam) 그리고 레비타스(Levitas)의 견해를 기초로 사회적 배제 차원 유형화의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제의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작업인 실버의 분류는 쿤(T. Kuhn)의 패러다임론에 기초하여 배제에 대한 기존의 담론을 3개의 패러다임 즉 연대, 분화, 독점 패러다임으로 나누고, 이들 각 패러다임은 서로 다른 정치 철학(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버의 표현에 의하면 각 패러다임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의 형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며 빈곤 및 장기 실업뿐만 아니라 시민권과 인종적, 민족적 불평등 이론들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문진영, 2004: 262).

첫 번째 패러다임인 사회 연대 패러다임은 프랑스 공화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배제는 개인과 사회간의 사회적 연대가 붕괴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회적 질서는 국가적 합의, 공동체의식, 일반의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상호 관련된 중간 제도를 통해서 보다 넓은 사회와 결합될 때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사회적 배제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분화 패러다임으로 앵글로-아메리칸 자유주의의 사상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배제는 시장 및 사회집단에서의 분화를 야기하는 개인적 차이를 전제로 한 사회적 분화, 경제적 노동 분리, 영역의 분리 등 분화의 결과로 간주된다. 또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집단간 차별대우의 폐지, 영역 간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의 보장이 거론된다. 셋째는 독점 패러다임으로 이는 유럽 좌파, 사회민주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고 있다. 여기서 집단 독점 형태의 결과로 배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적 폐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사회적 폐쇄는 제도와 문화적 구별이 여타 구성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들을 추방하는 경계선이 만들어질 때 생기고 불평등이 영속화될 때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사회적 폐쇄는 배제의 원인이

자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 배제 극복책으로서 시민권, 평등한 구성원의 권리 확대, 아웃사이더 공동체 참여 등이 강조된다(Silver, 1994: 539-543).

포강의 유형은 실버의 유형분류보다 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국가별 차이와 현실 분석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심창학, 2001). 포강은 배제의 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빈곤으로 보고 이러한 배제 및 빈곤의 다양한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이상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합된 빈곤, 주변적 빈곤, 자격박탈의 빈곤이 그것이다.

먼저 통합된 빈곤의 경우 사회적 배제보다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빈곤 문제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빈민의 규모는 상당하며 여타 인구집단과 구분이 모호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의 빈곤문제는 특정 사회집단보다는 항구적인 빈곤 상태의 지역에 더 초점을 둔다. 두 번째 유형은 주변적 빈곤으로 여기서의 빈자 혹은 배제된 자는 전체 인구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곤을 둘러싼 논쟁은 주변집단 당사자가 아닌 혜택의 공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선진 산업사회 혹은 팽창일로의 산업사회에서 발견된다. 세 번째 유형은 자격박탈의 빈곤으로 빈곤보다는 배제의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정 상황에 직면하며, 저소득, 열악한 주택 및 건강 상태, 낮은 연대성 및 민간 원조망의 허약성, 제도화된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에의 불확실한 참여 등이 배제된 자의 특징이다(심창학, 2001: 186-188).

레비타스(Levitas)는 실버나 포강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재분배주의적 담론’, ‘사회통합론적 담론’, ‘도덕적 하의계층 담론’이라는 세 가지 방식의 사회적 배제 구분이 그것이다(강신욱 외 2005). 먼저 ‘재분배주의적 담론’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결과로 발생하며 이러한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

나게 하는 방법이 된다. 부의 재분배를 통한 탈빈곤을 주장하는 유럽의 전통적인 좌파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통합론적 담론’은 영국 노동당의 사회정책이념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직업이 없는 사람 혹은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실업자에 대한 급여보다는 유급노동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과 교육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하의계층 담론’은 배제된 집단의 개인의 태도,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려는 보수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며, 사회참여와 성실한 활동에 대한 개인의 유인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사회적 배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다. 관련 개념들과의 관계를 통해 본 사회적 배제 개념에 대한 이해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 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빈곤 개념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빈곤은 개인의 욕구 미충족 혹은 자원의 결핍을 의미를 말하며(김태성·손병돈, 2002; 문진영, 2004), 욕구의 충족여부를 주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으로 측정한다. 이는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가구나 개인의 소득 및 재산, 혹은 소비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의 측정은 사회구성원 중 국가개입을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을 선별하여 탈빈곤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영역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빈곤감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준과 양상 역시 세습화, 고착화, 다차원화되어 기존의 빈곤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신빈곤, 신사회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용어가 바로 사회적 배제이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에서 주목하는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까지 확대된 개념이며 빈곤은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차원 중 핵심적 요인으로 사회적 배제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한 Robinson and Oppenheim(1998)의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으로 여전히 경제적 측면이 핵심적이라 설명하였으며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 관련 연구의 주류는 경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사회, 정치, 문화적 측면의 논의와 지표화를 통해 전통적인 빈곤논의와는 차별성을 보여준다(Berman and Phillips, 2000; Vlemincks and Berman, 2001).

이는 Berghman(1995)이 구분한 빈곤 관련 개념들의 범주와 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빈곤과 관련된 개념들을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태적 결과를 지칭하는가 동태적 과정을 지칭하는가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부족이라는 단일한 차원을 기준으로 삼는가 아니면 경제적 변수 이외의 다양한 차원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네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표 2-1〉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구분

	정태적 결과	동태적 과정
소득	빈곤(poverty)	빈곤화(impoverty)
다차원적 요인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자료: Berghman, 1995

Berghman의 사회적 배제 개념 정의는 경제적 요인에 국한하지 않는 다차원성과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태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

로의 이행현상은 1980년대를 전후로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국가들에서 빈곤(혹은 신사회위협)의 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정책기조인 결과로서의 빈곤완화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과 결과의 동시적 중요성의 강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존의 빈곤논의와 차별화된 사회적 배제의 정의는 희소자원에 대한 접근 좌절로 요약한 Turner(1986)의 연구나, 사회적 권리의 부정이나 개인이 정치적, 도덕적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가 매우 미약한 상태로 이해하는 Room(1995, 1999)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Room(1999)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나타난 EU의 전체 빈곤 비율 평가 대부분의 기초가 된 개인이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나 비용에 초점을 맞춘 빈곤연구는 진부하며 이는 결국 그간 연구들에 사용된 자료의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이 협소하다는 자각과 더불어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제시되면서 빈곤에 관한 연구논의는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5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인 것에서부터 다차원적인 불이익으로, 둘째,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분석으로, 셋째, 개인이나 가구 자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넷째, 분배적인 것에서부터 사회계층화와 불이익의 관계적 차원으로, 다섯째, 연속성에서부터 비연속성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Room, 1999: 167). 사회적 권리의 박탈과정과 그 다차원성에 대한 강조는 Pierson(2001)의 ‘사회적 배제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박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빈곤과 저소득의 결과이지만 차별, 저학력, 열악한 생활환경 등과 같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정의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빈곤담론에서 사회적 배제로 담론이 바뀌면서 소비·소득의 결핍에서 다차원적 불리함으로, 정태에서 동태로, 개인·가구의 자원에서 지역자원으로 관점이 이동되었다(서병수, 2005). 또한 배제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배제자’는 취약계층으로 그

들은 견고하고 명쾌한 집단이 아니다. 배제는 빈곤(Poverty)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것은 명백히 긍정적 자기정체성의 점진적인 상실과 존재에게 의미를 주고 사회로 편입하게 하는 계획의 결여를 포함한다(Maurice, 1998).

통합(integration)과 배제는 보통 조직의 ‘내부’와 ‘외부’의 개념으로, 또 ‘우리’와 ‘그들’이라는 반대의 개념으로 자주 언급된다. 함축적으로 통합은 주류사회로 언급되고 배제는 경계의 외부자나 소수자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주류조직이 전체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는 그들이 비록 사회통합의 다른 형식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적으로 완전히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완전히 통합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과 집단이든 혹은 국제적 사회 수준이든 통합과 배제는 단순히 복합적인 과정의 양 극단에 있을 뿐이다(Maurice, 1998). 통합과 배제의 긴장 관계에 대해 Maurice는 개인과 집단의 양 차원에서 이 둘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Healey(1997)는 약간 다른 용어인 응집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동적인 사회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한 상황에서부터 이와 대비되는 다른 상황으로의 형태와 과정들의 변화를 말한다. 배제는 응집(cohesion)과 반대편에 있지 않으며 서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배제와 응집은 경계를 산출하고 파기하며 ‘우리’와 ‘너’ 그리고 ‘그들’의 구분을 통해 만들어지는 집단 형성과 과정들로써 이해된다(Healey 1997; Maurice 1998에서 재인용)²⁾.

1990년대는 사회적 배제와 싸우는 것이 아주 대중적인 슬로건이 되었

2) Simmel(1964)은 이러한 긴장관계에 대해 더욱 세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그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 독자성과 개조, 자유와 평등 등 서로 반대되는 힘의 조화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에서의 삶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힘은 문제가 되기에 적합한 갈등원칙과 서로 배제하려는 경향에 기반하여 긴장을 유발시킨다. Simmel에 따르면 이러한 긴장은 극복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런 긴장들이 전적으로 해소될 수도 없고 또한 조만간 다시 항상 나타나기 때문이다(Maurice, 1998).

다. 이러한 정치적인 표현의 효과는 아마도 누구나 언젠가 배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자각과 관련(‘신빈곤’논의 초기에 발생한)이 있으나 많은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 비판해 왔다. 예를 들어 Castel(1995)은 대안적 개념으로 실업, 가족해체, 노숙 등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관계를 잃는 과정을 묘사하는 절연(disaffiliation)을 제시하고 있다. Paugam(1991)이 말하는 결격(disqualification)의 개념은 사람들이 직업이나 주거지를 잃거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박탈(deprivation)의 한 상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실효상태의 과정으로 이런 상황의 사람들은 2급 시민으로 전락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유사한 개념들과 함께 사회적 배제와 보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박탈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결여 혹은 실업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사회적 과정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배제 현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배제와 박탈(deprivation)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탈(deprivation)의 개념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고자 할 때 이를 실현시킬 기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탈이란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품이나 시설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2; 문진영 2004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박탈(deprivation)이 어떤 행위 능력에 대한 정태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주류질서 혹은 도덕적 토대로부터 점차 유린되는 일련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Room, 1995).

라.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의

본 연구를 위한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의를 위해 유럽연합 등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대표적 연구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란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들을 말한다. 빈곤은 가장 명백한 요인의 하나 이긴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또한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회적 기본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이중구조 사회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EU, 1993; 윤진호, 2004). 빈곤이나 실업 등 하나의 원인이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간의 결합과 사회 구조 속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배제를 파악하고 있는 국내의 연구로는 신명호 외(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란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신명호외, 2004: XV). 한편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초점을 둔 강신욱 외(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국·내외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계의 결핍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한다.

제2절 사회적 배제 접근의 방법론적 특징과 측정의 의의

1. 사회적 배제 개념 접근의 방법론적 특징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박탈이나 사회적 고립을 통해 개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빈곤이 소득의 부족이나 자원의 결핍으로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정적인 접근이라면 사회적 배제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동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이는 빈곤 문제를 특정한 상태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여, 결과 자체보다는 배제가 발생하는 기제 혹은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빈곤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유럽연합은 1990년 초부터 빈곤 문제를 특정한 ‘상태’가 아닌 ‘과정’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강신욱 외 2005). 즉 사회적 배제를 물질적 결핍이나 수입의 부족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러한 물질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과정이나 동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관한 동적인 접근 방식은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기존의 정책들이 불균등한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소득재분배 정책에 집중한 것에 반해, 기회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보다 중요시 되어야 함을 역설하는데 그 기초를 마련해 준다.

사회적 배제 접근의 두 번째 방법론적 특징은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복잡적이고 변동이 심하며 상호 작용하며 중층적이므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Silver 1995).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대한 물질적 박탈 즉 재화 및 서비스에의 접근 부족 뿐 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대표성, 정치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으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개인, 집단,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차원의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개인에서부터 지역공

동체, 국가적 차원에까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중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은 사회통합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부문별 정책들의 유기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즉 문제에 직면한 대상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시도할 때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시각과 영역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입체적 접근의 필요성이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그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세 번째로 사회적 배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에 주목하는 관계적(relational) 접근방식을 시도한다. 관계적 접근방식은 사회적 배제를 과거 빈곤 논쟁의 분배적 이슈(distributional issues)를 넘어 관계적 이슈(relational issues)로 개념접근의 초점을 이동시킨다(Room 1995, 1999). 빈곤이 인간과 자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족 혹은 결핍의 문제라면, 사회적 배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정치 권력 등 관계적 이슈에 집중하여 불충분한 사회참여, 사회 통합의 부족, 권력의 부족 등 관계의 문제에 집중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관계적 접근 방식은 개인들을 사회와 집단, 국가로 통합시키고 재배치 시키기 위한 경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2. 사회적 배제 측정의 의의

가. 정책적 측면의 의의

우선 사회적 배제의 담론은 빈곤에 대한 분석의 지평을 확장하고, 평등에 관한 논의를 시민권 개념과 연관시켰으며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nunders, 2003). 이는 기존의 빈곤 논의가 소득보장 중심의 특정 정부부처에 의한 정책적 대안에 머무르던 것을 국가체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외연과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

Haan(2008)에 따르면 사회통합적 국가의 필요조건으로 4가지 주요 영역(정책, 법, 제도, 규범)과 쟁점들(거시구조, 구조적 불평등, 통합적 제도, 이행과정)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2〉 사회통합 국가의 구조

분야	거시구조	구조적 불평등	통합적 제도	이행과정
정책적	· 사회정책과 통합된 (integrated) 거시경제 정책	· 양성 평등 · 다문화주의 · 보편적 권리	· 정책에서의 규칙	· 참여적 정책과 공식적 토의
법적	· 책임적 민주주의 · 시민적 권리와 책임	· 차별철폐 조치 · 특별보호 · 권리에 기반한 사회정책	· 정의(justice)로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규정 · 공익 소송	· 정보의 자유 · 법률 보조와 인지
제도적	·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 지방분권화 · 자산과 서비스로의 접근을 위한 표적화·맞춤화 프로그램	· 공식적 체계와 비공식적 체계와의 연계	· 동기부여 · 책임장치
규범적	· 빈곤층을 위한 분배 분석을 통한 거시경제 정책의 개선	·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 · 인식적 관점	· 규범과 가치가 배태된(embedded) 규정	· 투명성, 발언권, 책임성

출처: de Haan(2008), Inclusive States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동태적이고 다차원적 해결을 위해 범부처적 정책,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다양한 사회집단의 특성과 유인체계를 고려한 정책,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강신욱, 2006). 거시적으로는 국가정책의 큰 틀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을 추구하며, 세부적으로는 국가섹터, 시장섹터, 시민섹터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정책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전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와 통합이란 개념이 완곡하면서도 훨씬 가치 지향

적이며, 통합의 대상이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개방성과 유연성의 힘을 정책적 의의로 들 수 있다(강신욱, 2006). Mitchell과 Shillington(2002)이 사회적 배제 개념이 포괄하는 5가지 차원을 ①가치인식(valued recognition), ②인적자원 개발(human development), ③관여(involverment and engagement), ④근접성(proximity), ⑤물질적 행복(material well being) 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역시 기존 논의와 다른 사회적 배제의 가치지향적 측면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빈곤에 대한 논의가 소득격차 내지는 소득불평등 차원에서의 경제적 수준에 집중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였던 반면, 사회적 배제에서는 경제적 기준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기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 및 유연성은 기존의 ‘소외된 계층’으로 통칭된 집단에 대해 소득, 지출, 노동, 보건, 관계망, 문화 등 다양한 준거들을 통해 배제된 영역을 측정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연결되게 된다.

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유효하면서도, 기존의 제도적 틀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의 내용과 양상이 급변하게 될 수록 사회적 배제 개념이 지닌 분석적 유용성은 더욱 주목 받게 될 것이다(강신욱, 2006).

나. 기존 논의와 비교한 사회적 배제의 장점

사회적 배제와 비교할 수 있는 기존 논의로는 ‘빈곤’과 ‘불평등’이 해당됨으로, 본 절에서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장점을 탐색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빈곤과의 비교를 위해서 빈곤 개념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잠재적 범주들로 설명할 수 있다(이하 여유진 외, 2005). 첫째, 객관적

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즉, 절대적 빈곤), 둘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상대적 빈곤),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주관적 빈곤) 등이 이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인식되며, 최근 연구들은 상대적 빈곤에 보다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절대적 빈곤에 가까운 예로는 라운트리(Rowntree, 1899)와 베버리지(Beveridge, 1942)의 빈곤개념이 해당되며, 헨더슨(Henderson, 1975), 타운젠트(Townsend, 1979) 등 이후의 연구들은 상대적 빈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에서 말하는 ‘일정한 생활수준’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의 규정이 경제적 측면을 중시한다고 평가받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일정한 생활수준에 필요한 ‘기본욕구의 상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전 논의와 차별화 된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의 정도,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측정은 대체로 경제적 조건(소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빈곤 개념에 비해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경제적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차원적’인 불리함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빈곤 개념이 저소득과 경제적 결핍에 집중한 반면, 사회적 배제는 앞서의 측면과 아울러 교육·주거·보건의 배제, 가족해체, 사회주류와의 관계망 단절(소수자 문제 포함), 문화적·심리적 단절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로빈슨과 오펜하임(1998) 역시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을 제시하면서, 빈곤의 역할이 실업, 저기술, 건강, 주거, 범죄율, 가정해체와 상호연관된 개념으로 도식화한바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빈곤양상(구조적 빈곤의 심화, 근로빈곤층의 증가, 상대빈곤의 심화, 복합적 빈곤 양상 등)이 과거의 소득중심적 접근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인 논의는 빈곤에 비해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와의 비교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불평등의 개념은 빈곤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이며, 사회의 이념적 지향을 포괄한다 할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평등이란 자원(소득이든, 소비든)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불평등이란 자원의 분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Litchfield, 1999), 이 자체로는 규범성을 띠지 않는다. 반면 실제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불평등 측정치 혹은 불평등 지표는 전체 자원의 양을 정확하게 n (인구수)등분한 상태를 준거로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기본적인 가정은 공리주의철학의 경제학적 적용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05). 이처럼 불평등의 개념이 빈곤에 비해 가치지향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공유하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평등 개념은 빈곤 개념과 마찬가지로 소득(혹은 소비)에 대한 주된 관심 및 '정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구분된다. 불평등 개념의 주류적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것이었으며, 주거나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적자본이 소득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유경준, 2007).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양극화 개념은 불평등의 양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양극화와 구조적인 사회관계측면을 강조하는 사회 양극화로 크게 대별된다. 그러나 불평등의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 소득5(10)분위 배율 및 소득점유율, 계층별 인구점유율 등을 통해 양극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지목되는 것의 기저에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김상호 외, 2006). 따라서 양극화를 포함한 불평등 개념 역시 빈곤 개념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측면인 '소득'과 밀접함을 보인다. 한편 빈곤정도나 불평등도를 보이는 데 있어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대

상별, 영역별 변화추이를 보임으로써 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 개념으로는 사회적 배제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인 과정적 측면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존재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비교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배제의 적용에 따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과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경제적 요소가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반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요소를 아우르는 다차원성에 주목함으로써 심화되는 빈곤구조의 양상을 보다 잘 설명해준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배제’되는 과정과 경로에 관심을 둬으로써, 기존 논의에서 불분명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결핍상황을 일컫는 사회적 배제는 논의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각 사회구조의 특성과 개념을 사용하는 학문적 성향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단일한 의미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김안나, 2007). 이에 다양한 사회적 배제 현상 및 대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 대표 개념과 이를 기초로 상이한 사회구조별로 나타나는 사회현상들이 반영될 수 있는 세부적 개념구성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개념의 대표성과 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대표 지표 및 개별지표의 세부적 구성 필요하다.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제1절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의 선행 연구

1.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³⁾

사회적 배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시도한 대표적 연구로는 Robinson과 Oppenheim(1998)의 사회적 배제 지표 연구가 있다. 이들은 영국의 사회적 배제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에서 언급한 7개의 배제 영역 - 실업, 저기술, 건강하지 못함, 열악한 주거, 높은 범죄율, 가정 파탄, 빈곤 등 -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면서 소득(빈곤 추이, 10분위 소득점유 추이 등), 실업(장기실직률, 실업·비고용·비근로 가구 추이 등), 교육(GCSE 평점추이 등), 건강(사망률, 신생아 평균체중과 저체중 신생아 비율 등) 영역에 대한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개발하였다. Burchardt 등(1999) 역시 위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영국 가구패널조사를(BHPS)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소비행위, 저축행위, 생산행위,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 등의 5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소비행위의 차원에서 저소득을, 저축행위의 차원에서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 직업연금 혹은 노령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저재산 (£2000이하의 저축)을, 생산차원에서의 배제는 생산행위의 결여, 정치적 차원에서의 배제는 정치적 비참여로, 사회적 행위에서의 배제는 사회적

3)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강신욱·김안나 외, 2005 참고

고립으로 규정하여 5가지 차원에 대한 영국의 배제현상을 살펴보았다. 한편, Bradshaw 등(2000)은 영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해 적절한 수입 혹은 자원·노동시장·서비스·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분류를 함으로써 다측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배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입 및 자원에서의 배제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까지 언급하면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확장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Bradshaw et al의 사회적 배제 지표

지표(Indicators)		측 정 (Measurement)	
수입/자원	저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	
	사회적 필수품의 결여	사회적 필수품 중 2-3개의 품목이 부족할 때	
	주관적 빈곤	주관적인 필수 생활비와 실제 수입 비교	
노동시장	실직상태	실업률(퇴직, 학생 제외)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접근의 결여	전기, 수도, 교통수단, 물품구매, 금융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중 3개 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 관계	비참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 중 3개 이상을 하지 못할 경우	
	소외	매일 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부재	
	지원	조사에 제시된 가사 및 정서적 지원 7가중 4가지 이상의 지원 부재	
	이탈		지난 3년간 모든 조직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선거만 참여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사회적 활동의 제한	여러 개인적 여건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음 어둠 등 공포로 인한 제한		

자료: Bradshaw et al.(2000), 문진영(2004), 강신욱·김안나 외(2005) 참조

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가. 유럽연합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공동 지표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관심과 연구들은 2000년 3월 리스본 유럽 정상회담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김안나, 2007). 2001년 12월에 유럽의회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대한 18개 지표를 제안하였다(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5). 본 지표는 사회적 배제의 핵심적 요소(빈곤, 소득 불평등, 상대적 빈곤, 실업, 교육, 건강 등)에 관한 10개의 1차적 지표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8개의 2차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3-2> 참조). 이와 관련하여 Atkinson(2002) 등은 특히 지표개발과 관련하여 3단계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 1단계 지표는 중요영역에 대한 소수의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2단계 지표는 핵심지표를 지원하는 보충적인 일련의 지표 또는 군집 지표로서, 각국의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된다.
- 3단계 지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추가보완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 3-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

	지표(Indicators)	측 정 (Measurement)
1a	빈곤율 -연령/성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 - 연령대: 0~15세, 16~24세, 25~49세, 50~64세, 65세 이상
1b	빈곤율 -경제활동상태별	중위소득 60% 이하의 16세 이상 인구중 주된 경제활동 상태별로 본 빈곤율(임금근로, 자영업, 실업, 은퇴, 비·경 등)
1c	빈곤율 -가구유형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 - 30세 이하 1인가구, 30~64세 1인가구, 65세 이상 1인가구, 2인 무자녀 성인가구, 미성년자녀와 성인가구 등
1d	빈곤율 -주거형태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 - 자가, 임대 (한국: 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등)
1e	빈곤선	빈곤선 액수(중위소득 60%) - 단독가구, 2명의 성인과 2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소득분포	소득배율(S80/S20): 상위 20% 대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
3	빈곤지속성	3년간 지속적으로 중위소득 60% 미만가구에 속하는 사람수
4	상대적 빈곤격차	빈곤선 이하 소득자의 중위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
5	지역적 응집도	지역간 취업률의 편차
6	장기실업률	전체 경활인구 중 ILO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비율
7	실업가구의 가구원수	실업가구에 사는 0~65세의 가구원 수
8	학업중퇴자율	18~24세 사이의 중등교육(ISCED 2 ¹⁾)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고 현재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동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
9	평균기대수명	출생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
10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상위20%와 하위20% 집단에 속하는 16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WHO정의에 따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정의한 사람의 비중

주: 1)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Education): 1970년대 초 UNESCO에서 개발한 국제비교를 위한 표준적인 교육단계로서 가장 낮은 단계인 0에서 7단계까지 있는데, ISCED 2는 교육년수로는 9년정도 되는 낮은 중등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수준에 상응한다.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강신욱 외(2005) 재인용

〈표 3-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계속) - 2차적 지표(Secondary Indicators)

	지표(Indicators)	측 정 (Measurement)
11	빈곤 산포 (dispersion)	가구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50%, 70% 이하에 살고 있는 인구
12	특정 시점 빈곤율	1995년을 기준으로 - 1997년 상대적 빈곤율 - 1994/96년 물가인상분을 고려한 1995년 상대적 빈곤율
13	이전소득 이전의 빈곤율	빈곤율 - 모든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 - 연금 포함한 소득 - 모든 공적 이전소득 이후
14	지니 계수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산출
15	지속빈곤율 (중위소득의 50%이하)	지난 3년간 최소한 2년 이상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소득을 가진 소득자의 비율
16	장기 실직자 비율	전체 실직자 중 장기 실직자(12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17	극 장기(very long) 실직자 비율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극장기 실직자(24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18	저학력 비율	연령 집단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로 ISCED ¹⁾ level 2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강신욱 외(2005) 재인용

이후에도 유럽의회 내에서 사회적 배제 지표의 수정·통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적 배제 지표 소위원회(the Indicators Sub-Group)는 2003년 7월에 수정된 사회적 배제지표를 제안하였다. 수정된 사회적 배제지표에는 3개의 하위지표가 추가되고 기존 하위지표의 일부가 재정의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적 배제에 연령과 성에 대한 관심이 강조된 것이다.

〈표 3-3〉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2003년 수정 -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

	지표(Indicators)	정의(Definition)	연령 분류(Age break-down)	성 분류(Gender break-down)
1	빈곤율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의 비율	있음 (0~15세, 16~24세, 25~49세, 50~64세, 65세 이상)	있음
1a	-가구유형별	부양아동이 없는 가구 - 1인가구(65세 이상/이하, 남/여), 2인가구(65세 이상 가구원 여부), 기타 가구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 - 한부모가구, 2인가구(아동 1, 2, 3인 등), 3인이상가구	가구유형별	가구유형별
1b	※ - 가구주 근로강도별	실직 가구주(WI = 0), 전일근로 가구주(WI = 1)	없음	없음
1c	-경제활동상 태별	임금근로, 자영업, 실업, 은퇴, 비·경 등	있음	있음
1d	-주거형태별	자가, 임대	있음	있음
2	빈곤선	빈곤선 액수(중위소득 60%) - 단독가구, 2명의 성인과 2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없음	없음
3	소득분포	소득배율(S80/S20): 상위 20% 대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	없음	없음
4	빈곤지속성	3년간 지속적으로 중위소득 60% 미만가구에 속하는 사람수	있음	있음
5	상대적 빈곤격차	빈곤선 이하 소득자의 중위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	있음	있음
6	지역적 응집도	지역간 취업률의 편차	없음	있음
7	장기실업률	전체 경활인구 중 ILO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비율	있음	있음

참조: ※ - 추가된 지표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5),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표 3-3〉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2003년 수정(계속) -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

	지표(Indicators)	정의(Definition)	연령 분류(Age break-down)	성 분류(Gender break-down)
8a*	실업가구의 가구원수: 아동	0~17세의 아동 수	없음	없음
8b*	실업가구의 가구원수: 성인	18-59세의 성인 수	없음	있음
9	학업중퇴자율	18~24세 사이의 중등교육(ISCED 2 ¹⁾)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고 현재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동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	없음	있음
10※	학생들의 문해독수준	15세 학생 중 PISA 점수가 1단계 이하 비율	없음	있음
11	평균기대수명	출생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	없음	있음
12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상위20%와 하위20% 집단에 속하는 16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WHO정의를 따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정의한 사람의 비중	있음	있음

참조: ※ - 추가된 지표

* - 수정된 지표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5),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표 3-3〉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2003년 수정(계속) - 2차적 지표(Secondary Indicators)

	지표(Indicators)	정의(Definition)	연령 분류(Age break-down)	성 분류(Gender break-down)
13	빈곤 산포 (dispersion)	가구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50%, 70% 이하에 살고 있는 인구	있음	있음
14	특정 시점 빈곤율	1995년을 기준으로 - 1997년 상대적 빈곤율 - 1994/96년 물가인상분을 고려한 1995년 상대적 빈곤율	있음	있음
15	이전소득 이전의 빈곤율	빈곤율 - 모든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 - 연금 포함한 소득 - 모든 공적 이전소득 이후	있음	있음
16	지니 계수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산출	없음	없음
17	지속빈곤율 (중위소득의 50%이하)	지난 3년간 최소한 2년 이상 중위소득의 50%이하의 소득을 가진 소득자의 비율	있음	있음
18※	근로빈곤	근로중이면서 빈곤한 인구수	있음	있음
19	장기 실직자 비율	전체 실직자 중 장기 실직자(12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있음	있음
20	극 장기(very long) 실직자 비율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극장기 실직자(24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있음	있음
21	저학력 비율	연령 집단별로 ISCED ¹⁾ level 2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있음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있음

참조: ※ - 추가된 지표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5),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유럽연합내의 최근 동향은, 사회적 배제 지표 소위원회(the Indicators Sub-Group)에서 새로운 배제지표 제안, 즉 공통된 EU지표(Commonly agreed EU indicators), 공통된 국가지표(Commonly agreed national indicators), 상황적 정보(Context information)로의 구성에 동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7). 이러한 3가지 차원에 따라 지표는 핵심적(overarching) 지표, 선택적 보건지표, 상황적 지표로 나뉘어진다.

핵심적 지표는 기존 사회적 배제 지표의 1차적 지표를 대부분 반영하며, 빈곤율, 상대적 빈곤격차, 소득분포 등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적 보건지표는 총 보건지출, 총 보건지출 대비 보건관련 일반정부 지출비율, 총 보건지출 대비 보건관련 민간지출비율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적 지표는 GDP 성장률, 성별 고용률 및 실업률, 기대수명 등의 13개 지표로 구성된다.

제2절 지표 소개

1. 사회적 배제 영역과 대상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대표적 영역에 대한 선정은 기존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시도한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강신욱 외 2005)의 7가지 영역을 기초로 출발하였다.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에 속한 개별국가에서 제시한 영역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배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 영역으로 2005년 연구에서 배제의 정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 빈곤, 노동시장, 의료, 주거의 네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사회적 배제 연구들이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영역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 대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배

제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전통적 취약계층으로 간주되고 있는 세 계층 즉 아동, 장애인, 노인을 선정하였다. 다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새로운 배제계층에 대한 추후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회적 배제 지표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표영역인 빈곤, 노동시장, 의료, 주거 영역과 대표 대상인 아동, 장애인, 노인 영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실험적으로 구성·개발된 것이다. 사회적 배제 현상은 각각의 대상과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배제의 다양성 연구와 배제화 과정에 집중하는 역동성 연구에 초점을 둔다. 지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각각의 영역과 대상별 핵심지표와 세부지표를 소개한다. 각 영역별 핵심지표는 이후 대상별 배제 측정에서 다양한 배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대상들의 대표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기초가 된다. 각각의 세부 지표들은 배제의 영역과 대상에서 각 분야별 특수한 배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고유지표로서 고려되어진다.

2. 사회적 배제 지표 선정

사회적 배제 영역 및 대상 분석을 위한 대표 지표의 경우 영역별·대상별로 보다 상세한 지표 설명이 각 장에서 이루어진다. 대상별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 분석을 위해 앞서 살펴 본 소득, 노동시장, 주거, 의료 영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층적으로 배제되는 취약계층들의 복합적 사회배제 현상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가. 사회적 배제 영역 및 대상 분석을 위한 대표 지표 소개

사회적 배제지표의 영역별 핵심지표와 대상별 핵심지표 및 고유지표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들과 같다.

[그림 3-1] 영역별 사회적 배제 핵심 지표

영역	핵심 지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빈곤 여부: 최저생계비 이하 · 상대빈곤 여부: 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여부: 15세 이상 생산 가능한 인구 중 취업자 여부 · 저소득 여부: 중위임금 및 중위사업소득의 60% 이하(개인단위)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 상태 ※ 척도의 낮은 값: 5점 척도(1, 2), 10점 척도(1,2,3,4) · 과부담 의료비(지출항목): $\frac{\text{의료비}}{\text{전체소비지출총액-식료품}}$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수세식 사용 여부 · 임대료 연체 여부

[그림 3-2] 대상별 사회적 배제 핵심 지표 및 고유 지표

대상	핵심 지표
모든 대상	· 소득, 노동, 의료, 주거의 핵심 지표
대상구분	고유 지표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 노인 사회단체 참여 여부 ·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6개월에 1회 이하 여부 ·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3개월에 1회 이하 여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혜정도 ·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 · 사회생활에의 만족정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월평균 사교육비 22만원 미만 여부 · 낮은 학교생활 적응도 평균 2.5 미만 여부 · 낮은 자존감 평균 2.5 미만 여부

먼저 영역별 핵심지표를 서술하면 첫째, 소득영역의 배제지표는 소득빈곤의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정태적 분석을 위해 성, 연령, 가구유형, 소득종류별 빈곤율, 빈곤분포, 소득분포, 지니계수 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동태적 분석을 위해 빈곤의 지속성 또한 선정하였다. 둘째, 노동영역의 배제지표는 고용율,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실업률, 저임금근로자 및 저소득자영업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노조조직율 등 기본지표와 근로빈곤층의 비율, 사회보험 가입율, 일자리 만족도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셋째, 의료영역의 배제지표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규범적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미충족 의료, 주관적 건강상태 등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넷째, 주거영역의 배제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방1개 거주가구, 임대료 연체 가구 수, 홈리스 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쪽방 거주 인구수, 지하거주 가구 수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대상별 핵심지표 및 고유지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대상의 배제지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 노인 사회단체 참여여부,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6개월에 1회 이하 여부,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3개월에 1회 이하 여부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둘째, 장애인대상의 배제지표는 교육수혜정도,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 사회생활에의 만족정도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셋째, 아동대상의 배제지표는 07년 월평균 사교육비 22만원 미만 여부, 낮은 학교생활 적응도 평균 2.5 미만 여부, 낮은 자존감 평균 2.5 미만 여부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제3절 분석자료

1. 국내 데이터 현황

국내에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패널 데이터 및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가구조사일 것이다. 기존의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자료로 패널데이터인 대우패널, 노동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패널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가구조사로는 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등의 자료가 있다.

대우패널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가구패널조사로서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주기는 매년이며 1992년 1년동안

준비단계를 거친 뒤 1993년 9월에 패널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제 5차년도(1998년)의 패널조사를 완료한 후 대우경제연구소의 해산으로 조사가 중단되었다.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8,236가구를 선정하였고, 1차년도 조사에서 선정된 가구의 55.2%인 4,547가구에서 패널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후 표본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탈락률의 증가로 표본수는 점차 급락하여 제4차년도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2,833가구만 남게 되었다.

노동패널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10차년도(2007년) 자료까지 구축되었고, 11차년도(2008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본 조사는 개인의 노동시장 행위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그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패널조사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가구자료의 경우 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 주거형태, 가구원 구성, (사)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자료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 직장 정보, 근무형태, 근로시간, 직장만족도, 임금, 종사상 지위, 교대제, 노동조합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체 정보, 종업원수, 매출액, 근로시간, 만족도, 사업체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첫 해에 응답한 5,000가구 13,700여명의 응답자를 추적하여 그 동안의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10차 조사에 응답한 최종 가구는 신규 가구를 포함하여 4,953가구이며, 응답자는 신규응답자를 포함하여 11,858명이다.

자활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여 가구여건·고용상태·건강상태의 변화가 저소득층의 빈곤화 및 탈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 진·출입 과정을 종합적(가구형태별, 고용상태별, 소득수준별)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집단과 어려운 집단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차조사는 10,114가구의

30,033명에 대하여 빈곤계층을 파악하는 등의 기초조사로, 2차조사는 저소득가구 1,125가구 및 그 가구에 속한 근로가능인구 1,763명에 대해 심층조사하였다. 조사는 2002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 4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가계조사는 가계부문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 구조, 추이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위한 기본정보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국민소득 추계, 경제동향 분석 등을 위한 통계 및 주거대책비 산정, 복지시설 입소자 선정 등의 기준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60여년간 도시지역의 비농가만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되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지역의 2인 이상 비농가까지 확대하여 전국가계조사로 실시되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내구재 및 자산보유실태 등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91년 1차조사로 시작하여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조사구내에서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보유실태 파악이 가능한 약 27,000가구를 조사한다. 조사항목으로는 가구원 및 주거 등 가구에 관한 일반사항, 소득, 지출, 저축 및 부채, 가구내구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인 2006년, 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중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최근의 자료로 복지패널조사로 볼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데이터는 2006년도부터 매년 조사되는 데이터로 각 영역별, 대상별 특성과 규모 및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소득계층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데이터를 통해 소득, 근로, 의료, 주거 등의 영역별 분석과 ‘아동, 노인, 장애인’의 대상별 분석으로 다차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볼때 본 자료를 통해 취약계층을 다룰 수 있게 된다.

1차년도 완료가구수는 7,072가구, 14,469명의 가구원, 759명의 아동으로서 국내 패널 중에서 표본수가 가장 크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2차년도는 1차년도의 약 92%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진입가구를 포함하여 일반가구 3,755가구, 저소득층가구 2,825가수로 총 6,580가구가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의료, 주거,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노인, 아동, 장애인, 가족,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데이터를 통해 핵심지표의 측정을 시도하고 각 대상별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각 대상과 관련한 타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 대상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 분석 및 다차원적 분석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한계로는 전년도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등에 대해 회고적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2차년도 데이터로 년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역동성 분석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제 2 부: 영역별 접근

제4장 소득빈곤과 사회적 배제

제1절 서론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소득영역

사회적 배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정책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이지만, 배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할 수 있다.

EC(1993)의 경우 "사회적 배제란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들을 말한다. 빈곤은 가장 명백한 요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내버려 두면 사회적 기본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이 중고조 사회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강신욱, 2006). 영국의 사회적 배제 극복단(Social Exclusion Unit, 1997)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실업, 미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거, 나쁜 건강상태, 범죄율이 높은 환경, 가족 붕괴 등의 문제가 결합되어 고통 받는 개인이나 지역에게 나타나는 문제"로 보고 있다(강신욱, 2006). 문진영(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란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상대성)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활동(다차원성)에 지속적(역동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사회(기관)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

는 시각, 정의에 따라 소득, 주거, 범죄, 경제, 문화, 정서 등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매우 넓으며, 사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커다란 영역에서 소득이 점유하고 있는 지점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사회적 배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연구내용 혹은 방법에 따라 포괄범위가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소득측면에서의 배제는 대표적으로 빈곤화를 뜻할 수 있다. 즉 한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생활고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득빈곤은 개인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본인이 소속된 가족, 크게는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측면에서의 배제가 명확히 빈곤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빈곤의 분석범위에 비해 사회적 배제에서의 포괄범위는 더 넓고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단순히 빈곤율과 빈곤갭의 변화 이외에 공공부조에서의 사각지대(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한 비수급 빈곤층), 취약계층(장애, 노령, 연소, 사별·이혼 등)의 범위와 국가 복지서비스로부터의 제외, 국가 소득보장의 영역에서 제외된 사람들(국민연금의 납부예외,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 장들에서 살펴볼 노동, 주거, 유형별 사회적 배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소득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라 할 수 있다.

2. 소득측면에서의 배제의 접근방법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소득결핍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빈곤 개념의 단순한 차원에서 사회구조, 동태성, 다차원성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로

영역을 확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강신욱 외, 2005). 즉 빈곤과 달리 대상의 확대, 동태적 변화, 규범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접근방법으로는 크게 동태적 과정, 다차원성, 관계중심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중 동태적 과정이란 기존 빈곤연구에서와 같이 빈곤을 결과적 상태(규모)로만 보지 않고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석에 있어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에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빈곤에서 간과하고 있던 빈곤의 동태적, 역동성을 포함하여 소득부문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분석영역은 빈곤의 영역을 벗어나 광범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서 사회적 배제의 동태적 측면을 살펴보는 초기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범위를 우선 축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빈곤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소득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과 동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적 배제지표 중 소득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동 지표 중 동태적 과정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선정하여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 개념, 포괄범위 및 측정지표,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측정지표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소득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 연구

문진영의 연구(2004)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보다는 외국 즉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특성별로 사회적 배제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매우 축약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초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영역으로는 소득, 실업, 교육, 건강의 4개 영역으로 이중 소득의 지표는 빈곤율, 소득배율, 지니계수를 두고 있다.

강신욱·김안나 연구(2005)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영역으로 8개 영역을 두고 있다. 즉 경제, 실업, 근로,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영역중 소득과 관련된 영역은 경제분야라 할 수 있다. 경제분야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총 8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빈곤율(성별) 및 아동·노인 빈곤율, 가구특성별 빈곤율, 종사상 지위별 빈곤율, 교육수준별 빈곤율, 주택소유 상태별 빈곤율, 소득분배(S80/20), 소득이전 전의 빈곤율(성별), 지니계수로 구분하고 있다.

서병수의 연구(2005)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소비, 고용, 건강, 교육, 가족, 지역, 영토 및 주관성으로 총 8개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중 소득과 관련된 영역은 소비로서 동 영역에 포함된 지표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성,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소득분포, 저축/부채,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2. 국외 연구

본 부문에서는 외국의 주요기관, 연구자들이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지표들 중 소득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U의 경우 2001년 유럽 사회적 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 주관하에 유럽에서 적용할 사회적 배제 지표 18가지를 제안하였다. 18개 지표는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 10개, 2차적 지표(Secondary Indicators)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적 지표중 소득과 관련된 지표로는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분포(1분위소득과 5분위소득의 비율), 빈곤지속성(3년간 지속적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에 속하는 사람수), 상대적 빈곤격차(빈곤선 이하 사람과 빈곤선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2차적 지표 중 소득과 관련된 지표는 빈곤 산포(중위소득 40, 50, 60%의 인구), 특정 시점 빈곤율, 이전소득 이전의 빈곤율, 지니계수, 지속빈곤율(3년중 2년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자)을 담고 있다.

로빈슨과 오펜하임(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소득, 실업, 교육, 건강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과 관련된 지표는 4개로 빈곤율 추이, 10분위 점유율 추이, 인종집단별 5분위 소득점유 추이, 소득지원 수혜기간으로 나누고 있다.

Burchardt, Le Grand, Piachaud(1999, 이하 BLP)는 1999년 연구에서 1991년에서 5년간 영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측정 영역은 5개로 소비행위, 저축행위, 생산행위,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중 소득과 관련된 소비행위는 저소득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분석하고 있다.

브래드 쇼(2000)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사회적 배제지표를 통해 영국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측정하였다. 동 연구자들은 사회적 배제를 4개 영역, 즉 수입으로부터의 배제, 노동시장의 배제, 공공서비스의 배제, 사회적 관계의 배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수입으로부터의 배제는 3가지 지표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수입미달(중위 소득 60% 이하), 사회적 필수품 결여, 주관적 빈곤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 소득빈곤과 사회적 배제 측정지표

1. 연구내용

소득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연구내용은 빈곤율을 중심으로 한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측정지표에 대한 특징과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은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소득관련 배제 지표를 정리한 결과들이다. 이를 통해 살펴볼 경우 대부분의 연구자가 빈곤율(중위소득 기준)과 소득분배(지니계수)를 중심을 살펴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의 경우 주관적 빈곤, 자산상황, 박탈, 공공부조 수혜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한 변수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활용하고 새롭게 동태적 변수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빈곤지수, 불평등지수와 빈곤지속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표 4-1〉 소득관련 선행연구 분석지표

연구자		영역	세부지표
국내	문진영	소득	빈곤율, 소득배율, 지니계수
	강신욱· 김안나	경제	빈곤율(성별) 및 아동·노인 빈곤율, 가구특성별 빈곤율, 종사상 지위별 빈곤율, 교육수준별 빈곤율, 주택소유 상태별 빈곤율, 소득분배(S80/20), 소득이전 전의 빈곤율(성별), 지니계수
	서병수	소비	빈곤(지속성,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소득분포, 저축/부채,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 접근
국외	EU	1차적 지표	빈곤율, 소득분포, 빈곤지속성, 상대적 빈곤격차
		2차적 지표	빈곤 산포, 특정시점 빈곤율, 이전소득 이전의 빈곤율, 지니계수, 지속빈곤율
	로빈슨 & 오펜하임	소득	빈곤율, 10분위 점유율, 인종집단별 5분위 소득점유, 소득지원 수혜기간
	BLP	소비행위	저소득으로 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
	브래드쇼	수입	수입미달(중위 소득 60% 이하), 사회적 필수품 결여, 주관적 빈곤

소득영역에 대한 측정지표는 크게 정태적인 분석과 동태적인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태적인 분석의 경우 빈곤율을 중심으로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 빈곤에 대한 분포를 통해 전반적인 소득측면에서의 배제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분포와 지니계수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소득분배에 대한 양태도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이들 빈곤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근로빈곤의 규모, 공공부조와 관련되어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 소득관련 분석지표

구분	지표	측정방법
정태적 분석	빈곤율: 성·연령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절대 및 상대빈곤율
	빈곤율: 경제활동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별 절대 및 상대빈곤율
	빈곤율: 가구유형별	가구의 가구유형별(아동, 노인) 절대 및 상대 빈곤율
	빈곤율: 소득종류별	가구의 소득종류별(시장, 경상 및 가치분) 성별 절대 및 상대빈곤율
	빈곤분포	절대빈곤선의 100, 120, 150%와 중위소득 40, 50, 60%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소득분포	소득배율(S80/S20): 상위 20%대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
	지니계수	소득종류별 지니계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성 I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빈곤선 미만의 가구비율
	빈곤지속성 II	지난 3년간 최소 2년 이상 빈곤선 미만의 가구비율

자료: 강신욱·김안나 외(2005)

동태적인 분석은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3년 사이에 일정분기 혹은 연도 이상을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과 가구들의 규모로 파악하고자 한다. 동태분석의 경우 무엇보다 분석대상에 대한 표본의 확보가 중요한데, 가능한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영역에서 또 중요한 부문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들 수 있다(박영미, 2008; 배미애, 2007). 여성의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영역(소득, 노동, 사회적 참여, 정치행위 등)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부문은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성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소득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논하면서 여성의 소득에서의 배제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과의 비교는 물론 현재 여성들의 배제정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

빈곤의 측정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동시에 측정할 것이다. 절대빈곤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은 중위소득 40, 50, 60%를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법 중 절대적 측정방법은 한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득(혹은 육체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의미하기도 함)을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설정하여 전체 국민(혹은 가구)대비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사람(혹은 가구)들과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9월에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소득비교를 통해 측정되어진 빈곤율로 측정방법은 전체 국민(혹은 가구)들의 소득 중 중위소득(혹은 평균소득)을 추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40%, 50%, 60% 수준을 계산후 이를 빈곤선으로 삼아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소득관련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에 대한 배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4) 여성의 사회적 배제를 정확하게 논의하고자 하면 현 분석자료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별 특성에 따른 변수들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동 부문에서 분석하는 자료의 한계상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밖에 할 수 없어 남녀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남녀가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함.

빈곤 및 분배지수 측정방법중 소득은 시장, 경상 및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에 대한 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빈곤지수는 빈곤율(절대 및 상대)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지수에 따라서는 빈곤감비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소득분배관련 지수와 상대적 빈곤은 가구균등화지수(OECD기준)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우선적으로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로 2003~2007년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태적인 분석의 경우는 가계조사자료중 2003~2006년 패널화된 자료를 기초로 파악하고자 한다. 통계청 가계조사는 기존의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명명된 조사이다. 기존 도시가계조사는 1인가구, 농어촌, 비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표본이 확대되고 가계조사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2003년) 점진적으로 도시가계조사에서 제외된 표본들이 포함됨으로써 조사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단점은 2003~2005년에는 1인가구와 농어가가구의 소득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⁵⁾.

3. 빈곤 및 분배지수

가. 빈곤율(Headcount Ratio: H)

빈곤율은 라운트리(Rowntree, 1901)이후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사용되어온 빈곤지수로서 Poverty Ratio 혹은 Headcount Ratio라고 부르고 있다.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소득(혹은 지출)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5) 2006년 이후에는 1인가구가 포함됨으로써 전국 대표성의 문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할 수 있음. 여전히 남은 문제는 농어가가구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임.

$$HR(y, z) = \frac{q}{n}$$

HR은 빈곤율⁶⁾, q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 수이며,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내며 y는 개인(혹은 가구)소득(혹은 지출), z는 빈곤선을 나타낸다.

나.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 및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

빈곤갭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개인(혹은 가구) n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의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차($g_i = z - y_i$)로 정의된다. 총빈곤갭은 빈곤층 전체의 빈곤갭을 합한 $\sum_{i \in z(y)} g_i = \sum_{i=1}^q (z - y_i)$ 가 된다. 여기서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 총빈곤갭은 미국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 the US)에서 개발되었다. 위에서 구한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눌 경우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IGR = \frac{\sum_{i=1}^q (z - y_i)}{qz}$$

6) 빈곤율은 head-count ratio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인데 만일 빈곤측정 단위가 가구일 경우 빈곤가구율, 그리고 빈곤측정단위가 개인일 경우 빈곤인구율로 표기하여 측정단위의 차이에 의한 혼동을 피할 수 있음.

여기서 IGR은 소득갭 비율, z 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 는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속한 개인의 소득(혹은 지출), 그리고 q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를 나타낸다. 위에서 추정된 소득갭 비율에 빈곤율을 곱할 경우,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이라 부른다. 즉, $PGR=HR \times IGR$ 이며, 소득갭 비율의 공식에서 분모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사람(혹은 가구)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사람(혹은 가구)으로 나타낼 수 있다.

$$PGR = \frac{\sum_{i=1}^q (z - y_i)}{n z}$$

2. 불평등지수

가. 분배율

소득 및 지출수준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경계점 및 점유율을 기준으로 분위별 배율을 산출함으로써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5분위 소득배율 = 상위 20% 점유율 / 하위 20% 점유율
- 10분위 소득배율 = 상위 10% 점유율 / 하위 10% 점유율

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널리 사용되어온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지니(1912)에 의해 고안된 지수이다. 로렌즈곡선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로렌즈곡선은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정렬한 인구의 비율이 횡단축을 나타내고 인구의 $x\%$ 에 의해 향유되는 소

득의 비율이 종단축을 나타낸다. 만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다면 로렌츠 곡선은 단순히 사선(45도선)이 되지만, 완전한 평등이 아닌 상태에서는 하위 소득집단들은 비율적으로 더 낮은 비율의 소득을 향유할 것이다. 지니계수는 위와 같은 로렌츠 곡선에서 절대적 평등선(사선)과 로렌츠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ito)-사선 아래쪽의 삼각형 지역-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약간의 조작을 하면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평균차의 정확히 절반(1/2)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G &= (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
 &= 1 - (1/n^2\mu) \sum_{i=1}^n \sum_{j=1}^n \text{Min}(y_i, y_j) \\
 &= 1 + (1/n) - (2/n^2\mu)[y_1 + 2y_2 + \dots + ny_n] \text{ for } y_1 \geq y_2 \geq \dots \geq y_n.
 \end{aligned}$$

제4절 분석결과

소득보장영역의 핵심지표는 절대 및 상대빈곤율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미만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위 50% 미만의 상대빈곤율은 외국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수준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4-3〉 소득보장영역의 핵심지표(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 50% 미만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 50% 미만
2003	10.0	14.7	11.1	14.6
2004	9.6	15.0	10.8	15.0
2005	10.5	15.3	11.7	15.2
2006	10.0	15.4	11.2	15.3
2007	9.7	15.3	10.9	15.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 정태적 분석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및 가구주 성별 절대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11.7%를 기준으로 큰 변화없이 11%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9%대에서 10%사이인 반면에 여성가구주가구들의 경우 남성가구주가구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20%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 대한 배제 및 차별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소득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빈곤에 머무르는 경향이 남성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간 불평등은 한 조사에 따르면 최하위인 것으로 보도됨. 즉 세계경제포럼이 11월 11일 발표한 '2008 글로벌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조사 대상인 130개국 가운데 10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 가구주 성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2003	11.1	9.5	21.1
2004	10.8	9.4	18.6
2005	11.7	10.1	19.7
2006	11.2	9.4	20.6
2007	10.9	9.3	18.6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절대빈곤율과 같이 중위 40%기준은 10%대, 중위 50%는 15%대, 중위 60%는 약 21%대에서 지난 몇 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절대빈곤율과 같이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빈곤율 수준은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에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4-5〉 가구주 성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0.1	14.6	20.2	8.5	12.4	17.5	20.3	28.3	37.2
2004	10.4	15.0	21.0	8.9	12.7	18.0	18.6	27.6	37.1
2005	10.8	15.2	21.2	9.2	12.8	18.2	18.7	27.3	36.6
2006	10.7	15.3	21.2	8.8	12.7	18.1	20.3	28.5	37.0
2007	10.5	15.2	20.7	8.8	12.8	17.7	18.8	27.2	35.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음은 가구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외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의 빈곤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0대의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 세대가 가장 활발히 근로활동을 하는 세대이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소녀소녀가장세대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가계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표본이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몇 가구의 소득 변화에 빈곤율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연령구분을 29세 이하로 제한하였다⁸⁾.

〈표 4-6〉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65세 미만	65세 이상
2003	10.9	9.6	9.1	10.0	37.7
2004	10.7	9.0	8.8	10.5	33.4
2005	9.8	10.1	8.9	11.2	36.8
2006	10.1	8.9	8.3	11.0	36.3
2007	11.6	7.6	8.1	9.9	35.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상대빈곤율을 통해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절대빈곤율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위 50%기준

8) 실제 자료를 통해 분석시 19세 이하의 빈곤율 변화가 작게는 15%대(2004년)에서 크게는 65%대(2007년)까지 변화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연령대를 29세 이하에 함께 포함함.

으로 45~47%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연령대의 경우에는 절대빈곤율과 같이 40대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30대와 50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4-7〉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이하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0.0	15.6	22.5	7.8	12.1	17.9	7.8	11.9	16.8
2004	10.2	17.0	24.0	8.0	12.4	18.6	8.1	11.9	17.5
2005	9.3	14.9	22.7	8.6	12.6	18.7	7.9	11.6	17.2
2006	10.0	14.5	21.7	7.6	12.0	18.1	7.4	11.2	16.9
2007	11.5	16.1	21.8	7.0	11.1	16.7	7.3	11.5	17.3
구분	50~65세미만			65세 이상			전체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9.9	14.4	19.7	39.4	47.6	55.9	10.1	14.6	20.2
2004	10.8	15.3	20.4	35.9	44.9	53.9	10.4	15.0	21.0
2005	10.7	15.1	20.7	37.5	46.5	55.3	10.8	15.2	21.2
2006	11.1	15.3	20.4	37.7	48.6	56.8	10.7	15.3	21.2
2007	9.9	14.5	18.8	35.9	45.0	52.7	10.5	15.2	20.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중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들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무원의 경우 1% 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2007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0.9%까지 증가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중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15.7%를 제외하고는 18~20%대의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근로조건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일반 정규직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빈곤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8〉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임시·일용직	
2003	0.3	3.3	5.8	17.7	17.0
2004	0.2	3.5	4.4	15.7	16.7
2005	0.2	3.1	7.5	19.5	18.1
2006	0.6	2.4	6.8	18.1	18.6
2007	0.9	2.3	5.4	18.3	18.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에도 빈곤수준이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순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좀 더 세분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전체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⁹⁾.

9)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2003년부터 비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공개에 있어 비임금근로자를 기존 자료와 같이 고용주, 자영자, 개인 및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무직으로 구분되던 코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임금근

〈표 4-9〉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0.3	0.5	1.4	2.5	4.6	7.4	4.4	8.8	15.2
2004	0.1	0.7	1.1	3.0	5.0	8.3	3.5	7.0	13.2
2005	0.3	0.5	0.9	2.5	4.3	7.6	6.7	10.9	18.1
2006	0.6	0.9	1.9	2.1	3.8	6.9	6.0	10.5	17.5
2007	0.9	1.1	1.6	2.1	3.5	6.3	4.9	9.7	16.6
구분	임시·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전체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5.6	23.5	32.7	16.2	21.6	27.6	10.1	14.6	20.2
2004	15.5	23.4	32.9	16.4	22.0	28.5	10.4	15.0	21.0
2005	17.4	25.7	35.5	17.2	22.7	29.4	10.8	15.2	21.2
2006	16.9	26.0	36.2	18.1	24.0	30.6	10.7	15.3	21.2
2007	17.9	27.0	36.6	18.2	24.4	30.5	10.5	15.2	20.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가구유형별 빈곤율 변화는 아동과 노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아동의 경우 빈곤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들의 경우 주로 부모, 양육자들의 소득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전체 빈곤율을 나타내는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판단된다. 반면에 노인들의 경우 전체빈곤율은 물론 아동빈곤율에 비해서도 3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열명 중 세명은 최저생계비 미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일반가구

로자 분석의 한계를 지냄.

들에 비해 매우 낮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절대빈곤선기준이 아닌 상대빈곤선 기준을 활용하더라도 아동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동 빈곤율의 경우 2005년 이후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 삶의 수준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빈곤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도 아동에 비해 노인들의 빈곤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빈곤율이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4-10〉 가구유형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아동	노인
2003	10.6	31.8
2004	10.3	28.4
2005	11.1	29.9
2006	10.1	30.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11〉 가구유형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아동			노인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8.9	13.6	19.4	32.6	40.6	48.3
2004	9.2	14.1	20.5	30.4	38.5	46.9
2005	9.4	13.9	20.4	30.6	38.1	46.3
2006	8.8	13.4	19.8	31.5	40.6	48.6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소득 종류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종류별로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는 시장소득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기 이전의 소득으로 정부의 공적이전제도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불평등완화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은 실제 사람들이 쓰게 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빈곤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불평등완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됨에 따라 빈곤율의 경우 가용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빈곤율이 증가하게 된다.

전체적인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기 전인 시장소득의 경우 12%전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될 경우 빈곤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소폭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이전소득효과가 저소득층에게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경상소득에 비해서는 빈곤율이 증가하지만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금이 공적이전소득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녀가구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가구주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수준이 소득종류별로 약 2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여성들이 한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남녀간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에 있어서도 남성가구주가구들의 경우 공적이전을 통한 경상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1~2% 포인트 이내인 반면에 여성가구주가구들의 경우에는 남성가구주가구의 약 두배인 4% 포인트 증반대에 이르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가구들의 공적이전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미약하여 남녀간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표 4-12〉 소득종류별 빈곤율(전가구기준, 최저생계비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3	11.7	10.0	11.1	9.9	8.5	9.5	22.7	19.3	21.1
2004	11.6	9.6	10.8	9.8	8.2	9.4	21.1	17.0	18.6
2005	12.7	10.5	11.7	10.8	9.0	10.1	22.9	18.4	19.7
2006	12.7	10.0	11.2	10.5	8.2	9.4	23.7	19.1	20.6
2007	12.5	9.7	10.9	10.6	8.2	9.3	21.9	17.1	18.6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빈곤선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이전에 의해 시장소득에 비해 경상소득의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13〉 소득종류별 빈곤율(전가구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1.3	16.1	21.2	9.9	14.7	20.1	10.1	14.6	20.2
2004	12.0	16.6	22.2	10.3	15.0	21.0	10.4	15.0	21.0
2005	12.6	16.9	22.6	10.8	15.3	21.4	10.8	15.2	21.2
2006	12.8	17.2	22.6	10.8	15.4	21.3	10.7	15.3	21.2
2007	13.0	17.3	23.0	10.5	15.3	21.1	10.5	15.2	20.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14〉 소득종류별 가구주 성별 빈곤율(전가구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남성 가구주	2003	9.4	13.6	18.2	8.2	12.4	17.2	8.5	12.4	17.5
	2004	10.1	13.9	18.9	8.7	12.5	17.8	8.9	12.7	18.0
	2005	10.4	14.1	19.3	9.0	12.8	18.2	9.2	12.8	18.2
	2006	10.5	14.3	19.2	8.8	12.5	17.9	8.8	12.7	18.1
	2007	10.9	14.5	19.7	8.7	12.7	17.9	8.8	12.8	17.7
여성 가구주	2003	23.3	31.3	40.3	20.5	29.1	38.5	20.3	28.3	37.2
	2004	22.5	31.4	40.4	19.1	28.3	38.5	18.6	27.6	37.1
	2005	23.4	31.1	39.4	19.7	28.2	37.7	18.7	27.3	36.6
	2006	24.5	32.5	40.0	21.4	30.2	38.3	20.3	28.5	37.0
	2007	23.8	31.5	39.5	19.7	28.4	37.1	18.8	27.2	35.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여기서는 빈곤선을 상향조정할 경우 나타나는 빈곤지표의 변화효과를 살펴보았다. 앞에서의 분석시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선을 상향조정하였는데, 여기서는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절대빈곤선을 이용하여 빈곤선을 상향조정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지표에는 빈곤율외에 빈곤갭비율을 추가하여 빈곤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절대빈곤의 경우 빈곤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빈곤갭비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2005년 이후 수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10) 간접적으로 절대빈곤선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중위소득을 이용한 빈곤선을 조정된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적용한 것과 중위소득 40%를 적용시의 빈곤율 변화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현행 최저생계비 결정이 전물량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측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한 적절성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소폭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빈곤 수준별 빈곤지표 변화(전가구,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빈곤율			빈곤갭비율					
	PL×1.0	PL×1.2	PL×1.5	PL×1.0	PL×1.2	PL×1.5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1.1	15.2	23.5	5.2	7.8	13.5	5.0	6.4	8.2
2004	10.8	14.7	22.0	5.0	7.5	13.0	4.9	6.5	8.4
2005	11.7	15.7	23.8	5.2	7.9	13.8	4.9	6.5	8.4
2006	11.2	15.4	23.2	4.9	7.6	13.4	4.8	6.4	8.4
2007	10.9	14.9	22.4	4.7	7.2	12.8	4.6	6.2	8.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PL은 최저생계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지금까지의 분석이 주로 빈곤지표(빈곤율과 빈곤갭비율)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준에 의한 빈곤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불평등지수라 할 수 있는 소득점유율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지난 5년동안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지표들이 빈곤선을 기준으로 그 미만(혹은 이하)에 있는 계층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불평등지수들은 전체 계층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소득점유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S80/S20(5분위배율)의 경우 2005년이 가장 높은 6.18배에서 2007년에는 6.11배로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S90/S10(10분위배율)의 경우에는 2003년 12.9배에서 2007년에는 약 12.1배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각 계층간 소득점유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S80/S20과 S90/S10의 차이가 6배, 12배라는 점에서 크게 개선되기 보다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단위: %, 배)

구분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S80/ S20	S90/ S10
2003	1.81	4.52	5.99	7.20	8.34	9.58	10.99	12.79	15.45	23.34	6.13	12.90
2004	1.82	4.45	5.95	7.20	8.37	9.62	11.05	12.86	15.52	23.17	6.17	12.73
2005	1.84	4.42	5.92	7.19	8.40	9.67	11.06	12.79	15.41	23.30	6.18	12.66
2006	1.88	4.41	5.92	7.16	8.36	9.61	11.04	12.87	15.48	23.28	6.16	12.38
2007	1.94	4.42	5.93	7.17	8.35	9.58	10.97	12.74	15.43	23.46	6.11	12.0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소득점유율이외에 두 번째로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의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경우에는 2003년에 비해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7년사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점유율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볼때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분배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17〉 소득종류별 지니계수(전가구기준)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3	0.336	0.325	0.323
2004	0.338	0.326	0.323
2005	0.341	0.327	0.324
2006	0.344	0.328	0.324
2007	0.348	0.329	0.32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2. 동태적 분석

동태적 분석은 EU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기준으로 두가지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빈곤선 미만의 가구 비율,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최소 2년 이상 빈곤선 미만의 가구 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시 기준은 3년 연속 가구자료가 존재하는 가구 중 각년도별로 6개월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역시 3년 연속 가구자료가 존재하는 가구 중 3개년 중 2년(매년 6개월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빈곤에 속한 가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패널화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년도는 2003~2006년의 약 4년간의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¹¹⁾.

분석에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간단하지만 2003~2006년사이의 우리나라의 빈곤이 어떻게 지속성을 띄고 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모두 2004년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빈곤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에 비해 2006년에는 빈곤지속성 I에서는 빈곤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빈곤지속성 II는 지난 3년중 2년 연속 빈곤한가구들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에서 보듯이 빈곤지속성 I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율에서는 약 4%대, 중위 50%에서는 약 8~9% 수준으로 여전히 많은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빈곤의 늪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율의 감소폭이 빈곤지속성 I에 비해 낮게 나타남으로써 한 번 가구가 빈곤에 빠지게 되면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

11) 분석표본의 구성은 두가지 단계로 구성함. 첫 번째 표본은 2003~2005년, 두 번째 표본은 2004~2006년으로 구성함. 원칙적으로 2003~2006년을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표본의 떨실율이 높아 자료분석에 한계를 지니게 됨 (강신욱·이병희, 2007).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분석의 초점으로 두고자 함.

〈표 4-18〉 빈곤지속성 I (전가구: 가구기준)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절대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절대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7.3	8.5	13.4	19.6	8.4	9.4	15.3	23.0
2004	7.4	8.8	13.7	20.9	8.5	10.0	15.4	23.4
2005	6.3	7.4	12.1	18.2	7.6	8.3	13.5	20.0
2006	6.1	6.5	11.7	17.3	6.9	7.6	13.0	19.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19〉 빈곤지속성 II (전가구: 가구기준)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절대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절대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4	4.2	5.2	9.0	14.5	4.8	6.0	10.2	16.9
2005	3.8	4.6	8.2	13.5	4.4	5.5	9.4	15.0
2006	3.8	4.1	8.1	13.4	4.7	5.1	9.2	15.1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OECD 주요국가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위 50% 경상소득 기준으로 3년중 1년동안 빈곤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3년 13.4% 수준인 반면에 OECD 17개국 평균은 8%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년중 2년동안 빈곤한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8~9%수준인 반면에 OECD의 경우 4%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2배정도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시 여전히 우

리나라는 소득에 있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20〉 OECD주요국가 동태적 빈곤(중위 50%, 경상소득)
(단위: %)

	3년중 적어도 한번	3년중 1년	3년중 2년	3년중 3년	연평균 빈곤율
LUX	10	4	3	3	6
NLD	10	6	3	1	5
DEU	11	5	3	2	6
DNK	11	7	2	2	6
FIN	11	6	3	3	7
BEL	12	7	2	3	7
AUT	12	7	3	3	7
FRA	14	8	4	3	8
OECD-17	17	8	4	5	10
CAN	18	7	5	6	13
ITA	19	8	6	6	12
JPN	19	9	5	5	12
GBR	20	9	5	5	11
POR	20	8	5	7	13
IRL	22	8	6	8	15
GRC	23	9	6	7	14
USA	23	9	6	8	15
ESP	24	11	7	6	14
AUS	25	12	6	7	14

주: 1) EU국가는 1999~2001년 ECHP, 캐나다는 2002~2004년 SLID, 호주는 2002~2004년 HILDA, 미국은 2001~2003년 SIPP, 일본은 2005~2007년 케요가구패널조사 자료임.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E Countries』 .

제5절 소결

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중 소득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제 수준 및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핵심지표(최저생계비, 중위소득 50%)를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2003년이후 빈곤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화폭은 크지 않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이하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 65세 이상,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빈곤율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계층의 경우 평균보다 2~3배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분배지수인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별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개인들이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수준이 개선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 및 노동여건이 개선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빈곤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시장소득의 빈곤율이 11.7%에서 2007년 12.5%로 오히려 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더욱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시장여건으로 인한 충격을 공적이전에 의한 지원이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영역의 배제중 핵심주제의 하나인 빈곤지속성을 통해 살펴볼 때, 3년중 1년 이상 절대빈곤율 이하의 경우가 6~7%, 2년 이상 절대빈곤율 이하가 4%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의 표에서 보듯이 OECD평균에 비해 약 2배 정

도 높은 수준으로 빈곤에 있어 우리나라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있고, 사회적 배제의 정도도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및 소득분배 정책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빈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구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이전의 제공은 빈곤가구들에게는 현상유지만을 제공할 뿐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계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남아있거나,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제5장 노동과 사회적 배제

제1절 들어가며

최근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의 다층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개념은 다양한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자 결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과거 사회정책의 핵심문제였던 소득빈곤 및 실업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배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중요한 지표는 노동과 소득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더욱이 최근 유럽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복지개혁 문제의 저변에는 ‘노동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노동문제는 시공간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여전히 실업이 문제이며, 어떤 사회에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확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문제의 성격이 다르다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복지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는 사회적 배제를 설명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나, ‘88만원 세대’ 등의 표현은 노동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문제가 저임금·고용불안의 문제로 전화하는 양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형상으로 실업률의 감소는 고용문제가 개선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증가가 ‘비자발적 형태’의 단기 노동이동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여전히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사회적 배제에 관한 영역별 지표 중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 해당 지표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그 배제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검토

1. 노동의 위기

1990년대 중반이후 서구에서 자주 언급되던 용어 중 하나는 <노동의 위기> 또는 <노동의 종말>과 같은 것이었다. 이는 인류사에 있어 노동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삶에 있어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이상이였다. 물론 이는 노동하지 않는 삶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 일상을 압도하는 현실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근대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왔다. 이성을 통해 인간이 자연이라는 제약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

한 목표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19세기 사회사상을 지배했던 이상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실업과 저임금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이념적 가치는 20세기말 시도되었던 거대한 문명사적 프로젝트의 좌절과 함께, 빠르게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문명사적 프로젝트란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감소할 것이라는 이상주의와 이를 위한 정치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가 1997년 프랑스의 좌파연합정권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선택은 기대했던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였으며, 이 좌절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의 사회적 재분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좌절은 시장을 통한 노동의 분배를 수용하고, 그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실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노동의 이동이 증가하고 근로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내 개별 근로자가 경쟁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현대사회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가치가 불안정한 노동이라는 현실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불안정한 노동은 여전히 해방되어야 할 질곡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의 폭은 매우 좁다. 더욱이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자리도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보다 일자리의 안정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위험 중 하나가 바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것은 소득감소와 경력의 단절로 이어지며, 최

악의 경우에는 빈곤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으로부터의 배제가 반드시 실업, 특히 장기실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는 ‘불안정한 고용’ 또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각국의 정책동향

실업과 고용불안은 21세기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이념의 좌우를 넘어 모든 정권의 일차적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국의 정치체제와 생산체제 그리고 고용체제와 복지체제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이는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고용문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고용보호법제가 강력하고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회피함에 따라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노동의 유연화가 확산되고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저임금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셋째,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한편에서는 고용안정성이 높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경우이다. 한국사회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각국의 고용문제가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단순히 실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고용불안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지

표는 <실업·저임금·고용불안>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국 차원에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좀 더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정책현안으로 다루며,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이다. 물론 유럽연합이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실천계획이나 지표개발은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포괄적으로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배제의 문제의 중심에는 여전히 고용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사회적 배제 개념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한 이후 자본, 재화, 서비스,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약화되고, 사회권이 위협받을 개연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저변에는 통합된 유럽사회의 비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유럽(Liberal Europe)과 사회유럽(Social Europe)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담론과 정책화는 후자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별 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평가해 왔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다음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고용에의 참여와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2) 배제의 위협을 방지하는 것, 3)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4) 모든 관련 조직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 등이다(EU, 2006).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실천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소득, 고용, 의료, 주거, 소외 등 다양한 문제에 천착

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중 각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큰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역시 고용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모든 유럽국가가 일차적으로 강조해 왔던 사항은 일자리 창출이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험해 왔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각종 사회적 배제 지표 중 노동에 관한 문제가 지나치게 실업 및 장기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라는 최근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이후 유럽사회에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문제가 중요한 지표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우,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업률은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지표라고 말할 수 없다. 외환위기이후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실업률은 2005년 현재 3%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오히려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는 비임금근로자의 높은 비중 문제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밖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약 35%)은 매우 높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또한 필요한 것이다.

3. 지표와 관련한 연구동향

사회적 배제와 관련해서 노동문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지표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미 앞의 장에서 사회적 배제의 지표 전반에 대한 소

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일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해 언급되었던 사항 중 주목할 만한 지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하겠다.

먼저 Robinson & Oppenheim이 제시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지표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실업과 비임금근로자 그리고 미취업자에 대한 규모와 추이 그리고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언급함에 있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지표와 비교할 때, 배제의 총체적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는 조작적 정의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문진영, 2004).

유럽연합의 사회보장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가 2001년 발표한 사회적 배제에 관한 기본지표(Primary Indicators)와 부차적 지표(Secondary Indicators)는 주로 실업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실업률과 장기실업률(ILO 기준 12개월 이상) 그리고 초장기실업률(24개월 이상), 실업가구의 가구원수 등이 주요한 지표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지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사회적 배제에 관한 지표화 작업이 유럽연합 확대에 따라 사회정책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국이 공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비교할 때, 강신욱과 김안나의 2005년 연구결과는 보다 종합적인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실업을 외에도 저임금근로자 비율과 불안정근로자의 비율을 주요한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근로빈곤 가구 비율,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근로자의 조세부담율, 산업재해율 등의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지표를 구성한 후, 각종 데이터를 통해 그 실태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강신욱·김안나, 2005).

보다 최근에는 사회권에 관한 지표개발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결과가 발

표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주요한 사회권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안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에 대한 지표를 담고 있다. 아래 표는 그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 지표는 기본골격에 있어서는 위에 언급하였던 강신욱·김안나가 제안했던 지표와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표개발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가능한 것과 향후 측정해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해진 측면이 있다(문진영 외, 2007).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회적 배제의 지표들이 실제 측정을 감안하여, 제한된 지표만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지표라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지표의 단순화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설정은 국내 데이터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국제비교를 위해 단순화해야 할 지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1〉 노동관련 사회적 배제지표의 구성

영역	차원		지표구성		
			제1수준	제2수준	제3수준
노동	노동시장	전체고용	- 고용율	- 비경제활동인구비율	- 여성고용율 - 25~34세 여성고용율 - 여성비경제활동 - 25~34세 여성비경제활동 - 혼인, 임신, 출산전후 탈락율
		경제활동인구	- 실업율 - 취업율	- 비임금근로자비중 - 성별청년층실업율	- 자영업/무급가족종사비율
		비정규인구	- 한시적 근로자비율	- 전체비정규직비율 - 저임금근로자비율	- 임시, 일용, 호출근로, 시간제, 파견, 용역, 사내하청
	노사관계	- 노조조직율	- 고용형태별 조직율	- 단체협상 적용율 - 고용형태별단협적용율	

자료: 문진영 외(2007),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인용

제3절 지표의 구성과 조작적 정의

1. 지표구성에 반영해야 할 사항

본 연구에서는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가 갖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데이터의 신뢰성과 지속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표구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지표는 임금(Wage)과 고용안정(Job Stability)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용문제에 있어 근로소득과 고용안정은 근로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며,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적 일자리일 수 있으며, 고용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저임금의 일자리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수차례 언급하였던 것처럼, <실업과 저임금 그리고 고용불안>을 지표화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고용율과 실업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표에 저임금근로자와 고용불안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고용불안에 관한 지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유지기간이나 비자발적 이탈(Involuntary Separation) 등이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정태적 관점과 동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이동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이동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만을 설명하는 것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노동은 근로소득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떠한 집단이 하향이동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용이하지 않다. 이 점에서 그 동태적 측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단체협상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 외에도 노동조합 등을 통한 집단적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근로소득과 고용을 보장받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의 규모와 영향력이 고용 및 복지정책에 대한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5-2〉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지표 기본안

	기본지표	하위지표
전체	- 고용율 -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여성 고용율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실업	- 실업률 - 실업경험(횟수)	- 장기실업률 - 신규실업률
근로소득	- 저임금근로자 비율	-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 청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고용불안	- 비정규직 비율	- 임시직 근로자 비율 - 특수직 근로자 비율
노사관계	- 노조조직율	- 단체협상 적용율

2. 지표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를 지표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거나, 지표 자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영역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노동에 관한 지표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근로빈곤층이란 가구원 개인의 취업상태와 근로소득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소득이 가구

단위로 합산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가구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는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조세 등 각종 정책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주로 고용문제에 기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설명하는 지표로 포함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둘째, 비임금근로자 문제를 지표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 내부의 소득격차도 매우 크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비자발적인 이유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실업률이나 저임금근로자 비율 등은 이들의 실태를 반영하기 힘든 지표라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해서 일자리의 질의 문제를 파악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회보험 가입여부의 문제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보험 가입문제는 지표에 포함시키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사회보험 중 일부는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또 다른 일부는 취업상태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특정 집단의 특정 사회보험 가입을 나타내게 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넷째, 취약계층의 노동문제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이 강제되는 집단의 문제이다. 저발전국의 경우, 아동의 노동문제를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생계보장이 취약하여 노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문제가 해당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참여가 필요한 집단의 문제이다. 그것은 주로 장애인 등

취업을 희망하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별 사회적 배제 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끝으로 주관적 지표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각종 지표화 작업에서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직업만족도(Job Satisfaction)에 대한 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소득,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검토가 필요한 지표안

	기본지표	하위지표
근로빈곤층	- 근로빈곤층 비율	- 종사지위별 빈곤층 비율
비임금근로자	- 영세자영업자 비율	- 노인 영세자영업자 비율
사회보험	- 사회보험 가입율	- 취업상태별 사회보험 가입율 - 종사지위별 사회보험 가입율
취약계층	- 노인 취업율 - 장애인 취업율	- 노인 취업빈곤층 비율
주관적 지표	- 일자리 만족도	- 소득,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

3. 지표의 구성

앞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했던 기본지표(안)와 보완지표(안)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존재를 고려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에 해당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가를 감안하여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둘째, 본 연구 중 집단별 사회적 배제에

관한 지표와의 중복여부를 고려하였다. 그것은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지표와의 중복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최종지표는 위의 두 지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먼저 소득과 관련해서 저임금근로자 비율 외에도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율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감안할 때, 이 집단 중 저소득 자영업자의 규모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어 근로빈곤층 비율을 포함시켰다. 이는 종합적인 지표이며, 소득과 관련한 지표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그 발생원인이 주로 고용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에 관한 지표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회보험 가입율을 포함시켰다. 이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통해 측정할 수 있고,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끝으로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포함시켰다.

〈표 5-4〉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한 최종 지표

		기본지표	하위지표
기본 지표	전 체	- 고용율	- 여성 고용율
	실 업	- 실업률	- 장기실업률 - 신규실업률 - 실업경험(횟수)
	소 득	- 저임금근로자 비율 - 저소득자영업자 비율	-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 청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고용불안	- 비정규직 비율	- 임시직 근로자 비율 - 특수직 근로자 비율
	노사관계	- 노조조직율	- 단체협상 적용율
보완 지표	근로빈곤층	- 근로빈곤층 비율	- 종사지위별 빈곤층 비율
	사회보험	- 사회보험 가입율	- 취업상태별 사회보험 가입율 - 종사지위별 사회보험 가입율
	주관적 지표	- 일자리 만족도	- 소득,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

4. 지표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데이터

앞서 언급한 지표를 활용하여 노동으로부터의 배제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각 지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작적 정의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표는 국제적으로 합의되었거나, 통계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지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저임금근로자 및 저소득자영업자 비율, 실업경험 횟수, 근로빈곤층 비율, 특수직 근로자 비율 등의 문

제이다. 먼저 저임금 또는 저소득을 판별하는 소득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위임금 및 중위사업소득의 2/3를 기준선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실업경험 횟수는 실업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업에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빈곤층 비율과 관련해서는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가구소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과 근로(Working)라는 개념을 현재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지, 지난 1년간의 취업개월 수를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지, 또는 지난 1년간의 주된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최근의 경향은 지난 1년간의 주된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끝으로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특수직 근로자란 호출근로 및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입차주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직 근로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각종 지표 중 공통지표라 할 수 있는 기본지표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노조조직율과 단체협상 적용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계청과 민주노총 등에서 발간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여기서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끝으로 한국복지패널데이터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통계청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할 것이다(아래 <표 5-5> 참조).

〈표 5-5〉 지표의 조작적 정의

지 표	조작적 정의
- 고용율 · 여성 고용율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5~64세) = 여성취업자/여성생산가능인구
- 실업률 · 장기실업률 · 신규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2개월 이상 실업자/전체 실업자 = 신규실업자/전체 실업자
- 실업경험(횟수)	= 실업횟수/실업경험자
- 저임금근로자 비율 ·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 청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 중위임금 2/3이하 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 =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 = 청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
- 저소득자영업자 비율	= 중위소득 2/3이하 자영자/전체 자영자
- 비정규직 비율 · 임시직 근로자 비율 · 특수직 근로자 비율	= 임시·일용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 = 임시직 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 = 특수직(호출, 파견근로)/전체 임금근로자
- 노조조직율 · 단체협상 적용율	= 조합원수/(임금근로자 - 공무원) = 단협 적용 조합원/전체 조합원
- 근로빈곤층 비율 · 종사지위별 빈곤층 비율	= 중위50%미만 가구 내 취업자/전체 취업자 = 중위50%미만 가구원/종사상지위별 총인원
- 사회보험 가입율 · 취업상태별 사회보험 가입율 · 종사지위별 사회보험 가입율	= 보험가입자/사회보험 가입대상 = 임금/비임금근로자의 가입율 = 종사상지위별 가입율
- 일자리 만족도 · 소득에 대한 만족도 ·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	= 해당 없음.

〈표 5-6〉 지표측정을 위한 데이터

지 표	데이터
- 고용율 · 여성 고용율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실업률 · 장기실업률 · 신규실업률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실업경험(횟수)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저임금근로자 비율 ·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 청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저소득자영업자 비율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전국가계조사
- 비정규직 비율 · 임시직 근로자 비율 · 특수직 근로자 비율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경활데이터
- 노조조직율 · 단체협상 적용율	- 통계청 데이터 - 통계청 데이터
- 근로빈곤층 비율 · 중사지위별 빈곤층 비율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전국가계조사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전국가계조사
- 사회보험 가입율 · 취업상태별 사회보험 가입율 · 중사지위별 사회보험 가입율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전국가계조사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전국가계조사 - 한국복지패널데이터(2006년) + 전국가계조사
- 일자리 만족도 · 소득에 대한 만족도 ·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	-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데이터 -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데이터 - 2005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데이터

제4절 분석결과

여기서는 위의 지표 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를 주로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태적 분석은 동태적 분석의 틀 안에서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아래 표는 전체 고용율과 성별 고용율의 추이를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보여주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997년 외환위기이후 고용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다, 200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은 그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7〉 성별 고용율 추이(1주 기준)

	전체	남자	여자
1995	60.6	74.6	47.6
1996	60.8	74.4	48.1
1997	60.9	73.9	48.6
1998	56.4	69.2	44.4
1999	56.7	69.1	45.2
2000	58.5	70.7	47.0
2001	59.0	71.0	47.7
2002	60.0	72.2	48.4
2003	59.3	71.9	47.4
2004	59.8	72.0	48.3
2005	59.7	71.6	48.4
2006	59.7	71.3	48.8
2007	59.8	71.3	4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율의 추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떠한 연령집단의 고용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40대의 고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60세 이상 인구집단의 경우에는 38.1%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태적 추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율이 외환위기 이전 시점인 199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령집단이라 할 수 있는 20대 인구집단을 제외하더라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업률이 보여주는 바와 전혀 다른 정보, 즉, 전체 근로가능인구 중 많은 인구집단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8〉 연령별 고용율 추이

	계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1996	60.8	10.3	63.9	75.2	79.5	70.9	39.1
1997	60.9	9.7	63.9	75.4	79.3	71.1	39.9
1998	56.4	8.3	57.4	70.9	74.6	66.4	36.7
1999	56.7	9.0	57.5	71.1	74.6	66.1	37.3
2000	58.5	10.3	60.1	72.5	76.4	66.5	37.7
2001	59.0	10.1	60.2	72.7	76.6	66.8	38.0
2002	60.0	9.4	61.3	73.0	77.4	68.2	38.7
2003	59.3	8.6	60.2	72.6	76.9	67.6	36.2
2004	59.8	8.4	61.1	72.6	77.3	67.8	36.9
2005	59.7	8.0	61.2	72.3	77.1	68.1	36.9
2006	59.7	6.7	60.2	73.2	77.7	68.5	37.4
2007	59.8	6.6	60.0	72.9	78.3	69.7	3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아래 표는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실업률은 지난 1주간의 구직활동과 취업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실업률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뒤, 2000년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2007년 현재 전체 실업률이 3.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녀 실업률을 보면,

남성이 3.5%이고 여성은 2.4%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성 실업률은 실질적 실업률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많은 여성들이 실망실업의 형태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공식실업률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문제를 보여주는데 적합한 수치라고 말하기 힘들다.

〈표 5-9〉 성별 실업률 추이(1주 기준)

	전체	남자	여자
1995	2.1	2.3	1.7
1996	2.0	2.4	1.6
1997	2.6	2.8	2.3
1998	7.0	7.8	5.7
1999	6.3	7.2	5.1
2000	4.1	4.7	3.3
2001	3.8	4.3	3.1
2002	3.1	3.5	2.5
2003	3.4	3.6	3.1
2004	3.5	3.7	3.1
2005	3.5	3.8	3.1
2006	3.3	3.6	2.8
2007	3.0	3.5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의 추이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각 연령집단 중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집단은 15~19세의 인구집단이며,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를 미진학 하였거나, 중도 탈락한 집단, 대학 미진학 고등학교 졸업생 중 실직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0대의 실업률이 3.0%로 전체 실업률에 가장 근접하고, 40대와 50대의 실업률은 각각 1.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40대~50대 인구의 경우, 가계를 책임지는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근로 가능한 집단이라면 대개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 그러나 60세 이상 인구의 실업률 등은 현실의 구직수요 등을 감안하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표 5-10〉 연령별 실업률 추이

	계	15 - 19세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1996	2.0	7.4	4.4	1.4	1.1	0.9	0.4
1997	2.6	9.8	5.3	1.9	1.5	1.2	0.8
1998	7.0	20.8	11.4	5.7	5.6	5.3	2.4
1999	6.3	19.5	10.1	5.3	5.2	5.1	2.3
2000	4.1	13.8	7.1	3.4	3.3	2.9	1.3
2001	3.8	13.3	7.0	3.0	2.8	2.6	1.1
2002	3.1	11.1	6.3	2.8	1.9	1.8	1
2003	3.4	12.1	7.4	2.9	2.1	2.0	0.9
2004	3.5	13.4	7.5	2.9	2.2	2.2	1.1
2005	3.5	11.6	7.4	3.2	2.4	2.3	1.2
2006	3.3	9.8	7.3	2.9	2.2	2.1	1.3
2007	3.0	8.1	6.7	3.0	1.9	1.9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 사회의 저임금근로자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많지 않다. 그 중 하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부가조사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입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표된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저임금근로자(상용직 근로자 중위임금의 2/3를 기준으로)의 비율은 여성 근로자에게서 매우 높고, 동태적으로는 2000년 24.6%에서 2004년 25.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1〉 저임금근로자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11.7	9.6	10.6	10.2	12.7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43.8	37.6	40.4	37.9	44.3
전체 저임금근로자 비율	24.6	20.9	22.9	21.6	25.9

자료: 강승복,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현황과 특징(2005)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의 또 다른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2007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은 32.4%로 나타나며,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13.6%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집단의 증가추세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차츰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가 전반적으로 고용불안 및 고용단절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5-12〉 비정규직근로자 추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1995	58.1	27.9	14.0	100.0
1996	56.8	29.6	13.6	100.0
1997	54.3	31.6	14.1	100.0
1998	53.1	32.9	14.0	100.0
1999	48.4	33.6	18.0	100.0
2000	47.9	34.5	17.6	100.0
2001	49.2	34.6	16.2	100.0
2002	48.4	34.5	17.2	100.0
2003	50.5	34.7	14.8	100.0
2004	51.2	34.1	14.7	100.0
2005	52.1	33.3	14.6	100.0
2006	52.8	33.1	14.2	100.0
2007	54.0	32.4	13.6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 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온전하게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취업인구 중 빈곤가구의 취업인구를 추정하는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수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취업빈곤층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아래 표는 우리 사회의 취업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즉, 빈곤율의 증가속도에 비해 취업빈곤층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2003년 이후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3〉 취업빈곤층 비율

	빈곤율	취업자 중 빈곤층
1995	7.89	6.00
1996	9.13	6.88
1997	8.71	6.62
1998	10.57	8.65
1999	10.48	8.57
2000	9.63	7.78
2001	9.71	7.71
2002	9.33	7.35
2003	11.12	8.78
2004	11.47	9.11
2005	11.45	9.22
2006	11.07	8.92
2007	10.84	8.92

주: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취업자 대상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및 전국가계조사자료 원자료

아래 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고용형태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85.2%, 86.6%, 86.2%, 95.0%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입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가입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을 제외하는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60~70%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표가 보여주는 바는 고용형태가 취약한 집단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게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고,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 평균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1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근로자	85.2	86.6	86.2	95.0
정규근로자	93.0	94.7	94.2	95.8
비정규근로자	52.1	49.6	47.3	90.9
채택/가내근로자	19.5	19.4	18.6	69.1
파견/용역근로자	88.5	88.3	87.3	94.8
일일근로자	31.7	14.1	13.4	90.9
단시간근로자	28.3	26.9	26.2	79.1
기간제근로자	80.6	82.5	80.3	94.7
한시적근로자	24.6	19.0	18.3	86.0

주: 전체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제외한 수치
 자료: 통계청(200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제5절 소결

우리 사회에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는 자아실현 등 주관적 가치의 문제 외에도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에 언급했던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는 아래와 같이 진단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는 전체 근로가능인구집단 중 많은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발적 선택을 통한 집단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망실업 등으로 인해 많은 인구집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던 바와 같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촉진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감춰진 노동인구를 현재화하는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실업률은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고용단절을 경험하는 임시직근로자의 증가와 저임금근로자의 증가 문제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외에도 고용불안정도와 저임금(저소득) 정도를 파악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제도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 또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한계는 비임금근로자, 특히 자영업자 중 저소득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는 결국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통계인프라가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다양하게 추정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취업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추세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근로능력자 또는 취업자의 빈곤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전체 취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이 200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 사회의 빈곤정책이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는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1/3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회보장에서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고통이 배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사회보험 중심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유연한 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의료와 사회적 배제

제1절 서론

건강에 관련된 정의는 의학적 모형(*medical model*)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사회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건강모형(*holistic model*)으로 대별된다. 의학적 모형이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로 신체의 전신 기능이 온존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건강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간주된다. WHO의 건강 개념은 단순히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의 차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많은 연구가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다(WHO, 2005).

Whitehead(1992)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건강(건강상태)의 불형평적 분포는 회피가능하고 불필요하여 불공평한 것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위해물질 혹은 위해 환경, 필요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부족한 접근성 등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인자(*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학분야의 연구주제였는데 이들 요소는 다차원적이며 사회, 경제, 환경, 개인의 속성을 모두 반영한다. 각 요소는 그 자체로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연관된 과정을 통하여 복합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SDOH의 영역에 포함되는 주요 변수는 교육, 주거, 의료이용, 영양, 소득(크기와 분포), 사회안전망, 실업 및 일자리 등이다(O'Hara, 2006). 건

강에 대한 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두는 SDOH 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신체활동, 건강생활 등 건강에 대한 개인적 요소보다 사회적 요인이 건강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해결 과정도 인구집단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에 중점을 둔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개인, 집단간 건강상의 차이를 사회역학에서는 건강형평성 또는 건강 불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왔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6). 이는 건강형평성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건의료재원에 대한 형평성에 주목하는 보건의료 형평성 방법과¹²⁾ 구별하여 접근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어 있으며 과정으로서의 보건의료 형평성과 건강결과에 대한 건강형평성으로 구분하여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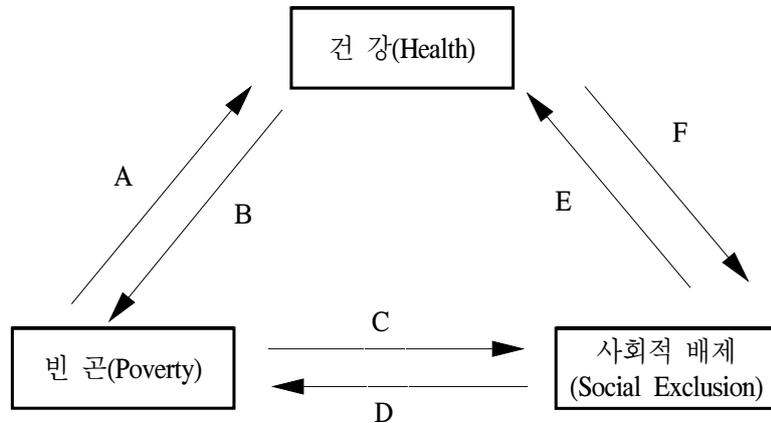
사회적 배제의 한 영역으로 건강 수준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지표는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미충족의료(unmet need) (김안나, 2007) 등이 있다. 유럽연합의 Laeken 사회배제 지표 중 건강영역지표인 건강수명이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역학 분야에의 건강형평성이 건강결과 지표에 대한 불평등 분포와 요인에 주목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기대여명이나 주관적 건강은 사회적 배제를 직접적(direct)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 사회적 배제의 결과 혹은 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Jehoel-Gijsbers et al., 2007). Jehoel-Gijsbers는 사회적 배제의 한 지표이며 동시에 사회적 권리의 한 가지 하부지표로서, 의료서비스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long waiting time)을 포함하였다. 2004년에 발표된 ‘사회적건

12)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연구는 주로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형평성 연구는 의료서비스접근성, 보건의료재원, 주관적 건강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위원회와 유럽연합진행위원회(EU commission)의 통합보고서’는 사회적 견인 분야의 하나인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의료서비스 대기 시간(waiting time), 저소득 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보건의료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행정적 장벽, 질병 예방 관리(inadequate screening, vaccination, awareness-raising) 등을 언급하였다.

제2절 이론적 배경

[그림 6-1] 건강, 빈곤, 사회적 배제의 상호관계



자료: EHMA. 2005

[그림 6-1]은 건강과 빈곤,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각 요소는 타 영역의 원인인자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배제의 결과 빈곤이 초래 또는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의해서도 빈곤이 방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

수준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6-1]에서 보여준 상호간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는 높은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는 직업사다리에서 보다 높은 위치로 오를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¹³⁾. 건강수준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이런 [그림 6-1]에서 A 방향의 힘이 작용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Graham(2000)은 건강결정요인을 물질적요소(material), 행동요소, 정신적요소로 구분하였는데 건강결정요인이 범주별로 묶이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머물거나 여러 범주에 걸쳐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빈곤예방(A)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재정적 장벽은 모든 집단에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고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보이는데 빈곤완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의료자원의 지역적(지리적) 불균형 분포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다.

A의 방향과 반대로 빈곤을 초래하거나 강화하는 낮은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B)은 보건의료체계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집단에 대해 보다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응성(responsiveness)을 높이는 개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허순임, 2007) 경우 높은 정규(법정) 혹은 비정규(비급여) 본인부담금이나 급여범위외 지출의 역작용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환자 보호자(carer)가 환자돌봄에 의해 빈곤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봄수당이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간 실업상태나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정책적 개입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유의 정책적 개입을 정당화 하는 이론 중의 하나는 선택이론

13) 이를 health causation이라하며 조기사망이나 낮은 건강상태가 이번부에 해당한다.

(selection theory)인데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개인의 건강수준(health selection)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에 바탕을 둔다. 건강선택은 건강수준이 빈곤을 초래한다고 보는 견해(health causation)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Manor, 2003).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요소(F)의 작용양태와 양 범주의 관련성은 건강과 빈곤에서 보여준 health causation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구조 및 특정 인구집단(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인종 등)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서 건강문제의 결과로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EuroHealthNet, 2003). 다양한 낙인찍기(stigmatization)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정신과적 서비스 제공이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환자(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사회적 개입이 될 수 있다(Tamsma, 2005).

건강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영향(E)은 빈곤과 건강 사이의 관련성 부분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취약(배제)계층은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이는 물질적 양태나 행위적 결과로 나타난다.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배제요소는 사회경제적 범죄, 지역사회 폭력, 실업, 낮은 교육수준 및 달성도, 한부모가정 및 10대미혼모 등이다(Mental Health Europe, 2003).

제3절 건강영역 지표 선정

1. 건강영역 사회적 배제 지표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 건강영역의 지표로 자주 사용되어온 변수는 <표 6-1>과 같다.

〈표 6-1〉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배제의 건강영역지표

변수	설명	출처
기대여명	0세 1세 60세 에서의 기대여명(남녀 구분)	EU, Laeken Indicator
주관적 건강상태	15분위 소득수준(균등화 소득)별 6세 이상 인구 중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인구비율	EU, Laeken Indicator
의료욕구 미충족	장기질환을 앓지만 정기적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	김안나, 2007
대기시간	일차의사나 전문의를 만나기 위한 대기시간	EU Council, 2004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각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10개 기초지표(primary indicator)¹⁴⁾와 8개의 2차 지표를 개발하였다. 회원국들은 18개의 공통지표 이외에 각국의 실정에 맞고 정책적 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지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김안나, 2007).

대기시간은 보건의료체계의 국제적 비교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대기시간은 치료를 위해 내원이 결정된 환자가 치료받기¹⁵⁾ 전까지의 시간이나, 대기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후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외래나 입원서비스를 포함하여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점 대기시간 지표는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¹⁶⁾에 있어서의 대기시간 지표인데(Siciliani, 2004). 2003년 OECD 평균 대기시간

14) 10개 기초지표는 빈곤율, 소득불평등, 영구적 실업자율, 실업수준, 지역적 통합(실업을 분포), 상대적빈곤, 실업가정에 속한 인구수, 교육 조기탈락, 기대여명, 주관적건강상태 이다.

15) 전문의 진단, 진찰을 위한 consultation 약속도 포함한다.

16) 선택적 수술이란 당장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가 적은 생명과 관계가 적은 예를 들면 고 관절 대체수술(Hip replacement surgery) 등을 말한다.

은 3개월이며 최대 대기시간은 1년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iciliani, 2004). 대기시간지표는 공공부문의 지출이 많은 나라에서 관심이 큰 주제로 공급자측 개입정책이 주요한 정책내용이 된다.

2. 건강 영역 지표와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할 건강지표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규범적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미충족의료,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이는 보건부문의 주요 과제인 접근성(access),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건강결과(health outcome)와 관련이 있다.

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의료비 지출의 크기와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분포이다(양봉민, 2006). 특히 의료비의 과부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절대적 의료비용의 크기만으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비 과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김태일, 2008).

$$\text{의료비 과부담} = \frac{\text{의료비 지출}}{(\text{소비지출} - \text{식료품비})} \times 0.4 \quad \dots\dots (1)$$

즉 과부담 의료비는 기초생계지출로 간주되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액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태일, 2008). 식(1)의 분모는 가구의 지불능력에 해당하는데 총수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뺀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식료품비를, Xu는 국제빈곤선(Xu, 2003)을 사용하였다(신호성, 2004).

주관적 건강상태는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배제의 영향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배제를 직

접적(direct)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 사회적 배제의 결과 혹은 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건강상태의 불형평성을 연구한 논문들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위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문화적 차이나 지역에 따라 응답자의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고¹⁷⁾ 주관적이라는 측면 때문에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있으나 사망률이나 의료이용 등에서 강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신호성, 2008). 개인의 건강상태(health outcome) 측정도구인 EQ-5D, Short Form-36(SF-36), HUI 등을 건강형평성 측정에 적용한 연구(van Doorslear, 2003)가 소개된 이후, 건강수준에 대한 형평성 분석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 수준 측정도구에 의한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분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형평성 분석은 집중계수를 이용하거나 나쁨과 좋음의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로 5분위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이를 이분위로 변형할 경우 아래 2개 그룹을 하나로 묶고 위 3개 그룹을 다른 하나의 범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van Doorslear, 2003).

‘규범적 의료서비스’란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보편적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의료서비스 범주를 의미한다.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이용에 따라 건강증진이 주어지는 의료이용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는 것으로 이 영역은 세계보건기구의 효과적 보장 개념과 일치한다.

$$EC_{ij} = Q_{ij} U_{ij} | N_{ij} = 1 \quad \dots\dots (2)$$

17) 연구자에 따라 "상황에 따른 보고 오류(state-dependent reporting bias)", "기준 측정치 편향(scale of reference bias)", "응답범주 이동(response category cut-point shift)"으로 명하고 있다(신호성, 2008).

Q_{ij} 는 개인(i)이 접근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j) 제공을 통해 기대되는 의료의 질이며, U_{ij} 는 의료서비스 이용 확률이고, $N_{ij} = 1$ 의료서비스(j)에 대한 개인(i)의 실질필요(true need)이다.

규범적 의료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는 나이, 성별, 또는 임신 등과 같은 특정 계기에 의해 규범적으로 인정되어지며 효과적 의료 보장 측정은 주로 의료이용여부, 또는 의료서비스 효과에 집중되어 진다. 이 범주에 드는 의료서비스는 소아 예방 접종, 비타민 A 섭취, 자궁경부암/유방암 검사, 미성숙아 의료처치, 산전의료서비스(prenatal care) 등이다. 본 연구에서 규범적 의료서비스범주에 대한 이용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관련학회에서 제안한 기간이내의 암검진(위암검사, 유방암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대장암검사, 간암검사) 유무이다. <표 6-2>에 암종류별 검진대상과 검진주기를 표시하였다(국립암센터, 2008)

<표 6-2> 암종류별 검진 대상자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위 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유 방 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2년
간 암	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1)	6개월
대 장 암	50세 이상 남녀	1년

주: 1)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anti-HCV Ab) 양성으로 확인된 자

출처: 국립암센터, 2008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여부는 주관적인 측면(perceived need)과 공급자 판단에 따른 의료필요(evaluated need)로 분류될 수 있다. 의료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이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물리적인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이다(김수정, 2008).

Donanedian(1973)에 따르면 미충족의료가 발생하는 것은 공급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건강상태, 대상자는 원하지만 받지 못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기준으로 필요하지만 대상자가 받지 못한 서비스, 대상자가 원하지만 이용가능하지 않은 자원, 전문가적 기준으로 필요하지만 이용가능하지 않은 자원,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했으면 예방 혹은 경감/제거될 수 있는 질병 등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의료필요에 대한 판단이나 미충족의료에 대한 판단이 소비자와 공급자적 측면에 따라 상대성이 있고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의료필요를 가지고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어렵다(배상수,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의료요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미충족의료라고 정의한다(박종영, 2005).

〈표 6-3〉 사회적 배제 건강영역 지표(핵심지표)

지 표	조작적 정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기초생계지출로 간주되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액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 가구의 비율
규범적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암검진 조사대상자 중 학회기준 암검진 기간내 검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
미충족 의료	19세 이상 성인 중 치료지연을 포함하는 미충족의료 응답자
주관적 건강상태	19세 이상 성인의 건강상태가 나쁨/아주나쁨 인구의 비율

3. 분석자료

건강영역지표 개발에 사용될 자료는 각 영역 및 대상에 대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복지패널자료와 의료비 과부담을 산출하기 위한 전국가계조사(2003년 이전 도시가계조사)와 건강영역 배제의 세부지표 분석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이다. 도시가계조사는 1998년, 2001년 200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7년 이전까지 3년주기로 실시된 단면조사 자료이다.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자료는 1998년 이후의 것인데 사회적 배제 분석과 관련하여 1998, 2001, 2005년의 3개년도 자료가 사용가능하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모집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일반조사구 24만 6천여 개로 구성, 전체 가구수는 1,480만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과 2005년 인구구조의 차이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인 표본조사구 추출방식은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이며 2005년 조사의 경우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총 12,001가구로 조사완료율은 89.9%이다(강은정, 2006).

제4절 분석결과

1. 건강영역에 대한 개괄적 분석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사회적 건강결정 요인(SDOH)을 구성하는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가진다. 빈곤의 경우 가구 균등화소득 5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인구집단을 의미하며 교육은 19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중등교육(중학교 졸업 이하) 교육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측정한다. 두 가지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하여 의료비과부담 지출비율, 규범적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미충족의료, 주관적 건강상태를 <표

6-3>에 정의된 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1998년 미충족의료를 호소한 집단의 크기는 16.35%이다. 이를 소득과 학력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표 6-4>와 같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미충족의료를 호소하는 집단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들면 1998년의 경우 저소득 집단의 미충족의료 비율은 25.57%이나 일반집단은 13.92%로 10%이상 낮다. 2005년의 미충족의료 비율은 13.5%로 1998년에 비하여 낮아졌다. 그러나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미충족의료 집단의 불균등 분포 현상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표 6-4>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미충족의료

구분		미충족의료								
		1998			2001*			2005		
		아니오	예	합계	아니오	예	합계	아니오	예	합계
소득	저소득 집단	74.43	25.57	100	98.68	1.32	100	77.37	22.63	100
		18.58	32.65	20.88	46.88	50.72	46.93	17.87	33.48	19.98
	일반 집단	86.08	13.92	100	98.86	1.14	100	88.77	11.23	100
		81.42	67.35	79	53.12	49.28	53.07	82.13	66.52	80.02
	합계	83.65	16.35	100	98.78	1.22	100	86.5	13.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	저학력 집단	66.56	33.44	100	97.67	2.33	100	75.85	24.15	100
		27.06	50.02	31.97	32.85	48.94	33.1	26.95	44.33	29.77
	일반 집단	84.3	15.7	100	98.8	1.2	100	87.15	12.85	100
		72.94	49.98	68.03	67.15	51.06	66.9	73.05	55.67	70.23
	합계	78.63	21.37	100	98.43	1.57	100	83.78	16.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2주간 의료이용에 있어서 미치료 비율임

규범적의료 이용여부는 5가지 암질환 중 한가지라도 암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경우 규범적의료 이용자라고 판단하였다. 조사시기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30%정도의 인구집단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규범적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규범적의료를 이용하고 있지 못한 인구집단의 비율은 21.7%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규범적의료 이용자의 비율도 높아지나 학력수준과는 반대 경향을 보여 중등교육 이상 인구집단에서 오히려 낮은 수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1년과 2005년 모든 연도에서 나타난다.

〈표 6-5〉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규범적 의료이용 여부

구분	규범적의료 이용여부									
	1998			2001			2005			
	아니오	예	합계	아니오	예	합계	아니오	예	합계	
소득	저소득 집단	82.49	17.51	100	82.91	17.09	100	70.23	29.77	100
		23.14	17.72	21.96	16.58	12.98	15.83	21.34	20.72	21.15
	일반 집단	77.12	22.88	100	78.45	21.55	100	69.46	30.54	100
		76.86	82.28	78.04	83.42	87.02	84.17	78.66	79.28	78.85
	합계	78.3	21.7	100	79.16	20.84	100	69.62	30.3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	저학력 집단	72.38	27.62	100	78.14	21.86	100	55.4	44.6	100
		30.66	42.23	33.17	35.59	37.82	36.06	23.45	43.27	29.47
	일반 집단	81.24	18.76	100	79.73	20.27	100	75.57	24.43	100
		69.34	57.77	66.83	64.41	62.18	63.94	76.55	56.73	71
	합계	78.3	21.7	100	79.16	20.84	100	69.62	30.3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인구집단의 비율은 1998년 21.86%, 2001년 15.73%, 2005년 19.83%로 조사되었다. 2005년의 경우 저소득 집단의 41.27%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일반집단의 경우 14.07%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 비교하면 중등교육 이하 집단에서는 42.45%, 중등교육 이상 집단에서는 10.37%만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여 교육수준의 차이가 더 불균등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인다.

〈표 6-6〉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주관적 건강상태								
		1998			2001			2005		
		나쁨	중음	합계	나쁨	중음	합계	나쁨	중음	합계
소득	저소득	34.97	65.03	100	35.65	64.35	100	41.27	58.73	100
	집단	35.13	18.28	21.96	35.89	12.09	15.83	44.03	15.49	21.15
	일반	18.17	81.83	100	11.98	88.02	100	14.07	85.93	100
	집단	64.87	81.72	78.04	64.11	87.91	84.17	55.97	84.51	78.85
	합계	21.86	78.14	100	15.73	84.27	100	19.83	8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	저학력	34.84	65.16	100	30.69	69.31	100	42.45	57.55	100
	집단	52.87	27.66	33.17	70.37	29.66	36.06	63.1	21.16	29.47
	일반	15.42	84.58	100	7.29	92.71	100	10.37	89.63	100
	집단	47.13	72.34	66.83	29.63	70.34	63.94	36.9	78.84	70.53
	합계	21.86	78.14	100	15.73	84.27	100	19.83	80.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민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한 건강 영역 사회적 배제 지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9세 이상 성인 중 치료지연을 포함하는 미충족의료 응답자 비율을 산출하는 미충족의료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시행된 각 연도별로 미충족의료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특히 2001년의 경우 지난 2주간 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미충족 의료 여부를 묻고 있어 다른 연도의 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규범적의료서비스 이용여부 측정시 가용자료의 한계로 국립암센터에서 제안한 기간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암검진 주기를 매 2년 단위로 측정하고 있어 감암 6개월 대장암 1년의 검진주기에 따라 측정할 수가 없었다.

〈표 6-7〉 과부담의료비 지출(가계조사)

구분	과부담의료비									
	1998			2001*			2006			
	아니오	예	합계	아니오	예	합계	아니오	예	합계	
소득	일반	97.54	2.46	100	96.93	3.07	100	97.3	2.7	100
	집단	89.94	84.53	89.8	89.67	84.23	89.49	75.91	57.09	75.24
	저소득	96.03	3.97	100	95.1	4.9	100	93.83	6.17	100
	집단	10.06	15.47	10.2	10.33	15.77	10.51	24.09	42.91	24.76
	합계	97.39	2.61	100	96.74	3.26	100	96.44	3.5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	저학력	96.55	3.45	100	94.48	5.52	100	93.11	6.89	100
	집단	24.95	33.19	25.16	25.79	44.62	26.4	28.31	56.76	29.32
	일반	97.67	2.33	100	97.54	2.46	100	97.82	2.18	100
	집단	75.05	66.81	74.84	74.21	55.38	73.6	71.69	43.24	70.68
	합계	97.39	2.61	100	96.74	3.26	100	96.44	3.5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과부담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비율을 전국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간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는 1998년 2.33%, 2001년 2.46%, 2006년 2.18%로 조사되었다. 과부담의료비 지출은 소득수준과 학력에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이며 2006년은 다른 연도에 비하여 그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과부담의료비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건강영역 사회적 배제 비율을 살펴보았다. 복지패널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모든 영역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패널에는 건강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표에 대한 사회적 배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지표에 한해서 배제정도를 살펴보았다.

과부담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인구집단은 2.96%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 집단의 경우 과부담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아져 9.01%에 이르나 일반집단의 경우 1.88%만 이에 해당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정도를 살펴보면 중등교육 이하 집단의 4.03%, 고

등학교 이상 학력을 소지한 집단의 2.08%에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2006년 복지패널 조사에서 15.72%의 집단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83% 보다 호전된 것이다.

〈표 6-8〉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한 건강영역 배제 지표

위험요소(SDOH)			과부담 의료비			주관적 건강상태		
			아니오	예	합계	좋음	나쁨	합계
2006년 복지패널	소득	일반집단	98.12	1.88	100	89.25	10.75	100
			85.8	53.93	84.85	89.87	58.01	84.86
		저소득 집단	90.99	9.01	100	56.4	43.6	100
			14.2	46.07	15.15	10.13	41.99	15.14
		합계	97.04	2.96	100	84.28	15.7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	저학력 집단	95.97	4.03	100	75.57	24.43	100
			44.96	61.8	45.46	40.76	70.63	45.46
		일반집단	97.92	2.08	100	91.53	8.47	100
			55.04	38.2	54.54	59.24	29.37	54.54
		합계	97.04	2.96	100	84.28	15.7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과부담의료비 지표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연한이 짧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는 인구의 비율도 높아진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보다는 교육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의 불균등 분포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빈곤, 실업, 주거, 영양 등 사회적 배제의 주 영역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져 왔다. 또한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은 개

인의 질병치료나 의료이용보다는 거시적 수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의료비과부담 지출비율, 규범적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미충족의료,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의 4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정도를 살펴보았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4가지 건강영역의 불평등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건강 영역의 의료적 배제가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계 각 국은 의료적 배제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강결과(health outcome)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장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4가지 영역의 건강영역 사회적 배제는 산출자료가 각기 달라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기존자료에서 사용가능한 변수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의료적 배제에서 경향과 연관성을 보여주는 하지만 건강영역의 포괄적인 배제 지표로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향후 본격적인 조사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에 대한 개인의 지식이나 행동변화, 사회경제적, 환경요소의 변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변화 등은 의료적 배제를 극복하는 중요지점이다. 이는 건강영역 배제 지표의 개발과 함께 건강불평등을 해소/완화하는 정책들 간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개입들에 있어서 건강영역 배제의 주류화(mainstreaming)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건강결과는 비슷한 위험요소를 공유하고 있어 특정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추진보다 여러 질병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정책개입을 우선시하며 전통적인 보건의료 관점에서 영역 밖으로 간주되어 왔던 주택이나. 교통체계, 최저임금, 고용정책 등을 포함하는 다분야 다협력관계(multi-sectors, multi-partners) 방식이 요청된다.

제7장 주거와 사회적 배제

제1절 서론

사회적 배제는 빈곤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제기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빈곤연구는 물질적 결핍으로서 빈곤의 전반적인 규모와 비중, 그 사회경제적 분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즉 빈곤을 정태적 현상으로 가정하고 접근해서 빈곤의 구조적 양상을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사회적 배제 이론은 사회적 배제를 일차원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서로 상이한 차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사회 현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여러 차원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설명변인을 도출해 내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배제 이론은 빈곤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적 자원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삶의 재생산영역에 해당하는 주거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소득이 낮거나 가용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적절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고, 열악한 주거는 적절한 고용·건강·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타 영역과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거영역에서의 배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 지표별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주거영역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주거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적절한 주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housing minimum standard)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거는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택'과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포괄하고 있다.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확보된 주택으로, 단순한 거처로서의 의미를 넘어 각종 자연재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필요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한편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는 적절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부당한 사생활 침해나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직장과 이웃관계, 적절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등의 주변 사회적 연계망으로부터 소외·배척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거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2. 주거문제와 사회적 배제

주거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영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득이 낮거나 가용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적절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고, 열악한 주거는 적절한 고용·건강·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

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picker, 1998). 이와 관련하여 Arthurson & Jacobs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와 주거문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Arthurson & Jacobs, 2003: 8).

첫째, 주거빈곤가구가 경험하는 현재의 주거문제는 주거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제의 결과라 할 수 있다(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의 주거문제). 예를 들어 열악한 주거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소득과 같은 물질적인 자원의 결핍, 고용기회의 박탈 등의 요인에 의해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고, 결국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부집단이 주택시장의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결과로 귀착하는 것은 다른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과정에 의한 것으로, 주거이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거지에 집중함으로써 ‘거주에 적절한’ 주거와 ‘거주에 부적절한’ 주거의 양립이 초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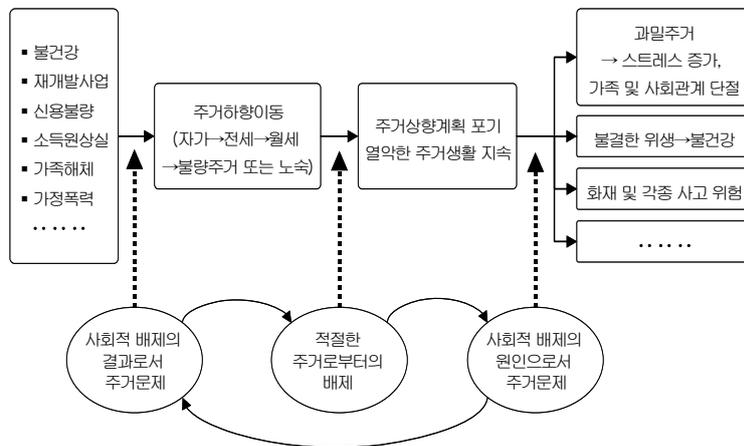
둘째, 현재의 주거문제는 주거영역에서 작동하는 배제를 통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단적인 예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비록 잔여화된 점유형태이기는 하지만 해당사회에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 정책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여기에 접근 가능한 가구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는 가구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안전하고 저렴하며 양질의 주택에 대한 주거빈곤가구의 접근성이 어떻게 제약되는지가 ‘주거로부터의(from housing)’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주거문제는 주거 이외의 영역에서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는 주거문제). 이는 부적절한 주거가 사회적 배제의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건강,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의 이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주거의 역할을 인지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세 가지 범주로 설명되는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는 <그림 7-1>처럼 순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을 심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남원석·전홍규, 2004).

[그림 7-1] 사회적 배제와 주거문제의 관계



자료출처: 남원석·전홍규(2004)

3. 지표와 관련한 연구동향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지표는 주택보급률이었다. 주택보급률이 모든 주택문제를 대별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른 주거지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 보급률 지표는 그 의미가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의 주거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표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자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 지표로, 최근 주택보급률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거지표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면적 및 방수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기준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여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면적 및 방수 기준과 시설기준을 활용되고 있다.¹⁸⁾

최근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주거복지지표들이 개별적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아직 합의된 지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실현의지 및 정책적 노력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종합 주거복지지표로 주거복지평가지표가 있다.

한편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지표를 평가영역별로 구분하였을 때 특히 지표가 제시되지 못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이나 주거 관련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거부문의 사회적 배제지표로 설정된 주거빈곤지표는 주거빈곤지표는 물리적 차원의 주거빈곤과 경제적 차원의 주거부담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주거빈곤지표를 설정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여기서는 물리적 주거빈곤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각 기준별 미달가구를 개별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경제적 차원의 주거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쪽방 거주가구수와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를 포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 성능, 환경 각각의 항목별 기준을 설정함. 이와 함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표 7-1〉 사회적 배제 중 주거빈곤 지표

구분		개별 지표
물리적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침실기준 미달가구수 -시설기준 미달가구수 -면적기준 미달가구수
	전기 및 상수도 미공급가구	
	방1개 거주가구	-방1칸에 거주하는 가구수 -3인 이상 가구원이 방1칸에 거주하는 가구
	1인당 주거면적/ 가구당 주거면적	
경제적 주거빈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가구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지표	-전세자금 대출금 연체자수 -전세자금 대출금 연체금액
	강제철거 주택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	-주거용 건물이 아닌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수
	쪽방거주가구수 노숙자 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그리고 최근 사회권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안되었는데, 여기에 주거 영역에 대한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표 7-2〉 주거권 지표 구성안

영역	지표	세부항목
주택의 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면적 및 방수기준 미달가구수 -시설미달 가구수 -구조·성능·환경미달 가구수
	주거비 부담정도	-중위소득가구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일반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일반가구수 대비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구 비율
주거권 침해 및 부정	홈리스 수	-거리노숙인 수과 쉼터 노숙인의 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쪽방거주 인구수	-쪽방 거주인구 수
	강제퇴거 가구수	-강제퇴거 가구수
	비자발적 이주가구수	-개발사업 대상지역주민, 재해지역 주민수 등을 합한 수
주거권 실현과정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여부	-주거권을 보장한 법, 규정 여부
	지자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비율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비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비율
	개인이 주거권 침해를 당한 경우 정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부	-주거권 침해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 여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7, 사회적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제3절 주거와 사회적 배제 지표소개

1. 주거 지표 구성

본 연구에서 우선 주거영역을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의 두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은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에서 거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와 방1개 거주가구로 측정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적 및 방수기준과 시설기준, 그리고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면적과 방수,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경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결과를 토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가구는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구조·성능·환경과 관련한 복지패널조사가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주택법상의 구조·성능·환경기준 역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다분히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면적 및 방수, 시설미달 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가구는 복지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파악한다.

또 다른 물리적 적정성 지표로는 방1개 거주가구인데, 1인 가구나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방1개 거주가구라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방1개 거주가구는 3인 이상 가구원이 방1개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한편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 지표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떨어져 적절한 주거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는 임대

료 연체가구수와 홈리스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쪽방거주인수, 그리고 지하거주 가구수로 한다. 임대료 연체가구수는 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거나 임대료가 없어 집을 옮긴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또 다른 경제적 적정성 지표인 홈리스수와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 그리고 쪽방거주인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다. 다만 쪽방거주인수의 경우 전국 11개 쪽방상담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쪽방 거주인의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쪽방거주인의 정확한 규모라고 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쪽방 거주인수 역시 홈리스수 및 비닐하우스촌 거주가구수와 마찬가지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조사·발표한 자료를 활용토록 한다. 그리고 지하 및 반지하 거주가구수는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그 동안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주거지표로 설정되지 못하였는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주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표 7-3〉 주거부문 사회적 배제지표 구성안

	지표	세부항목
주택의 물리적 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면적 기준 미달가구수 -방수 기준 미달가구수 -시설 기준 미달 가구수
	방1개 거주가구	-3인 이상 가구원이 방1칸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	임대료 연체 가구수	-2달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었거나 임대료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가구수
	홈리스 수	-거리노숙인 및 쉼터 노숙인의 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쪽방거주 인구수	-쪽방 거주인구 수
	지하거주 가구수	-지하 및 반지하층 거주가구수

그런데 주거부문 사회적 배제지표 중 핵심지표로는 물리적 적정성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경제적 적정성 부문에서는 임대료 연체가구수와 지하거주 가구수라 하겠다.

2. 지표별 변화추이

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주거부문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2005년 현재 206만 2천가구이며 이는 전체 일반가구의 13.0%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2000년 334만 4천 가구(일반가구의 23.4%)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그 동안의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노후·불량주택의 감소,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노력 등으로 전반적으로 물리적 부문에서의 주거 배제는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준요건별 미달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경우 74.3%에서 65.9%로, 침실기준 미달가구는 14.8%에서 8.1%로 감소한 반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39.1%에서 40.2%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주택공급 및 개량을 통해 시설기준과 침실기준 미달가구는 줄어든 반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 있음을 말한다(국토연구원, 2007).

〈표 7-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단위: 만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시설기준 미달가구	248.5(74.3)	136.0(65.9)
침실기준 미달가구	49.5(14.8)	16.7(8.1)
면적기준 미달가구	130.8(39.1)	82.8(40.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계	334.4(23.4)*	206.2(13.0)*
일반가구수	1,431.2	1,588.7

주: () 기준년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에 대한 미달요건별 미달가구수의 비율

* 기준년도 총 일반가구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그런데 시설기준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온수목욕시설 등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미달여부를 살펴본 결과, 2005년 현재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가구는 118.6만 가구 전체 가구의 7.5%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온수 목욕시설 미달가구가 74만 가구(4.7%), 그리고 전용 입식부엌 미달가구는 38.3만 가구(2.4%)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특히 전용 수세식 화장실 미달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6.6%에서 2005년에는 7.5%로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온수 목욕시설도 2000년 13.4%에서 2005년 4.7%로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주거시설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5〉 시설기준 항목별 미달가구 규모 추이
(단위: 만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전용 입식부엌 미달가구	96.3(6.7)	38.3(2.4)
전용 수세식 화장실 미달가구	237.2(16.6)	118.6(7.5)
온수 목욕시설 미달가구	192.0(13.4)	74.0(4.7)
일반가구수	1,431.2	1,588.7

주: () 기준년도 총 일반가구수에 대한 기준 미달가구 비율

나. 3인 이상 방1칸 거주가구수

3인 이상의 가구원이 방 한 칸에 거주하는 가구수를 통해 과밀주거를 파악할 수 있다. 방 한 칸에 3인 이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가구수는 2005년 현재 55,766가구이며, 이는 방 한칸 사용가구의 5.4%, 전체가구의 0.3%에 해당한다. 그런데 2000년 조사에 의하면 3인 이상 방 한 칸 거주가구가 150,938가구로 전체가구의 1.1%를 차지하였는데, 5년 동안 약 10만 가구 0.8퍼센트 포인트가 줄어들어 과밀주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6〉 3인 이상 방 한 칸 거주가구수 추이
(단위: 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가구원 3인 이상 방 1칸 거주가구수	150,938(1.1)	55,766(0.3)
방 1칸 거주가구수	1,123,518(7.9)	1,025,443(6.5)
일반가구수	14,311,807	15,887,128

주: () 기준년도 총 일반가구수에 대한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다. 임대료 연체가구수

임대료 연체가구수는 주거의 경제적 적정성 지표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복지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임대료 연체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임차가구는 2006년 11.9%에서 2007년에는 8.9%로 줄어들었다. 이를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6년에는 일반가구의 8.2%가 임대료 연체 및 연체의 부담으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16.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07년에는 일반가구는 5.0%가 연체 및 연체의 부담으로 인한 주거이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저소득가구는 14.1%가 연체 및 연체부담으로 인해 주거이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2006년에 비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간의 차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표 7-7〉 임대료 연체 및 연체의 부담으로 인한 주거이동 경험여부

구분	2006년			2007년		
	있다	없다	계	있다	없다	계
일반가구	103 (8.2)	1150 (91.8)	1253 (100)	67 (5.0)	1268 (95.0)	1335 (100)
저소득가구	176 (16.2)	908 (83.8)	1084 (100)	139 (14.1)	847 (85.9)	986 (100)
계	279 (11.9)	2058 (80.1)	2337 (100)	206 (8.9)	2115 (91.1)	2321 (100)

자료: 복지패널조사 자료, 2006, 2007

라. 홈리스 수

일반적으로 홈리스(homeless)는 거리노숙에서부터 강제퇴거의 위협에 몰려 주거불안상태에 놓인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홈리스를 거리노숙과 그에 준하는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홈리스는 거주할 곳을 상실하여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 노숙인과 응급구호차원에서 임시거처로 제공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해당된다.

그런데 홈리스는 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고, 또한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거배제 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허나 홈리스는 당장 거주할 곳을 상실한 사람들로 대표적인 주거로부터 사회적 배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표화가 필요하며, 또한 역으로 지표화를 통해 홈리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홈리스 수를 파악하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최근 자료로 우리나라의 홈리스 수는 2004년 말 기준으로 거리 노숙인이 1,400여명, 쉼터 거주 홈리스가 약 4,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마. 비닐하우스 거주가구수

비닐하우스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그 내부를 얇은 판자로 쪼개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처음부터 판자나 천막, 비닐 등을 이용하여 주거용으로 만든 무허가 주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신발생 무허가 주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무허가 불량주택인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불법 점유에 의한 점유의 불안정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대표적

주거빈곤계층으로, 주거배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의 존재는 적절한 주거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 거주자들이 스스로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역시 주거빈곤계층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 기타 항목을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과 기타의 두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움막 거주가구의 총 규모는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이 전국에 2만2개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모두 2만3천 여 가구, 약 5만7천 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2004년 현재 서울 및 서울 인접 경기지역에 47개 비닐하우스촌이 확인되었고, 여기에 5,0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공사, 2005). 그런데 최근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각종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바. 쪽방 거주인수

빈곤가구의 마지막 잠자리로 알려진 쪽방은, 노숙의 위기에 처한 최빈곤층의 불안정한 거처로, 쪽방 거주인구는 점유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한다. 현재 쪽방은 물리적 특성이나 거주민의 특성, 그리고 주체¹⁹⁾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쪽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대한주택

19) 쪽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쪽방을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숙박시설’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2000)

공사, 2005).

그 동안 쪽방은 보건복지부에서 쪽방상담소를 통해 정기적인 현황파악이 이루어졌으나, 몇 년 전부터 공식적인 현황파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쪽방상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7년 12월 현재 전국 쪽방 수는 7,512개이고, 거주 주민수는 6,20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9,030개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최근 쪽방지역들이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정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7-8〉 쪽방 수 변화추이

구분	2001.12	2002.12	2003.12	2007.12
쪽방 수	5,716	9,535	9,030	7,512

자료: 쪽방상담소 자료

사. 지하거주 가구수

2005년 현재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파악된 우리나라의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층 거주 가구는 모두 586,649가구, 1,419,784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지하거주는 공간적으로 서울·수도권지역에 집중(95.4%)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 지하거주 가구가 일반가구의 10.7%(355,427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10가구 중 한 가구는 지상이 아닌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주거는 지상의 방 한칸을 마련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하주거는 대표적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주택소유형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하거주 가구 중 자가거주는 14.4%에 불과하고, 대부분(83.6%)은 임차거주에

해당한다. 게다가 지상층과 지하거주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금 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4,904만원, 경기도는 3,379만원, 그리고 인천은 2,058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지상층 거주가구와 지하층 거주가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손낙구, 2008).

제4절 정책적 개선방안

지표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거부문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의 물리적 적절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즉 물리적으로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는 2000년에서 2005년 동안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및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비·개량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또한 데이터의 제약으로 2006년에서 2007년간의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물리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주거배제는 완화되고 있으나,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임대료 연체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계층에 따라 감소폭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감소정도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거배제를 보여주는 지표인 홈리스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쪽방 거주인, 그리고 지하거주 가구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주거로부터 심각하게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동안의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주거여건이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주거로부터 배제되는 현상들도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거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절한 주거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일부는 오히려 사정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정책은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한 이른바 맞춤형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거로부터 심각하게 배제되고 있는 집단인 홈리스를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거주구나 쪽방 거주인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지표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표산출을 위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거부문은 특히 그러한데 그 동안 국민의 주거여건에 대한 별도의 전문조사가 없었으며, 5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일반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2006년부터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조사자료의 경우에도 주거부문의 사회적 배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홈리스나 비닐하우스, 쪽방 등의 경우 기존의 실태조사로는 현황 파악이 힘든 상태이며, 별도의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제 3 부: 대상별 접근

제8장 노인과 사회적 배제

제1절 서론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린 고령화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복지 후발주자로서 갑자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도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인 완충기제로 작용하던 가족관계의 변화와 전통 윤리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는 핵심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생존 및 케어의 문제로 인해 간과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곧 노인의 상실된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통합을 기하는 문제이다. 노인의 사회통합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배경에는 ‘생산’의 영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즉, 생산력의 문제가 가장 지배적인 가치규범으로 자리잡은 산업사회에서 생산력이 저하된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무기력, 쓸모없음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와 배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배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단위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의 사회적 역할 상실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지위하락 및 헤게모니 상실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으로 노인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노인 집단 내에서도 불평등, 사회통합 등에서 차이가 유발되고 있다. 즉, 노인은 지금까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과 생애주기에 걸친 경험은 매우 이질적이며 이에 따라 노인 집단 내부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배제의 정도 또한 이질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제 측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향후 취약 노인계층의 삶의 질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다.

제2절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정의

사회적 배제의 개념 정의는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협의의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는 소득 빈곤과 유사어로 사용된다. 주로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협의의 정의에서는 종종 “social cohesion”이라는 개념이 동반되는데, 즉 응집력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한편, 광의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multidimensional 한 배제, 자원의 결핍, 사회적 권리의 박탈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용되며 결과로서의 배제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배제가 규정된다. 이렇듯 배제가 광의의 차원에서 정의될 경우 배제의 과정은 다차원적인 박탈, 가족 유대의 파괴, 사회적 관계의 파괴 그리고 정체성 및 삶의 목적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 포괄적인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한편, 주체에 따라 사회적 배제에 대해 상이한 정의를 내리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Social Exclusion Unit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빈곤 논쟁”의

일환으로서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SEU의 개념화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의 복잡한 특성은 “linked problems”로 규정된다.

2. 노인의 사회적 배제 메카니즘

가. 구조기능론적 관점

구조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행위는 사회구조 내에서 취하는 기능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규범, 역할, 사회화, 지위 등이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을 따를 때, 개인은 사회질서의 부분으로 체계의 요구를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사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을 따르며 노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표적 이론이 은퇴이론이다. 은퇴이론은 노년기에 사회로부터 은퇴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기능적이라고 결론 짓는다.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를 위하여 은퇴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며 주류적인 사회질서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노인은 배제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적 전개가 가능해 진다(정경희 외, 2006).

나.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긴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환경, 개인,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가 미드(G.H.Mead)인데, 미드는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아정체성이 형성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정체성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I'가 '노인'이라는 사회적 정의인 'Me'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노년기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노년기에 어떠한 생활양식을 갖고 생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첫째, 사회에서 요구되는 관습과 규범 둘째, 자신의 생애경험으로 결정된다.

또한 연령차별주의적 사회에서 노인들은 노화라는 가면을 씌우로서, 그리고 노화를 은폐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려 한다. 노화라는 가면(masking) 이론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해결책은 나이든 외관 뒤에 숨어 있는 젊은(좋은) 정체성을 보는(꺼내) 것이며, 노화 은폐(masquerade)론에 따르면 은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령차별주의와 노화에 동반하는 인성의 완성도 제고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노인은 젊다고 하는 은폐를 통하여 내적으로 노화해가는(성숙해가는) 자아를 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해 노인들은 스스로의 노화를 숨기거나 자기배제(self-exclusion)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정경희 외, 2006).

다. 정치경제학적 관점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의 곤경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와 경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 이상 착취할 노동력이 없는 쓸모없는 집단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선진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빈곤해지며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이유가 설명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집단인 노인에게 경제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노인의 배제를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론은 노인 배제의 본질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 치중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배제는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제3절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 소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모두 여섯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크게 핵심지표와 고유지표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핵심지표는 소득, 노동시장,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며, 고유지표는 그 외에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 상황에 특수한 영역으로서 사회활동 영역과 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 8-1〉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

구분	영역	지표	분석자료원
핵심 지표	소득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복지패널
	노동시장 배제	•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노인조사 ¹⁾
	주거 배제	• 화장실 사용형태(단독수세식 사용 여부)	복지패널
	건강 배제	• 주관적인 건강 상태	복지패널
고유 지표	사회활동 배제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	노인조사
		• 노인 사회단체 참여여부	노인조사
	관계적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노인조사

주 1): 연구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노인의 경우 노동시장 배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 노동시장 배제분석은 이러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노인조사 자료사용

각 영역별 지표는 이하 <표 8-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핵심영역의 지표에 대한 해설은 앞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고유영역의 지표에 대한 설명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사회활동의 배제

사회활동의 배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박탈되는 맥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이 겪게 되는 구조적 배제의 일환으로 제기되며, 구체적으로 교육(학습 권리)의 배제, 사회참여의 배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교육(학습 권리)의 배제는, 노인의 평생교육활동 참여가 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시대적 감각을 회복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통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노인들의 교육활동 참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인들 가운데 욕구는 있지만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실제 활용을 하는 경우 타 교육 프로그램에의 정보 획득, 노인관련 사회활동 및 단체 등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 등으로 인해 더욱 풍부한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쇄적으로 사회적 참여에 더욱 소극적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인의 교육에의 접근성은 교육권을 넘어서서 다측면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교육 배제는 노인의 평생교육 인프라 및 기타 교육 인프라의 경험 및 수혜를 기준으로 파악하도록 하겠다. 즉,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을 교육 배제를 경험한 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란 노인이 타인 및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성과물이 전체로서의 사회, 또는 집단으로 귀결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원봉사활동, (집단적) 여가활동, 정치 활동 등이 포함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채 개인적으로 보내는 여가 시간과 같은 ‘개인적 활동’과 구별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유의미한 사회 공헌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규명된 바 있다. 반면,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요소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노인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이 사회참여로부터 얼마만큼 배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사회활동 배제의 중요한 요소이며, 여기서는 노인들의 사회단체 참여여부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사회단체는 본 분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조사한 정치, 문화, 사교, 운동, 종교, 직업 등 총 6가지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들 6가지 사회단체 활동 중 어느 한 가지에도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노인을 “사회참여 배제” 상태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2. 관계의 배제

타인과의 관계는 크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공적영역의 관계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가장 큰 매개체인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은퇴이후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한 노인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의 관계 형성이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적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노인의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차지하게 된다.

사적영역의 관계는 좁게는 가족에서부터 친구,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웃관계까지 포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의 관계적 차원의 배제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족 및 친척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적 영역의 관계를 다시 ‘가족 및 친척’과 ‘이웃 및 친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계적 배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그리고 ‘이웃 및 친구와의 접촉빈도’를 기준으로 규명하도록 하겠다.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 빈도가 6개월에 한번 이하인 경우 ‘가족 및 친척 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웃 및 친구와의 접촉 빈도가 3개월에 1회 미만인 경우를 ‘이웃 및 친구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상, 고유영역의 배제지표는 <표 8-2>에 정리된 바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표 8-2> 고유지표의 조작적 정의

영역	지표	배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
사회활동 배제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 노인 사회단체 참여여부	정치, 문화, 사교, 운동, 종교, 직업 등 6가지 유형의 사회단체 중 어느 한 가지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관계적 배제	•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접촉빈도가 6개월에 1회 이하인 경우
	•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접촉빈도가 3개월에 1회 이하인 경우

제4절 노인과 사회적 배제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앞서 <표 8-1>과 <표 8-2>에 제기된 바와 같이 핵심지표 영역과 고유지표 영역에서의 배제와 각각의 지표에 준해 분석된다. 각 영역의 지표에 의해 전체 표본은 ‘배제’와 ‘비배제’로 구분되며, 연령, 성별, 교육수준의 세 가지 공통 독립변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와 세 가지 독립변인에 경제활동여부, 지역변수를 추가 독립변인으로 투입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표 8-3> 독립변수 정의

독립변수	조작적 정의
연령	young old(65~74세)/old old(75세 이상)
성별	남/여
교육수준	초졸이하/중졸이하/고졸이상
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비경제활동
지역	도시/농어촌

1. 노인과 소득영역 배제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는, 핵심지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로 구분된다.

〈표 8-4〉 연령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연령		Total
	75세 미만	75세 이상	
배제	830	569	1399
% within 배제	(59.3%)	(40.7%)	(100.0%)
% within 연령집단	(51.2%)	(77.6%)	(59.4%)
% of Total	(35.2%)	(24.2%)	(59.4%)
비배제	792	164	956
% within 비배제	(82.8%)	(17.2%)	(100.0%)
% within 연령집단	(48.8%)	(22.4%)	(40.6%)
% of Total	(33.6%)	(7.0%)	(40.6%)
Total	1622	733	2355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8.9%)	(31.1%)	100.0%
Pearson chi-square =146.514***			
df = 1			

먼저, <표 10-4>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노인의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75세 미만 노인 1,622명 가운데 51.2%에 해당되는 840명이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48.8%에 해당되는 792명이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75세 이상 인구 733명 가운데 77.6%인 569명이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22.4%인 164명이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5〉 성별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성별		Total
	남	여	
배제	618	781	1399
% within 배제	(44.2%)	(55.8%)	(100.0%)
% within 성별집단	(43.7%)	(83.1%)	(59.4%)
% of Total	(26.2%)	(33.2%)	(59.4%)
비배제	797	159	956
% within 비배제	(83.4%)	(16.6%)	(100.0%)
% within 성별집단	(56.3%)	(16.9%)	(40.6%)
% of Total	(33.8%)	(6.8%)	(40.6%)
Total	1415	940	2355
% within 성별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0.1%)	(39.9%)	100.0%

Pearson chi-square = 363.762***
df = 1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8-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성 1,415명 가운데 43.7%가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56.3%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 노인 940명 가운데 83.1%에 해당하는 781명이 배제를, 16.9%에 해당하는 159명이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의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노인이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8-6〉 교육수준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1148	119	132	1399
% within 배제	82.1%	8.5%	9.4%	100.0%
% within 교육집단	71.5%	41.6%	28.5%	59.4%
% of Total	48.7%	5.1%	5.6%	59.4%
비배제	458	167	331	956
% within 비배제	47.9%	17.5%	34.6%	100.0%
% within 교육집단	28.5%	58.4%	71.5%	40.6%
% of Total	19.4%	7.1%	14.1%	40.6%
Total	1606	286	463	2355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68.1%	12.2%	19.7%	100.0%

Pearson Chi-square = 317.956***
df=2

교육수준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6>과 같다. 초졸이하의 학력집단 중 71.5%, 중졸이하의 학력집단 중 41.6%, 고졸이상 인구 중 5.6%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소득배제가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전체 노인의 48.7%가 초졸 이하의 학력에 소득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인 것으로 분석돼, 노인인구에 있어 저학력과 소득배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7〉 연령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688	490	1178
% within 배제	58.4%	41.6%	100.0%
% within 연령집단	42.4%	66.8%	50.0%
% of Total	29.2%	20.8%	50.0%
비배제	934	243	1177
% within 비배제	79.4%	20.6%	100.0%
% within 연령집단	57.6%	33.2%	50.0%
% of Total	39.7%	10.3%	50.0%
Total	1622	733	2355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8.9%	31.1%	100.0%

Pearson Chi-square = 120.541***
df=1

<표 8-7>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소득영역의 배제를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75세 미만 노인 가운데 42.4%가 중위소득 기준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57.6%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66.8%가 배제를, 33.2%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75세 이상의 고령 집단에서 배제 현상이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노인 집단 가운데 75세 미만인면서 배제를 경험하지 않는 집단의 비율이 약 40%(39.7%)로 나타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보다 소득영역의 배제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8〉 성별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성별		Total
	남	녀	
배제	549	629	1178
% within 배제	46.6%	53.4%	100.0%
% within 성별	38.8%	66.9%	50.0%
% of Total	23.3%	26.7%	50.0%
비배제	866	311	1177
% within 비배제	73.6%	26.4%	100.0%
% within 성별	61.2%	33.1%	50.0%
% of Total	36.8%	13.2%	50.0%
Total	1415	940	2355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60.1%	39.9%	100.0%

Pearson Chi-square = 178.595***
df=1

성별을 기준으로 소득영역의 배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8-8>과 같다. 남성 가운데 38.8%가 배제를, 61.2%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여성노인 가운데 66.9%가 배제를, 33.1%가 비배제를 경험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배제를 경험하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9〉 교육수준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965	105	108	1178
% within 배제	81.9%	8.9%	9.2%	100.0%
% within 교육집단	60.1%	36.7%	23.3%	50.1%
% of Total	41.0%	4.5%	4.6%	50.1%
비배제	641	181	355	1177
% within 비배제	54.5%	15.4%	30.2%	100.1%
% within 교육집단	39.9%	63.3%	76.7%	50.0%
% of Total	27.2%	7.7%	15.1%	50.0%
Total	1606	286	463	2355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1%
% of Total	68.2%	12.2%	19.7%	100.1%

Pearson Chi-square = 217.329***
df=2

교육수준 별로 살펴보면 초졸이하의 학력집단의 60.1%가 소득배제를, 39.9%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중졸이하의 경우 36.7%가 배제를, 고졸이상의 경우 23.3%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어, 역시 저학력 노인이 소득영역의 배제를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10〉 소득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기준		
	B	Exp(B)	S.E.	B	Exp(B)	S.E.
성별	-1.352***	0.259	0.113	-.651***	0.522	.101
연령	.073***	1.076	0.009	.065***	1.067	.008
교육수준	-.621***	0.537	0.065	-.585***	0.557	.065
경제활동참여	-.744***	0.475	0.11	-.647***	0.524	.104
지역	-.386***	0.68	0.11	-.273***	0.761	.100
상수	-2.554***	0.078	0.701	-3.085***	0.046	639
-2LL	2504.28			2824.257		

<표 8-10>은 소득영역의 배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술했듯, 독립변수에는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던 연령, 성별, 교육수준 변수 이외에도 경제활동여부, 지역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는데,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을수록,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보여주는 승산(Exp(b))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변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 배제는 연령변수의 승산만이 1 이상으로 나타나, 연령변수의 확률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위소득 이하 배제는 성별, 경제활동참여여부, 지역 변수의 승산이 1 이상으로 분석되어, 이들 변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소득배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노인과 노동시장 배제

노인의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집단으로서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노동시장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표 8-1>에서 정의한대로, 노인의 노동시장 배제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8-11〉 연령과 노동시장 배제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1065	613	1678
% within 배제	63.5%	36.5%	100.0%
% within 연령집단	88.4%	83.7%	86.6%
% of Total	55.0%	31.6%	86.6%
비배제	140	119	259
% within 비배제	54.1%	45.9%	100.0%
% within 연령집단	11.6%	16.3%	13.4%
% of Total	7.2%	6.1%	13.4%
Total	1205	732	1937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2.2%	37.8%	100.0%

Pearson Chi-square = 8.459**
df=1

<표 8-11>은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노동시장 배제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75세 미만 노인 가운데 88.4%가 배제되었으며, 11.6%가 비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3.7%가 배제를, 16.3%가 비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노인 가운데 연령을 초월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적 분포를 살펴보면 75세 미만이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55%로 가장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8-12〉 성별과 노동시장 배제

	성별		Total
	남	여	
배제	525	1153	1678
% within 배제	31.3%	68.7%	100.0%
% within 성별	83.7%	88.0%	86.6%
% of Total	27.1%	59.5%	86.6%
비배제	102	157	259
% within 비배제	39.4%	60.6%	100.0%
% within 성별	16.3%	12.0%	13.4%
% of Total	5.3%	8.1%	13.4%
Total	627	1310	1937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32.4%	67.6%	100.0%
Pearson Chi-square = 6.716**			
df=1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배제여부를 분석한 <표 8-12>에 의하면, 남성 가운데 83.7%가, 그리고 여성노인 가운데 88%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표본 가운데 여성노인이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비율이 약 60%(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3〉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배제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1309	146	223	1678
% within 배제	78.0%	8.7%	13.3%	100.0%
% within 교육집단	89.2%	81.6%	76.9%	86.6%
% of Total	67.6%	7.5%	11.5%	86.6%
비배제	159	33	67	259
% within 비배제	61.4%	12.7%	25.9%	100.0%
% within 교육집단	10.8%	18.4%	23.1%	13.4%
% of Total	8.2%	1.7%	3.5%	13.4%
Total	1468	179	290	1937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75.8%	9.2%	15.0%	100.0%

Pearson Chi-square = 35.854***
df=2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배제 여부를 살펴보면, 초졸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89.2%, 중졸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81.6%, 고졸이상 학력집단 가운데 76.9%가 노동시장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노인은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초졸이하의 저학력에서 그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표 8-14〉 노동시장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B	Exp(B)	S.E.
성별	-.034	0.604	.095
연령	-.660***	0.517	.144
교육수준	-.504***	0.967	.158
지역	-.484***	0.616	.160
상수	3.908	49.786	.309
-2LL	1463.935		

노동시장영역 배제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8-14>와 같으며 여기서는 독립변수 가운데 경제활동 여부 변수가 생략되었다. 성별 변수를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 지역의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농촌지역 노인일수록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모든 변수에서 승산은 1미만으로 나타나 그 확률적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과 주거배제

<표 8-15>는 연령집단에 따른 주거배제 여부를 보여준다. 75세 미만 노인 가운데 19.2%가 주거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72.6%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2.7%가 주거배제를, 67.3%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거배제를 경험하는 노인보다 주거영역에서 배제되지 않은 노인의 분포가 더욱 높지만, 주거배제를 경험하는 노인 중에는 75세 미만 인구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표본에서 75세 미만 노인의 분포가 높은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8-15〉 연령과 주거 배제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311	239	550
% within 배제	56.5%	43.5%	100.0%
% within 연령집단	19.2%	32.7%	23.4%
% of Total	13.2%	10.2%	23.4%
비배제	1306	493	1799
% within 비배제	72.6%	27.4%	100.0%
% within 연령집단	80.8%	67.3%	76.6%
% of Total	55.6%	21.0%	76.6%
Total	1617	732	2349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8.8%	31.2%	100.0%

Pearson Chi-square = 50.586***
df=1

〈표 8-16〉 성별과 주거 배제

	성별		Total
	남	녀	
배제	262	288	550
% within 배제	47.6%	52.4%	100.0%
% within 성별	18.6%	30.7%	23.5%
% of Total	11.2%	12.3%	23.5%
비배제	1149	650	1799
% within 비배제	63.9%	36.1%	100.0%
% within 성별	81.4%	69.3%	76.6%
% of Total	48.9%	27.7%	76.6%
Total	1411	938	2349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60.1%	39.9%	100.0%

Pearson Chi-square = 46.272***
df=1

<표 8-16>은 성별에 따른 주거배제를 보여준다. 남성노인 가운데 18.6%가 주거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81.4%가 주거영역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 가운데 30.7%가 배제를, 69.3%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영역에서의 배제는 남성보다 여성노인에게서 더욱 높은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17> 교육수준과 주거 배제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475	41	34	550
% within 배제	86.4%	7.5%	6.2%	100.0%
% within 교육집단	29.7%	14.3%	7.3%	23.3%
% of Total	20.2%	1.7%	1.4%	23.3%
비배제	1125	245	429	1799
% within 비배제	62.5%	13.6%	23.8%	99.9%
% within 교육집단	70.3%	85.7%	92.7%	76.6%
% of Total	47.9%	10.4%	18.3%	76.6%
Total	1600	286	463	2349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68.1%	12.2%	19.7%	100.0%

Pearson Chi-square = 114.944***
df=2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29.7%가 배제를, 70.3%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중졸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14.3%가 배제를, 85.7%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고졸이상 학력 집단 가운데 7.3%가 배제를, 92.7%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어, 주거영역에

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초졸이하의 학력집단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18〉 주거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B	Exp(B)	S.E.
성별	-.506***	.603	.117
연령	.055***	1.057	.0009
교육수준	-.516***	.597	.093
경제활동참여	.446***	1.562	.122
지역	-1.111***	.329	.110
상수	-3.864***	.021	.721
-2LL	2237.192		

주거영역에서의 배제를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짓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 8-18>에 의하면, 분석에 투입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지역의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주거영역에서의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게 분석되었다. 승산비를 살펴보면 승산이 가장 높은 변수는 경제활동 참여 변수로서, 경제활동을 할수록 주거배제를 경험할 승산은 1.5배($\exp(b)=1.56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 양극단으로 이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소득 및 주거 등의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지 않는 ‘여유있는’ 노인과 다른 한편으로 주거배제를 경험하는 빈곤한 노인으로 양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령의 승산 또한 1보다 커서 확률을 높이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4. 노인과 건강배제

<표 8-19> 연령과 건강 배제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848	489	1337
% within 배제	63.4%	36.6%	100.0%
% within 연령집단	52.3%	66.8%	56.8%
% of Total	36.0%	20.8%	56.8%
비배제	774	243	1017
% within 비배제	76.1%	23.9%	100.0%
% within 연령집단	47.7%	33.2%	43.2%
% of Total	32.9%	10.3%	43.2%
Total	1622	732	2354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8.9%	31.1%	100.0%

Pearson Chi-square = 43.349***
df=1

연령집단에 따른 건강배제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8-19>에 따르면, 75세 미만 노인 중 52.3%가 건강배제를, 47.7%가 건강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 중 66.8%가 건강배제를, 33.2%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0〉 성별과 건강 배제

	성별		Total
	남	녀	
배제	684	653	1337
% within 배제	51.2%	48.8%	100.0%
% within 성별	48.3%	69.5%	56.8%
% of Total	29.1%	27.7%	56.8%
비배제	731	286	1017
% within 비배제	71.9%	28.1%	100.0%
% within 성별	51.7%	30.5%	43.2%
% of Total	31.1%	12.1%	43.2%
Total	1415	939	2354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60.2%	39.8%	100.0%

Pearson Chi-square = 103.410***
df=1

성별을 기준으로 건강배제를 분석해 보면, 남성 노인 가운데 48.3%가, 여성노인 가운데 69.5%가 건강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건강 배제의 문제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21〉 교육수준과 건강 배제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1041	127	169	1337
% within 배제	77.9%	9.5%	12.6%	100.0%
% within 교육집단	64.9%	44.4%	36.5%	56.8%
% of Total	44.2%	5.4%	7.2%	56.8%
비배제	564	159	294	1017
% within 비배제	55.5%	15.6%	28.9%	100.0%
% within 교육집단	35.1%	55.6%	63.5%	43.3%
% of Total	24.0%	6.8%	12.5%	43.3%
Total	1605	286	463	2354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68.2%	12.1%	19.7%	100.0%

Pearson Chi-square = 35.854***
df=2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배제 여부를 살펴보면, 초졸이하의 저학력 집단 가운데 64.9%, 중졸이하 집단 가운데 44.4%가, 그리고 고졸이상의 고학력 집단 가운데 36.5%가 건강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기서도 저학력 집단이 건강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22〉 건강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B	Exp(B)	S.E.
성별	-.413***	.662	.100
연령	.025***	1.025	.008
교육수준	-.496***	.609	.061
경제활동참여	-.678***	.507	.100
지역	-.006	.994	.097
상수	-.263	.768	.623
-2LL		2967.755	

건강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표 8-22>)를 살펴보면 지역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록 건강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중 승산이 1보다 큰 것은 연령변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가운데서도 특히 연령변수와 건강배제의 인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노인과 사회활동 배제

사회활동의 배제는 앞서 <표 8-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에의 참여기회와 사회단체 활동에의 참여 기회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표 8-23> 연령과 사회활동배제1(평생교육 기준)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1937	964	2901
% within 배제	66.8%	33.2%	100.0%
% within 연령집단	88.6%	88.2%	88.5%
% of Total	59.1%	29.4%	88.5%
비배제	248	129	377
% within 비배제	65.8%	34.2%	100.0%
% within 연령집단	11.4%	11.8%	11.5%
% of Total	7.6%	3.9%	11.5%
Total	2185	1093	3278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6.7%	33.3%	100.0%

Pearson Chi-square = .146

df=1

먼저, <표 8-23>은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기준으로 사회활동 배제 여부와 연령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75세 미만 노인 중 88.6%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11.4%가 참여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 중 88.2%가 참여경험이 없었으며 11.8%가 참여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교차분석에 대한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참여 기회와 연령집단의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8-24> 성별과 사회활동배제1(평생교육 기준)

	성별		Total
	남	녀	
배제	1133	1768	2901
% within 배제	39.1%	60.9%	100.0%
% within 성별	89.3%	88.0%	88.5%
% of Total	34.6%	53.9%	88.5%
비배제	136	241	377
% within 비배제	36.1%	63.9%	100.0%
% within 성별	10.7%	12.0%	11.5%
% of Total	4.1%	7.4%	11.5%
Total	1269	2009	3278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38.7%	61.3%	100.0%

Pearson Chi-square = 1.250
df=1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남성 가운데 89.3%가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었으며 10.7%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인 가운데

88%가 참여경험이 없었으며 12%가 참여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이스퀘어 검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변수 또한 평생교육 참여 여부와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8-25> 교육수준과 사회활동배제1(평생교육 기준)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2287	254	360	2901
% within 배제	78.8%	8.8%	12.4%	100.0%
% within 교육집단	89.8%	86.4%	82.4%	88.5%
% of Total	69.8%	7.7%	11.0%	88.5%
비배제	260	40	77	377
% within 비배제	69.0%	10.6%	20.4%	100.0%
% within 교육집단	10.2%	13.6%	17.6%	11.4%
% of Total	7.9%	1.2%	2.3%	11.4%
Total	2547	294	437	3278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77.7%	9.0%	13.3%	100.0%

Pearson Chi-square = 21.539***
df=2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표 8-25>에 따르면 초졸이하 가운데 89.8%가, 중졸이하 가운데 86.4%가 고졸이상 가운데 82.4%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초졸이하 가운데 10.2%가, 중졸이하 가운데 13.6%가 고졸이상 가운데 17.6%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평생교육에 참여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사회단체 활동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사회활동 배제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표 8-26> 연령과 사회활동배제2(사회참여 기준)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400	487	887
% within 배제	45.1%	54.9%	100.0%
% within 연령집단	18.3%	44.8%	27.1%
% of Total	12.2%	14.9%	27.1%
비배제	1785	600	2385
% within 비배제	74.8%	25.2%	100.0%
% within 연령집단	81.7%	55.2%	72.9%
% of Total	54.6%	18.3%	72.9%
Total	2185	1087	3272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6.8%	33.2%	100.0%
Pearson Chi-square = 257.887***			
df=1			

<표 8-26>은 연령집단별 사회단체 참여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75세 미만 노인 중 18.3%가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81.7%가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 중 44.8%가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55.2%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노인일 수록 사회단체 참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회활동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포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8-27〉 성별과 사회활동배제2(사회참여 기준)

	성별		Total
	남	녀	
배제	294	593	887
% within 배제	33.1%	66.9%	100.0%
% within 성별	23.2%	29.6%	27.1%
% of Total	9.0%	18.1%	27.1%
비배제	974	1411	2385
% within 비배제	40.8%	59.2%	100.0%
% within 성별	76.8%	70.4%	72.9%
% of Total	29.8%	43.1%	72.9%
Total	1268	2004	3272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38.8%	61.2%	100.0%

Pearson Chi-square = 16.122***
df=1

성별을 기준으로 사회활동 배제를 살펴보면, 남성 가운데 23.2%가 사회활동 배제를, 76.8%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 가운데 29.6%가 배제를, 70.4%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 노인 가운데 사회활동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8-28〉 교육수준과 사회활동배제2(사회참여 기준)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758	65	64	887
% within 배제	85.5%	7.3%	7.2%	100.0%
% within 교육집단	29.8%	22.1%	14.7%	27.2%
% of Total	23.2%	2.0%	2.0%	27.2%
비배제	1784	229	372	2385
% within 비배제	74.8%	9.6%	15.6%	100.0%
% within 교육집단	70.2%	77.9%	85.3%	72.9%
% of Total	54.5%	7.0%	11.4%	72.9%
Total	2542	294	436	3272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77.7%	9.0%	13.3%	100.0%

Pearson Chi-square = 47.260***
df=2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사회활동 배제 여부를 분석해 보면, 초졸이하 집단 가운데 29.8%가, 중졸이하 집단 가운데 22.1%가, 그리고 고졸이상 집단 가운데 14.7%가 사회활동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학력 수준이 낮을 수록 사회활동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표 8-29〉 사회활동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기준			사회참여기준		
	B	Exp(B)	S.E.	B	Exp(B)	S.E.
연령	-.034	.967	.123	.775***	2.17	.093
교육수준	-.391***	.677	.081	-.561***	.571	.079
성별	.316**	1.371	.131	.478***	1.612	.108
경제활동참여	.397***	1.487	.137	-20.911	.000	1182.925
지역	-.046	.955	.120	-.311***	.733	0.096
상수	2.432***	11.377	.244	-.680***	.507	.191
-2LL	2298.264			2747.305		

사회활동영역에서의 노인의 배제를 결정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짓분석의 결과는 <표 8-29>와 같다. 평생교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변수는 교육수준, 성별, 경제활동참여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수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승산을 고려하면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성별의 변수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수록 평생교육 기회에서 배제될 승산은 약 1.5배 커지며, 여성노인일 수록 약 1.4배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단체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 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여성일 수록, 농촌지역에 거주할 수록 사회참여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산을 고려하면, 연령 변수와 성별 변수의 승산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한 살 증가할 수록 사회참여로부터 배제될 승산이 약 2배 증가하며, 여성일수록 사회참여로부터 배제될 승산이 약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노인과 관계적 배제

관계적 배제는 가족관계와 이웃 및 친구관계로 이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8-30> 연령과 관계적 배제1(가족관계 기준)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233	178	411
% within 배제	56.7%	43.3%	100.0%
% within 연령집단	12.4%	20.3%	15.0%
% of Total	8.5%	6.5%	15.0%
비배제	1647	699	2346
% within 비배제	70.2%	29.8%	100.0%
% within 연령집단	87.6%	79.7%	85.1%
% of Total	59.7%	25.4%	85.1%
Total	1880	877	2757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8.2%	31.8%	100.0%

Pearson Chi-square = 29.444***
df=1

<표 8-30>은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배제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75세 미만 노인 가운데 12.4%가 가족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노인의 20.3%가 가족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가족관계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표 8-31〉 성별과 관계적 배제1(가족관계 기준)

	성별		Total
	남	녀	
배제	136	275	411
% within 배제	33.1%	66.9%	100.0%
% within 성별	12.3%	16.6%	14.9%
% of Total	4.9%	10.0%	14.9%
비배제	966	1380	2346
% within 비배제	41.2%	58.8%	100.0%
% within 성별	87.7%	83.4%	85.1%
% of Total	35.0%	50.1%	85.1%
Total	1102	1655	2757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39.9%	60.1%	100.0%

Pearson Chi-square = 9.531***
df=1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배제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 노인 가운데 12.3%가 가족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여성노인 가운데 16.6%가 가족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족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보다 경험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여성 노인에게서 가족관계의 배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8-32〉 교육수준과 관계적 배제1(가족관계 기준)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346	32	33	411
% within 배제	84.2%	7.8%	8.0%	100.0%
% within 교육집단	6.1%	12.7%	9.1%	14.9%
% of Total	12.5%	1.2%	1.2%	14.9%
비배제	1797	220	329	2346
% within 비배제	76.6%	9.4%	14.0%	100.0%
% within 교육집단	83.9%	87.3%	90.9%	85.1%
% of Total	65.2%	8.0%	11.9%	85.1%
Total	2143	252	362	2757
% within 교육집단	90.0%	100.0%	100.0%	100.0%
% of Total	77.7%	9.2%	13.1%	100.0%

Pearson Chi-square = 13.131***
df=2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졸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6.1%가 가족관계의 배제를 경험하고 중졸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12.7%가, 그리고 고졸이상 학력집단 가운데 9.1%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중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집단에게서 가족관계의 배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고졸이상의 고학력 노인에게서 가족관계의 배제가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이웃 및 친구와 같은 이차적 관계를 기준으로 관계 배제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표 8-33〉 연령과 관계적 배제2(이웃친구관계 기준)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373	313	686
% within 배제	54.4%	45.6%	100.0%
% within 연령집단	17.1%	28.6%	20.9%
% of Total	11.4%	9.5%	20.9%
비배제	1812	780	2592
% within 비배제	69.9%	30.1%	100.0%
% within 연령집단	82.9%	71.4%	79.1%
% of Total	55.3%	23.8%	79.1%
Total	2185	1093	3278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6.7%	33.3%	100.0%

Pearson Chi-square = 58.895***
df=1

먼저,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교차분석해 보면, 75세 미만 노인 가운데 17.1%가 이웃 및 친구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8.6%가 이웃 및 친구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령이 높은 집단의 배제 경험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8-34〉 성별과 관계적 배제2(이웃친구관계 기준)

	성별		Total
	남	여	
배제	272	414	686
% within 배제	39.7%	60.3%	100.0%
% within 성별	21.4%	20.6%	20.9%
% of Total	8.3%	12.6%	20.9%
비배제	997	1595	2592
% within 비배제	38.5%	61.5%	100.0%
% within 성별	78.6%	79.4%	79.1%
% of Total	30.4%	48.7%	79.1%
Total	1269	2009	3278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38.7%	61.3%	100.0%

Pearson Chi-square = 0.321
df=1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 노인의 21.4%가, 여성노인의 20.6%가 배제를 이웃 및 친구관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 카이스퀘어 검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5〉 교육수준과 관계적 배제2(이웃친구관계 기준)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544	64	78	686
% within 배제	79.3%	9.3%	11.4%	100.0%
% within 교육집단	21.4%	21.8%	17.8%	21.0%
% of Total	16.6%	2.0%	2.4%	21.0%
비배제	2003	230	359	2592
% within 비배제	77.3%	8.9%	13.9%	100.1%
% within 교육집단	78.6%	78.2%	82.2%	79.1%
% of Total	61.1%	7.0%	11.0%	79.1%
Total	2547	294	437	3278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77.7%	9.0%	13.3%	100.0%

Pearson Chi-square = .321
df=2

교육수준에 따른 이웃 및 친구관계 배제 여부를 살펴 보면 초졸이하 집단 가운데 21.4%, 중졸이하 집단 가운데 21.8% 그리고 고졸이상 집단 가운데 17.8%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스퀘어 검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8-36〉 관계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가족관계 기준			이웃 및 친구관계 기준		
	B	Exp(B)	S.E.	B	Exp(B)	S.E.
연령	.389***	1.476	.116	.539***	1.715	.093
교육수준	-.262***	.770	.098	-.152**	.859	.071
성별	-.094	.910	.124	.296***	1.345	.099
경제활동참여	-.537***	.584	.136	-.596***	.551	.110
지역	.039	1.040	.115	.279***	1.321	.094
상수	-1.758***	.172	.241	-1.974***	.139	.195
-2LL	2264.02			3251.845		

마지막으로 관계영역에서 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록 가족관계의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한편 승산을 고려하면 연령 변수의 승산만 1이상으로서,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가족관계의 배제를 경험할 승산이 약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및 친구관계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 수록 이웃 및 친구관계의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산을 고려하면 연령, 성별, 지역의 승산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이웃 및 친구관계의 배제를 경험할 승산이 약 1.7배 증가하며, 남성일 수록 약 1.3배, 또 도시지역에 거주할 수록 약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사회적 배제 노인계층을 위한 지원방안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 8-3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8-37> 노인과 영역별 사회적 배제

		소득		노동 시장	주거	건강	사회활동		관계		주요 개입대상
		최저 생계	중위 소득				평생 교육	사회 단체	가족 관계	이웃 친구	
연령	high										√
	low										
성별	남										
	여										√
교육수준	high										
	low										√
경제활동	경활										
	비경활										
지역	도시										
	농촌										

종합해 보면, 연령이 높은 노인일 수록 보다 다차원적 영역에서 배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경우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배제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본 분석에서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노인”으로 노동시장 배제를 정의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이 낮은 노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취업 욕구’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노동시장 배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 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서 보다 다차원적 배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성노인은 노동시장과 관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 노인 보다 높은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보다 관계적 영역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 변수는 건강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의 배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년기의 배제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 여부는 이질적인 방향성을 보였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 건강, 관계 등의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주거,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활동에서의 배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대급부 현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변수의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소득, 노동시장,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주로 관계적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노인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요인에 따라 배제를 경험하는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며,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도,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 보다 예각화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령 노인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노인 보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것은, 향후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대상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해 연령변수를 중요 변인으로 고려하여, 고령 노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여성 노인의 문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으나 주로 소득, 빈곤의 영역에 국한되어 온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 여성노인의 상대적 취약성은 소득영역을 벗어나 주거, 건강, 사회활동의 다측면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으므로, 향후 노인 주거 정책, 건강 서비스 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추진해 나갈 때 여성노인에 대한 고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또한 노인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여성노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다차원적 배제를 경험하는 현상은 교육이라는 변인이 다른 변인(예컨대 소득, 직업 등)과 깊이 관련됨으로써 다차원적 배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생애주기에 걸쳐 누적된 불평등이 노년기의 배제와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노년기 복지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9장 장애인과 사회적 배제

제1절 서론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주된 주제 중 하나였지만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저소득과 빈곤에 집중되어 있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문제는 단순히 빈곤의 문제만으로 환원되어 질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모든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다. 빈곤은 가장 명백한 권리박탈의 형태이지만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봉쇄되는 복합적인 박탈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곤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폭넓은 설명을 위해 취약계층의 다각화된 분석에 중점을 둔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연구 또한 기존 장애인집단의 일반적 특성인 빈곤화의 문제에 집중되었으나 근래에 들어 이들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 요인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접근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개인과 집단의 빈곤,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차별이 결과적 현상으로서의 빈곤문제만을 논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며 성, 민족,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관점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의 복잡한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사회적 발달을 초래하는 요인과 현상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빈곤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보다 배제와 박탈이라는

좀 더 폭넓고 광범위한 개념에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을 빈곤의 문제에서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배제 현상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노동과 소득문제, 일상생활의 지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와 의료, 그리고 교육과 가족관계, 사회활동 참여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배제를 설명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검토

1. 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에 관한 관점들

이 절에서는 장애인의 대한 차별을 이해하는 관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던 전통적 관점과 이러한 관점의 비합리성과 비윤리성을 강조하는 대항적 관점으로 나누어 장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방식과 설명방식을 두 관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장애의 개별적 모델

먼저 장애인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전통적 관점을 살펴보자. 이 관점에서는 장애자체를 한 개인이 가지는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라고 본다. 어떤 사람이든 장애를 가지게 되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짐을 의미한다. 장애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불행의 원인이므로 장애와 관련하여 생기는 모

든 문제 또한 장애인 개인의 불운일 뿐이다. 따라서 장애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없애는 것이 장애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본다.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학적 방식에 따라 수술과 치료 및 재활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을 전담하는 의료전문가와 재활전문가 등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장애를 벗어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치료나 재활의 과정에서 의학전문가들의 권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를 의학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하며 당연한 결과로 장애인들은 모든 결정을 의학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통제 하에 생활의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한다(Oliver, 1990; Barnes & Mercer, 2003).

이렇듯 전통적 관점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가지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라고 정의함으로써 개인 및 기능적 한계에 장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장애인을 환자 혹은 병자로만 인식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필요한 조건인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신체와 인지 등의 장애가 없어지지 않는 한 ‘비생산성’, ‘의존성’, ‘무가치성’ 등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지속되거나 강화되기만 할 뿐 없어질 수 없다. 능력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들의 권리제한이나 박탈의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나. 장애의 사회적 모델

장애가 신체적·인지적 한계라고 보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로

돌리는 관점이 지배적인 사회이해방식을 만들어 왔음이 사실이지만 장애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을 거부하고 장애를 차별적 인식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라고 정의하는 관점 또한 설득력을 얻으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집단의 문제를 동정과 시혜의 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비교적 최근의 대안적 사회관점을 반영하는 이해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신체적 한계를 가진 사람이 열등해질 수밖에 없는 차별적 구조와 그 열등성이 장애인으로 분류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위계관계를 형성해 장애인집단을 경제적·정치적 사회구조의 하부에 머물게 하는 사회체계가 바로 장애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 본다(Barnes et. al.,1999). 이 관점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한 개인을 비정상인으로 만드는 결정적 결함이라고 보고 그 것이 필연적으로 불행한 삶을 초래한다는 이해방식 자체가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된다.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인지적 한계일 뿐 누구나 이러한 한계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구조화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보는 것이다(Corker and Thomas, 2002).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장애인을 노동시장과 정치·문화적 장에서 배제하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에서 초래되는 문제가 바로 장애인차별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별의 책임은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개인에게서 떼어내어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사회구조로 정의하고 장애인차별의 책임을 잘못된 사회구조로 돌리면서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박탈의 문제로 이해하게 하는 이 관점은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신체적 한계로서의 손상(impairment)과 사회적 경험으로서의 장애(disability)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국제적인 장애이해방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국제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에 차별적 사회 환경이 장애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명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Thomas, 1999).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의 의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장애인의 빈곤에 중점을 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장애인이 경험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의 사회현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개념이다(강신욱 외, 2005; 문진영, 2004; 박능후와 최선미, 2001).

기존의 장애에 대한 관점은 주로 장애인 집단의 빈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을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이라고 보아왔다. 즉 장애인이 교육을 받지 못함과 취업을 하지 못함, 또 결혼을 하지 못함 등이 모두가 장애인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이해방식에는 장애문제를 유발하는 사회적 억압이나 장벽자체가 장애인 개인과 집단을 빈곤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하층계급화 시킨다는 이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요인의 역동적 관계성과 그 결과로서의 차별에 초점을 둔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장애인의 차별이 빈곤과 같은 단순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배화옥, 2008). 또한 빈곤을 포함하는 모든 배제와 박탈의 원인이 장애인이 가지는 신체적·인지적 한계뿐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빈곤’과 같이 단편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 개념이 아닌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이해방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장애인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점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의 현상

여러 학자들이 주장해 왔듯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제는 장애인의 삶의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데(O'Grady et al., 2004), 이는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ales, 1996).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주류사회 내로 편입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말살이나 유기라는 극단적인 형태로부터 격리나 주변화, 그리고 직·간접 차별을 받아왔다 (Barnes and Mercer, 2003). 태어나기 전부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법적 낙태의 대상이 되어 생존권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락사나 자살에 대한 방임 등으로 삶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 영·유아 유기나 공적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등의 형태로 삶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노골적인 차별과 사회 곳곳의 접근성 미확보로 인해 투표 등의 사회권을 보장받지 못해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차단당해 왔다. 이처럼 장애인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여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과 같은 핵심적인 생애사건들에서 모두 배제되어 왔다. 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거부와 박탈, 그리고 주변화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경험되는 것이며 사회와 문화를 초월한 글로벌한 현상이기도 하다 (Finkelstein, 1993, 2001).

제3절 지표의 구성과 측정

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지표의 영역과 영역별 지표구성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연구를 위하여 모두 8개 영역에서 배제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는 빈곤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집단의 배제가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노동과 소득, 주거, 의료의 핵심영역과 빈곤과의 직접적 관련은 적지만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되고 있는 교육, 가족,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참여의 기타영역에서 지표를 구성하였다.

노동과 소득, 주거, 의료의 핵심지표는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고 교육과 가족, 사회서비스, 사회참여는 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구와 장애인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영역의 지표인 소득과 노동, 주거, 의료 영역의 지표와 교육 영역의 지표는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그 배제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생애주기별 배제의 양상과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복지패널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9-1〉 지표의 구성영역과 선정지표

영역	선정의 의미	지표
노동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고용여부
		저소득
소득	장애인의 빈곤정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50%
주거	주거환경의 열악성	화장실사용형태
		임대료 연체 여부
의료	건강상태와 의료비용	주관적 건강상태
		자부담 의료비
교육	교육수혜정도	학력
가족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가족형태 - 혼인상태, 가족유형
		가족관계 - 가족생활만족도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사회참여	사회생활에의 만족정도	사회친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제4절 지표의 분석

1. 소득영역

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득영역별(최저생계비, 중위소득 50%) 사회적 배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 지표인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 변수를 고려하였다. 자료를 한국복지패널조사 1, 2차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분석

결과 1, 2차 패널간 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고, 고려한 두개의 핵심 지표간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가구와 그 미만인 가구로 구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그룹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는 그 이상인 가구보다 남성가구주 비율이 낮고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더 낮게 나타나고, 가구유형은 일반가구의 비율이 더 낮고 반면에 한부모가구와 기타가구(단독,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소득영역으로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4개의 변수 모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서 그 이상인 가구보다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으며, 가구주연령은 더 낮게 나타나고, 가구주 교육수준 또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비교해보면 일반가구의 비율이 낮은 반면 한부모가구와 기타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표 9-2〉 소득영역(최저생계비)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	χ^2
전체		20.94(177)	79.06(668)	
가구주 성별	남성	73.56	90.39	34.6841***
	여성	26.44	9.61	
가구주 연령	20-30대	9.46	15.98	5.2550
	40대	23.69	20.89	
	50대	24.51	25.08	
	60대 이상	42.35	38.05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8.08	4.55	50.8729***
	초졸~중졸	50.36	42.16	
	고졸	20.98	32.12	
	전문대졸 이상	10.58	21.16	
가구유형	일반가구	72.24	95.07	83.6029***
	한부모가구	2.77	0.31	
	기타가구	24.99	4.62	

* p <.05, ** p<.01, *** p < .001

〈표 9-2〉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	χ^2
전체		19.13(166)	80.87(702)	
가구주 성별	남성	70.05	87.11	28.8629***
	여성	29.95	12.89	
가구주 연령	20-30대	8.81	15.29	4.6653
	40대	22.07	20.68	
	50대	26.03	24.19	
	60대 이상	43.08	39.83	
가구주 교육	무학	16.44	6.20	41.3953***
	초졸~중졸	53.52	41.12	
	고졸	23.74	30.98	
	전문대졸 이상	6.30	21.70	
가구유형	일반가구	71.37	93.85	76.0367***
	한부모가구	2.41	0.10	
	기타가구	26.22	6.05	

* p <.05, ** p<.01, *** p < .001

〈표 9-3〉 소득영역(중위소득 50%)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χ^2
전체		34.01(287)	65.99(557)	
가구주 성별	남성	78.43	91.21	27.1297***
	여성	21.57	8.79	
가구주 연령	20-30대	6.95	18.57	50.0262***
	40대	16.61	23.99	
	50대	22.14	26.41	
	60대 이상	54.30	31.04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6.12	2.88	82.2234***
	초졸~중졸	52.79	39.29	
	고졸	21.06	34.29	
	전문대졸 이상	10.04	23.54	
가구유형	일반가구	79.47	95.86	58.1018***
	한부모가구	1.71	0.37	
	기타가구	18.82	3.76	

* p <.05, ** p<.01, *** p < .001

〈표 9-3〉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χ^2
전체		28.72(249)	71.28(619)	
가구주 성별	남성	71.47	88.83	39.5744***
	여성	28.53	11.17	
가구주 연령	20-30대	5.96	17.31	43.0793***
	40대	17.10	22.50	
	50대	20.52	26.17	
	60대 이상	56.41	34.02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7.36	4.45	91.1975***
	초졸~중졸	57.01	38.04	
	고졸	18.68	34.00	
	전문대졸 이상	6.95	23.52	
가구유형	일반가구	75.21	95.33	77.1776***
	한부모가구	1.09	0.32	
	기타가구	23.70	4.35	

* p <.05, ** p<.01, *** p < .001

〈표 9-4〉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1		model 2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종속 변수	최저생계비	0= 최저생계비 미만 1= 최저생계비 이상	중위 소득 (경상소득기준)	0= 중위소득 50% 미만 1=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변수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주의 성별	0= 남성 1= 여성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주의 성별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0= 무학 1= 초졸~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교육수준	0= 무학 1= 초졸~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경활참여여부	0= 아니오 1= 예	가구주 경활참여여부	0= 아니오 1= 예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소득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수들이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활참여여부, 거주지역으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가구주 연령과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모형(model 1)과 중위소득 50% 기준 모형(model 2)간의 분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해 보면, 우선 모형 1의 경우 여성가구주일수록 최저생계비 미만가구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가구주 경활참여여부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록 최저생계비 미만가구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 2의 경우 여성가구주일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록, 농산어촌에 거주

할 수록 중위소득 50% 미만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9-5〉 소득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변수	model 1		model 2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2.2269		-0.4099		
가구주 성별	-0.6456**	0.524	-0.5054*	0.603	
가구주 연령	0.0306**	1.031	-0.0147	0.985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중졸	1.0122**	2.752	0.9834**	2.674
	고졸	1.6094***	5.000	1.4547***	4.283
	전문대졸 이상	1.7170***	5.568	1.7949***	6.019
가구주 경찰참여여부	1.9018***	6.698	1.7346***	5.667	
거주지역	-0.5630	0.570	-0.7190**	0.487	
- 2LL	866.660		1082.803		
χ^2	149.4642*** (df =7)		223.7072*** (df =7)		
R^2	0.1378		0.1990		
max rescaled R^2	0.2389		0.3023		

* p <.05, ** p<.01, *** p < .001

〈표 9-5〉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변수	model 1		model 2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1.2130		0.1399*		
가구주 성별	-0.6625**	0.516	-0.7417**	0.476	
가구주 연령	0.0240**	1.024	-0.00955	0.991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중졸	0.4041	1.498	0.4838	1.622
	고졸	0.9006*	2.461	1.2295**	3.420
	전문대졸 이상	1.8415***	6.306	1.8625***	6.440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	1.7077***	5.516	1.3110***	3.710	
거주지역	-0.0330	0.967	-0.2880	0.750	
-2LL	847.538		1041.285		
χ^2	128.5427*** (df=7)		178.6633*** (df=7)		
R^2	0.1164		0.1580		
max rescaled R^2	0.2087		0.2496		

* p <.05, ** p<.01, *** p < .001

최저생계비 기준과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일반가구보다는 한부모나 기타가구(단독, 소년소녀가장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소득영역에 있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영역에서 고려한 핵심지표로서 최저생계비 기준과 중위소득 50% 기준은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소득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 가구주 경활참여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이 중에서 가구유형,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는 두 핵심지표간에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가구주 연령은 최저생계비 기준지표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은 중위소득 50% 기준지표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동시장 영역

장애인가구에 대한 노동영역별(가구주 취업여부, 중위 임금 및 사업소득의 60%) 사회적 배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지표인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 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1, 2차 패널간 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고, 고려한 두개의 핵심지표간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선 15세 이상 가구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5세 이상의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와 미취업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에 있어서 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구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구주가 미취업한 가구의 경우 취업하고 있는 가구보다 여성가구주 비율이 더 높고, 가구주의 연령이 더 높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임금 및 사업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임금 및 사업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는 그 이상인 가구보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고, 가구주의 연령은 더 높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15세 이상 가구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9-6〉 노동영역(고용여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15세 이상 가구주 미취업	15세 이상 가구주 취업	χ^2
전체		66.93(612)	33.07(302)	
가구주 성별	남성	52.50	78.83	59.0493***
	여성	47.50	21.17	
가구주 연령	20-30대	14.98	21.38	34.6856***
	40대	14.97	24.67	
	50대	22.37	25.79	
	60대 이상	47.67	28.16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4.94	7.26	28.0231***
	초졸~중졸	48.58	41.84	
	고졸	26.86	31.61	
	전문대졸 이상	9.62	19.30	
가구유형	일반가구	89.92	92.62	2.3740
	한부모가구	0.63	0.86	
	기타가구	9.46	6.52	

* p <.05, ** p<.01, *** p < .001

〈표 9-6〉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15세 이상 가구주 미취업	15세 이상 가구주 취업	χ^2
전체		66.61(650)	33.39(326)	
가구주 성별	남성	51.75	75.49	50.8192***
	여성	48.25	24.51	
가구주 연령	20-30대	14.26	20.74	52.2743***
	40대	13.88	25.46	
	50대	22.52	27.77	
	60대 이상	49.35	26.04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7.11	6.47	39.2571***
	초졸~중졸	48.37	40.97	
	고졸	23.60	33.39	
	전문대졸 이상	10.91	19.17	
가구유형	일반가구	89.26	92.40	2.4479
	한부모가구	0.60	0.40	
	기타가구	10.15	7.20	

* p <.05, ** p<.01, *** p < .001

〈표 9-7〉 노동영역(저소득)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미만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이상	χ^2
전체		82.20(755)	17.80(164)	
가구주 성별	남성	54.11	93.11	85.9676***
	여성	45.89	6.89	
가구주 연령	20-30대	14.63	27.97	79.7129***
	40대	15.47	30.51	
	50대	21.81	30.59	
	60대 이상	48.09	10.93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5.14	1.97	94.3060***
	초졸~중졸	50.38	26.71	
	고졸	25.54	40.92	
	전문대졸 이상	8.93	30.39	
가구유형	일반가구	89.98	94.90	4.6836
	한부모가구	0.66	0.89	
	기타가구	9.36	4.21	

* p <.05, ** p<.01, *** p < .001

〈표 9-7〉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미만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이상	χ^2
전체		83.34(813)	16.66(162)	
가구주 성별	남성	54.21	87.04	60.6437***
	여성	45.79	12.96	
가구주 연령	20-30대	13.64	30.24	97.5054***
	40대	14.98	31.59	
	50대	23.18	29.76	
	60대 이상	48.20	8.41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6.00	1.37	96.0595***
	초졸~중졸	49.64	27.18	
	고졸	24.38	39.32	
	전문대졸 이상	9.98	32.12	
가구유형	일반가구	89.23	95.68	7.6823**
	한부모가구	0.48	0.81	
	기타가구	10.29	3.52	

* p <.05, ** p<.01, *** p < .001

〈표 9-8〉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1		model 2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종속 변수	가구주 고용여부	0= 미고용 1= 고용	저소득여부	0= 60% 미만 1= 60% 이상
독립 변수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주의 성별	0= 남성 1= 여성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주의 성별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	0= 무학 1= 초졸~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교육	0= 무학 1= 초졸~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이상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또한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 변수를 핵심지표로 고려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제외한 다음 소득영역에서 고려한 독립변수들로 구성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모형간에 가구주 성별과 가구주 연령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차 조사에 대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해석해 보면, 먼저 모형 1의 경우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대도시·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구주가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학이상 졸업인 경우에는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경우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1차 조사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인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조사에서는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노동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변수	model 1		model 2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0.5694		-0.5691		
가구주 성별	-1.1833***	0.306	-2.3910***	0.092	
가구주 연령	-0.0227***	0.978	-0.0322***	0.968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중졸	0.2144	1.239	0.8186	2.267
	고졸	0.1395	1.150	1.4143*	4.113
	전문대졸 이상	0.7242**	2.063	2.1989**	9.015
거주지역	0.7406**	2.097	-0.2569	0.773	
- 2LL	1159.832		860.368		
χ^2	101.3158*** (df =6)		189.4814*** (df =6)		
R^2	0.0794		0.1429		
max rescaled R^2	0.1297		0.2838		

* p <.05, ** p<.01, *** p < .001

〈표 9-9〉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변수	model 1		model 2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0.3610		-1.0361		
가구주 성별	-0.9745***	0.377	-1.6132***	0.199	
가구주 연령	-0.0239***	0.976	-0.0342***	0.966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중졸	0.4438	1.559	1.2854	3.616
	고졸	0.5717	1.771	1.7770	5.912*
	전문대졸 이상	0.7981*	2.221	2.5003	12.187**
거주지역	0.7600**	2.138	-0.1694	0.844	
- 2LL	1241.940		878.411		
χ^2	105.8316*** (df =6)		163.5720*** (df =6)		
R^2	0.0774		0.1170		
max rescaled R^2	0.1266		0.2401		

* p <.05, ** p<.01, *** p < .001

가구주 고용여부와 임금 및 사업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 수록 노동영역에 있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영역에서 고려한 핵심지표로서 가구주 고용여부와 저소득여부 기준은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가구주 경찰참여여부를 제외하고 소득영역의 요인들과 동일하게 고려하였다. 이 중에서 가구주 성별과 연령은 두 지표간에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은 가구주 고용여부 지표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영역

주거영역별(단독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 임대료 연체여부) 사회적 배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지표인 가구주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구유형 변수를 고려하였다. 우선 화장실 사용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 조사의 경우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가구주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연체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 2차 조사 모두 임대료를 연체한 가구와 미연체한 가구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독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단독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반면에 단독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단독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

는 가구보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유형의 경우 단독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가 92.63%로 나타나고, 단독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 비율이 72.63%, 기타가구(단독, 소년소녀가장가구)이 26.31%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

〈표 9-10〉 주거영역(화장실 사용형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단독수세식 화장실 없음	단독수세식 화장실 있음	χ^2
전체		7.33(58)	92.67(728)	
가구주 성별	남성	81.75	87.88	1.8275
	여성	18.25	12.12	
가구주 연령	20-30대	3.63	15.33	14.3188**
	40대	12.12	22.04	
	50대	23.90	24.70	
	60대 이상	60.36	37.92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21.86	6.31	38.7601***
	초졸~중졸	63.42	41.43	
	고졸	11.19	31.74	
	전문대졸 이상	3.53	20.53	
가구유형	일반가구	72.63	92.63	28.4628***
	한부모가구	1.16	0.87	
	기타가구	26.21	6.50	

* p <.05, ** p<.01, *** p < .001

〈표 9-10〉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단독수세식 화장실 없음	단독수세식 화장실 있음	χ^2
전체		8.42(73)	91.58(793)	
가구주 성별	남성	79.62	84.18	1.0225
	여성	20.38	15.82	
가구주 연령	20-30대	10.55	14.41	6.6397
	40대	12.96	21.75	
	50대	22.98	24.67	
	60대 이상	53.50	39.16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20.81	7.02	34.1743***
	초졸~중졸	59.66	42.14	
	고졸	14.35	30.93	
	전문대졸 이상	5.19	19.91	
가구유형	일반가구	70.06	91.31	32.3329***
	한부모가구	1.21	0.48	
	기타가구	28.73	8.21	

* p <.05, ** p<.01, *** p < .001

〈표 9-11〉 주거영역(임대료 연체여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주거 임대료 연체함	주거 임대료 연체안함	χ^2
전체		10.28(30)	89.72(260)	
가구주 성별	남성	95.30	91.75	0.4626
	여성	4.70	8.25	
가구주 연령	20-30대	17.28	15.41	1.8556
	40대	22.27	26.91	
	50대	20.00	27.82	
	60대 이상	40.45	29.85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4.85	4.84	0.4948
	초졸~중졸	44.58	40.47	
	고졸	27.31	33.63	
	전문대졸 이상	23.26	21.06	
가구유형	일반가구	98.87	93.60	1.3641
	한부모가구	0.00	1.18	
	기타가구	1.13	5.22	

〈표 9-11〉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주거 임대료 연체함	주거 임대료 연체안함	χ^2
전체		5.80(17)	94.20(282)	
가구주 성별	남성	88.99	87.42	0.0368
	여성	11.01	12.58	
가구주 연령	20-30대	28.46	15.71	2.0864
	40대	24.12	23.94	
	50대	24.51	30.11	
	60대 이상	22.90	30.24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0.00	6.28	1.9125
	초졸~중졸	34.67	41.69	
	고졸	37.88	32.11	
	전문대졸 이상	27.46	19.92	
가구유형	일반가구	98.01	92.87	0.6821
	한부모가구	0.00	0.24	
	기타가구	1.99	6.89	

〈표 9-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1		model 2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종속 변수	단독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	0= 미사용 1= 사용	임대료 연체여부	0= 임대료 연체 1= 임대료 미연체
독립 변수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주의 성별	0= 남성 1= 여성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구주의 성별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	0= 무학 1= 초졸~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교육	0= 무학 1= 초졸~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경찰참여여부	0= 아니오 1= 예	가구주 경찰참여여부	0= 아니오 1= 예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주거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수가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찰참여여부, 거주지역으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2차조사에서 거주지역변수를 제외하고 계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변수의 경우 2차조사에서 화장실 사용형태와 임대료 연체여부에 관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추정계수의 값이 모두 음의 값으로 가구가 농산어촌에 거주할 수록 단독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13〉 주거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변수	model 1		model 2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0.5999		2.942		
가구주 성별	-0.3212	0.725	0.6093	1.839	
가구주 연령	0.0211	1.021	-0.0121	0.988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중졸	1.3836	3.989	-0.1798	0.835
	고졸	4.6350	103.028	0.1272	1.136
	전문대졸 이상	17.7473	>999.999	-0.0888	0.915
가구주 경찰참여여부	0.3476	1.416	-0.2208	0.802	
거주지역	-1.0681	0.344	0.9102	2.485	
- 2LL	66.180		192.157		
χ^2	12.5005 (df =7)		2.5479 (df =7)		
R^2	0.0412		0.0085		
max rescaled R^2	0.2063		0.0179		

〈표 9-13〉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변수	model 1		model 2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2.2187		16.8579		
가구주 성별	0.5078	1.662	-0.4105	0.663	
가구주 나이	-0.0107	0.989	0.0182	1.018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중졸	0.9820	2.670	-14.5001	<.0001
	고졸	1.2446	3.472	-14.8549	<.0001
	전문대졸 이상	16.7773	>999.999	-15.1852	<.0001
가구주 경찰참여여부	0.9533	2.594	-0.0622	0.940	
거주지역	-1.5542*	0.211	-1.7401**	0.176	
- 2LL	98.990		132.631		
χ^2	13.0083 (df =7)		9.2107 (df =7)		
R^2	0.0419		0.0298		
max rescaled R^2	0.1507		0.0844		

* p <.05, ** p<.01, *** p < .0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한부모나 단독가구일수록 주거영역에 있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다고 짐작할 수 있고, 또한 농·산·어촌의 경우 주거영역의 사회적 배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의료영역

의료영역별(주관적 건강상태, 자부담 의료비) 사회적 배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지표인 가구주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구유형 변수를 고려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1, 2차 조사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자부담 의료비의 경우 2차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차 조사 결과만 산출하였다.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으로 그룹을 나누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변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가구유형을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남성이 58.33%, 여성은 41.67%로 나타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경우 남성이 71.06%로 높고, 여성은 28.94%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또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률이 40% 이상 지출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변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성별과 연령변수가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교육수준과 가구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의료비 부담률이 40%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남성가구주비율은 높고 여성가구주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4〉 의료영역(주관적 건강 상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건강하지 않음	건강함	χ^2
전체		78.79(711)	21.21(191)	
성별	남성	58.33	71.06	10.2800**
	여성	41.67	28.94	
연령	20-30대	12.55	33.75	88.4080***
	40대	15.85	26.92	
	50대	23.35	23.58	
	60대 이상	48.25	15.76	
교육수준	무학	15.37	4.32	50.9368***
	초졸~중졸	50.30	33.98	
	고졸	23.39	41.13	
	전문대졸 이상	10.94	20.57	
가구유형	일반가구	90.17	92.65	1.2476
	한부모가구	0.70	0.76	
	기타가구	9.14	6.59	

* p <.05, ** p<.01, *** p < .001

〈표 9-15〉 의료영역(자부담 의료비)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의료비 부담 비율 40% 이상	의료비 부담 비율 40% 이하	χ^2
전체		7.83(33)	92.17(2,971)	
성별	남성	72.71	88.06	12.5916**
	여성	27.29	11.94	
연령	20-30대	10.21	14.99	21.8155**
	40대	7.15	22.69	
	50대	17.67	25.58	
	60대 이상	64.97	36.74	
교육수준	무학	9.45	7.21	6.3184
	초졸~중졸	55.56	42.88	
	고졸	17.60	30.83	
	전문대졸 이상	17.39	19.08	
가구유형	일반가구	84.02	90.82	4.9691
	한부모가구	0.00	0.90	
	기타가구	15.98	8.28	

* p <.05, ** p<.01, *** p < .001

〈표 9-15〉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건강하지 않음	건강함	χ^2
전체		77.44(745)	22.56(217)	
성별	남성	56.60	70.32	13.1415**
	여성	43.40	29.68	
연령	20-30대	12.12	31.21	74.3403***
	40대	16.15	23.30	
	50대	23.95	25.80	
	60대 이상	47.77	19.68	
교육수준	무학	15.59	7.41	30.3408***
	초졸~중졸	49.11	37.67	
	고졸	23.58	33.90	
	전문대졸 이상	11.72	21.02	
가구유형	일반가구	89.37	92.94	2.6143
	한부모가구	0.64	0.20	
	기타가구	9.99	6.87	

* p <.05, ** p<.01, *** p < .001

〈표 9-16〉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1		model 2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종속 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0= 미건강 1= 건강	자부담 의료비 부담비율	0= 40% 초과 1= 40% 이하
독립 변수	성별	0= 남성 1= 여성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		연령	
	교육수준	0= 무학 1= 초졸~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이상	교육수준	0= 무학 1= 초졸~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이상
	경활참여여부	0= 아니오 1= 예	경활참여여부	0= 아니오 1= 예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의료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수가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활참여여부, 거주지역으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1, 2차 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과 경활참여여부 변수로 나타났다. 자부담 의료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성별, 연령, 경활참여여부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일수록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부담 의료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 여성가구주일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자부담 의료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17〉 의료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변수	model 1		model 2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0.0342		5.5747***	
성별	-0.2015	0.818	-0.9110**	0.402
연령	-0.0433***	0.958	-0.0454**	0.956
교육수준	초졸~중졸	0.3715 1.450	-0.7297	0.482
	고졸	0.7454 2.107	-0.3971	0.672
	전문대졸 이상	0.7617 2.142	-0.8699	0.419
경찰참여여부	1.0146***	2.758	0.6592*	0.2979
거주지역	0.1670	1.182	0.0912	1.095
- 2LL	930.301		463.899	
χ^2	133.9347*** (df =7)		42.2035*** (df =7)	
R^2	0.1049		0.0410	
max rescaled R^2	0.1954		0.1112	

* p <.05, ** p<.01, *** p < .001

〈표 9-17〉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변수	model 1	
	$\hat{\beta}$	odds ratio
상수	1.6092**	
성별	-0.3623*	0.696
연령	-0.0408***	0.960
교육수준	초졸~중졸	-0.0818 0.921
	고졸	-0.1005 0.904
	전문대졸 이상	0.0851 1.089
경찰참여여부	-0.8592***	0.423
거주지역	-0.00165	0.998
- 2LL	1027.080	
χ^2	109.9889*** (df =7)	
R^2	0.0811	
max rescaled R^2	0.1485	

* p <.05, ** p<.01, *** p < .0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장애인 가구에서 여성 가구주 일수록, 장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일수록 의료영역에 있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다 라고 짐작할 수 있다.

5. 교육영역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에 대해서 교육수준 비교한 결과 4개의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졸 이하의 경우 비장애남성이 그 비율이 가장 낮고 장애여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장애남성이 가장 높았고 장애여성이 가장 낮았으며 그 수치는 비장애인 남성에 비해 약 6배 정도이다.

〈표 9-18〉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교육수준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교육수준	무학	1.48	7.50	6.90	21.53	772.1005***
	초졸	19.37	22.75	27.08	33.01	
	중·고졸	44.60	44.67	49.77	38.97	
	전문대졸 이상	34.54	25.08	16.24	6.49	

* p <.05, ** p<.01, *** p < .001

〈표 9-18〉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교육수준	무학	1.53	7.42	6.84	23.04	813.4891***
	초졸	19.13	23.24	28.94	33.72	
	중·고졸	44.24	44.33	47.24	35.71	
	전문대졸 이상	35.10	25.01	16.98	7.53	

* p <.05, ** p<.01, *** p < .001

6. 가족영역

가. 가족형태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에 대해서 혼인상태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성보다 유배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비장애인 여성의 경우 비장애인 남성보다 유배우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여성과 비장애인 여성의 경우 장애인일수록 유배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을 수록 장애인 여성의 유배우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9-19〉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혼인상태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전 체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인 상태	유배우	73.19	63.42	77.56	55.55	785.3809***
	사별	1.87	13.77	3.52	25.13	
	이혼/별거	3.38	4.02	5.27	6.88	
	미혼	21.56	18.78	13.64	12.44	
20 ~ 30대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인 상태	유배우	57.13	65.88	42.43	40.38	94.4400***
	사별	0.19	0.61	0.00	0.00	
	이혼/별거	1.97	2.80	4.31	4.74	
	미혼	40.72	30.71	53.27	54.89	
40 ~ 50대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인 상태	유배우	90.62	83.54	78.14	72.91	221.6019***
	사별	0.85	7.83	2.55	11.13	
	이혼/별거	5.40	7.33	9.76	12.04	
	미혼	3.13	1.30	9.56	3.92	
60대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인 상태	유배우	88.29	47.43	92.20	47.36	627.9065***
	사별	8.06	49.30	6.06	49.18	
	이혼/별거	3.34	2.77	1.01	3.12	
	미혼	0.32	0.49	0.73	0.34	

* p <.05, ** p<.01, *** p < .001

〈표 9-19〉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전 체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인 상태	유배우	71.41	63.03	77.58	57.74	749.7382***
	사별	2.07	13.89	3.38	26.25	
	이혼/별거	3.73	3.86	5.14	6.42	
	미혼	22.79	19.23	13.90	9.59	
20 ~ 30대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인 상태	유배우	57.13	68.24	40.53	47.55	117.0928***
	사별	0.03	0.30	0.00	0.00	
	이혼/별거	2.12	2.64	4.06	8.58	
	미혼	40.72	28.82	55.41	43.87	
40 ~ 50대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인 상태	유배우	89.86	83.56	80.14	76.19	175.1009***
	사별	1.02	7.78	2.61	11.43	
	이혼/별거	6.11	7.16	8.29	9.25	
	미혼	3.01	1.50	8.97	3.12	
60대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인 상태	유배우	86.68	46.70	91.63	46.91	576.1862***
	사별	9.29	50.20	5.73	49.68	
	이혼/별거	3.75	2.78	2.16	3.34	
	미혼	0.27	0.32	0.48	0.08	

* p <.05, ** p<.01, *** p < .001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가족유형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 가구보다 일반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낮지만,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 단독가구의 비율이 현저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0〉 비장애인과 장애인가구의 가족유형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일반	모자	부자	소년소녀 가장	단독	χ^2
비장애인 가구	90.27	0.45	0.36	0.16	8.74	45.8106***
장애인가구	80.87	1.56	0.53	0.34	16.70	

* p <.05, ** p<.01, *** p < .001

〈표 9-20〉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일반	모자	부자	소년소녀 가장	단독	χ^2
비장애인 가구	89.72	0.60	0.13	0.52	9.03	50.1250***
장애인가구	80.27	1.53	0.61	0.34	17.25	

* p <.05, ** p<.01, *** p < .001

나. 가족관계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에 대해서 가족생활만족도(불만족(매우불만족+불만족), 보통, 만족(매우 만족, 만족)을 비교한 결과 비장애인 남성, 비장애인 여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 여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차 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1차에서 2차로 갈수록 만족하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만족하다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여성의 경우 만족 비율 증가폭이 그룹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불만족 비율 증가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1〉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족 생활 만족 도	불만족	3.44	4.48	8.61	8.25	114.0500***
	보통	15.67	18.95	24.88	28.55	
	만족	80.89	76.57	66.50	63.20	

* p <.05, ** p<.01, *** p < .001

〈표 9-21〉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족 생활 만족 도	불만족	3.74	5.42	8.76	9.69	114.7807***
	보통	13.61	15.95	21.95	25.97	
	만족	82.65	78.63	69.29	64.34	

* p <.05, ** p<.01, *** p < .001

7. 사회서비스 영역

비장애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이용여부를 비교한 결과 비장애인 가구가 장애인 가구보다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2〉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구분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χ^2
	예	아니오	
비장애인 가구	21.50	77.51	288.0969***
장애인가구	5.37	94.63	

* p <.05, ** p<.01, *** p < .001

〈표 9-22〉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구분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χ^2
	예	아니오	
비장애인 가구	22.49	78.50	215.8103***
장애인가구	7.21	92.79	

* p <.05, ** p<.01, *** p < .001

8. 사회참여 영역

가. 사회관계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에 대해서 사회친분만족도(불만족:매우불만족+불만족), 보통, 만족(매우 만족, 만족)을 비교한 결과 비장애인 남성, 비장애인 여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 여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차 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1차에서 2차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의 경우 만족비율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3〉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사회친분만족도
비교: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 친분 만족 도	불만족	5.99	6.92	18.22	20.53	208.2787***
	보통	29.72	31.35	34.64	37.97	
	만족	64.29	61.72	47.14	41.50	

* p <.05, ** p<.01, *** p < .001

〈표 9-23〉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 친분 만족 도	불만족	4.62	4.59	14.42	14.72	156.2569***
	보통	22.01	20.86	24.26	24.05	
	만족	73.37	74.54	61.32	61.23	

* p <.05, ** p<.01, *** p < .001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에 대해서 여가생활만족도(불만족:매우불만족+불만족), 보통, 만족(매우 만족, 만족)을 비교한 결과 비장애인 남성, 비장애인 여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 여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차 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1차에서 2차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의 경우 만족비율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4〉 비장애인 남성, 여성과 장애인 남성, 여성의 여가생활만족도
비교: 한국복지패널 1차 데이터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가 생활 만족 도	불만족	31.74	34.18	44.78	47.77	84.6846***
	보통	36.93	37.60	35.03	37.43	
	만족	31.32	28.21	20.19	14.80	

* p <.05, ** p<.01, *** p < .001

〈표 9-24〉 (계속): 한국복지패널 2차 데이터

		비장애인		장애인		χ^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가 생활 만족 도	불만족	28.11	30.55	38.96	42.33	62.2897***
	보통	34.63	33.62	34.59	33.92	
	만족	37.26	35.84	26.45	23.76	

* p <.05, ** p<.01, *** p < .001

9. 사회적 배제 영역별 장애인 연령 분포

핵심지표로 고려한 소득, 노동, 주거, 의료 영역별 배제, 비배제 집단과 장애인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 그리고 교육지표인 교육수준과 장애인 연령대 간의 교차분석을 시행한 핵심지표 중에서 소득영역의 중위50% 기준, 노동영역의 가구주 취업여부와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주거 영역의 주거 임대료 연체여부, 의료영역의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배제, 비배제 집단과 장애인 연령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준과 장애인 연령대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소득영역에서 40 - 59세인 장년층과 60세 이상인 노년층이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노동의 경우 역시 가구주의 취업

여부와 중위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모두의 경우에서 40 - 59세인 장년층과 60세 이상인 노년층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그 비율이 높다. 주거의 경우 주거 임대료 연체여부에 있어 연체함으로 답한 이들 중 40 - 59세인 장년층과 60세 이상인 노년층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꽤널 2차 데이터에서는 40 - 59세인 장년층이 60세 이상인 노년층보다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18 - 39세의 청년층의 주거임대료 연체유무에서 연체한다고 대답한 이의 비율이 전체의 20%정도로 40 - 59세인 장년층과 60세 이상인 노년층보다 낮게 나타나기는 하나 주목할만한 비율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18 - 59세의 청·장년 층이 전체 임대료 연체비율의 약 57%, 그리고 노년층이 약 39%를 차지하여 성인장애인가구의 대부분이 주거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의 건강하지 않음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40 - 59세에도 약 38%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17세 이하의 아동층에서 또한 유의한 숫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교육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초졸 이하의 학력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8 - 39세의 청년층에서는 중·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40 - 59세의 장년층은 초졸이하, 중·고졸, 그리고 전문대졸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초졸이하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9-25〉 사회적 배제 영역별 장애인 연령 분포: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단위: %]

구분		장애인 연령				χ^2	
		17세 이하	18~39세	40~59세	60세 이상		
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4.22	15.24	44.21	36.34	2.7698
		이상	5.44	17.06	38.10	39.41	
	중위소득 50%	미만	2.52	12.62	36.59	48.26	25.2323***
		이상	6.61	18.85	41.07	33.48	
노동	가구주 취업여부	미취업	0.00	5.10	38.72	56.18	46.0765***
		취업	0.00	18.34	51.88	29.77	
	중위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미만	6.15	14.05	34.84	44.95	89.8222***
		이상	0.00	27.97	61.10	10.93	
주거	단독주택 화장실 사용여부	미사용	4.63	12.52	37.72	45.14	2.4145
		사용	5.15	17.76	41.26	35.83	
	주거 임대료 연체여부	연체함	3.83	17.68	39.26	39.23	9.7666*
		연체안함	7.78	16.69	44.58	30.95	
의료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3.89	12.31	37.56	46.24	90.0413***
		건강함	9.32	30.88	45.58	14.22	
	의료비 부담 비율 40%	이상	1.91	13.11	34.43	50.54	7.6101
		미만	5.30	17.95	42.30	34.45	
교육수준		무학	0.48	4.54	14.44	80.54	195.1969***
		초졸	4.63	2.12	43.99	49.25	
		중·고졸	4.90	25.03	43.77	26.30	
		전문대졸 이상	0.00	32.74	42.11	25.14	

* p <.05, ** p<.01, *** p < .001

〈표 9-25〉 (계속):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단위: %]

구분			장애인 연령				χ^2
			17세 이하	18~39세	40~59세	60세 이상	
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3.02	12.28	44.82	39.89	3.2912
		이상	3.96	15.62	38.49	41.93	
	중위소득 50%	미만	1.66	10.13	35.23	52.98	26.5883***
		이상	4.67	16.99	41.74	36.59	
노동	가구주 취업여부	미취업	0.00	4.99	36.38	58.63	51.4428***
		취업	0.00	12.99	58.84	28.17	
	중위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미만	4.54	12.60	34.98	47.89	100.7463***
		이상	0.00	24.94	65.69	9.37	
주거	단독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	미사용	0.83	16.97	39.85	42.36	2.8023
		사용	4.47	14.81	42.50	38.21	
	주거 임대료 연체여부	연체함	3.59	14.52	38.95	42.93	15.8647**
		연체안함	5.39	16.02	49.44	29.15	
의료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2.52	11.36	37.75	48.38	74.9700***
		건강함	7.97	24.80	46.90	20.33	
교육수준		무학	0.86	3.37	10.43	85.33	242.0802***
		초졸	5.26	1.79	40.22	52.73	
		중·고졸	3.32	21.94	47.68	27.06	
		전문대졸 이상	0.00	32.62	46.09	21.29	

* p <.05, ** p<.01, *** p < .001

제5절 정책적 제언

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의 양상

가. 사회 주요 영역으로부터의 배제

이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장애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노동, 소득, 주거, 그리고 의료의 4개 핵심영역 모두에서 장애인의 배제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을수록 그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거에서는 한부모와 단독가구일수록 또한 농·산·어촌의 경우 배제의 정도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장애 인구의 분절화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의 주요 핵심영역에서 장애인의 배제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시사점을 드러낸다. 바로 장애인구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그 배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장애남성보다는 장애여성이 또한 청년층보다는 장년층과 노년층이 배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경우 초졸이하의 비장애인구와 장애인의 그룹간 비교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비장애인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비교에서 장애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장애인구가 비장애인구보다 그 비율이 낮으며 장애인구 내에서도 장애여성의 비율이 장애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난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남성의 유배우율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며 이는 장애여성의 유배우율이 장애남성의 그 것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가족생활만족도에서도 비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 장애남성, 장애여성의 순으로 장애여성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장애인구내 비교, 즉 장애남성과의 비교에서도 훨씬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가생활만족도와 사회친분만족도 역시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장애남성, 비장애여성, 장애남성, 장애여성의 순으로 만족도를 보이며 장애여성의 만족도는 만족도가 낮은 장애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 점은 장애여성의 경우 만족도는 가장 낮지만 1, 2차 조사를 거치면서 만족비율의 증가폭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참여 정도가 조금만 증가해도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함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배제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의 중증도 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애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주거빈곤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김태완 등이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빈곤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중증장애가구가 경증장애가구보다 주거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 각 주요영역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장애의 중증도 등 다른 사회적 특성들에 의해 심화된다. 장애인구의 경험자체는 성과 나이 그리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별화되어 동일그룹으로 인식되는 장애인구의 분절화를 야기한다.

2. 정책적 제언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은 노동시장, 소득, 주거, 의료, 교육, 가족, 사회적 참여 등 사회 주요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제의

양상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배제의 문제가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또는 특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여러 측면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며 동일 집단이라 하더라도 성과 연령 등 다른 사회적 특징들에 의해 심화된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과정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연구는 생애 각 단계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제의 양태를 분석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하여 각 연령대의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특정시기에 이루어지는 단편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지원정책을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동시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근원적인 기회의 박탈과 그 결과 발생하는 자원 및 권리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기회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기회균등화 정책과 불균등한 자원배분을 보상하기 위한 사후적 보상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강신욱, 2006). 이와 함께 심화된 형태로 배제를 경험하는 장애인구의 내부 집단들을 위한 특별한 고려 또한 있어야 한다. 장애여성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애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각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들의 복지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배제의 구체적 영역에서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소득영역의 경우 장애연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노동영역의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의 중증장애인 지원책과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등과

같은 경증장애인 지원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주거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분을 무주택 장애인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등의 현재의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 입주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서비스혜택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등의 특별지원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 전생애주기를 통해 지원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는 교육이라 볼 수 있는데 교육영역에서의 지원은 장애로 인해 교육의 첫단계에서부터 그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고등학교까지의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등의 고등교육으로 원만히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시절 박탈당한 교육의 기회를 평생교육과 같은 대안적 통로를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도록 그 지원책을 다각화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계획에 있는 장애유아 무상교육과 특수교육의 고등학교과정까지의 의무교육화 등을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등과 같은 특별지원제도를 확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일 것이다. 가족영역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등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책과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과 같이 장애인가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다양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투표소나 문화시설 등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문화바우처 등을 통한 장애인의 직·간접적 문화활동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 여러분야의 참여도 증대를 위해 음성서비스와 점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문자를 보급·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성을 높이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을 지원·보급해야 할 것이다.

제10장 아동과 사회적 배제

제1절 서론

아동은 장애인, 노인, 여성과 함께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된 취약집단으로 분류된다. 아동은 거의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되고, 아동의 입장에서 복지가 제공되기보다 공급자인 성인의 시각에서 제공되며, 아동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빈곤율이 높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아동 중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은 이중의 배제를 겪게 된다. 빈곤아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이나 권리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서 영양, 교육, 정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박탈을 경험한다. 이러한 박탈은 비행, 10대 임신, 각종 중독 등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받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탈빈곤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서는 예방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권 및 아동권 등을 그동안 상당히 향상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1990년 UN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공포됨에 따라서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었다. CRC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CRC가 잘 준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따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권리협약이 공포되

었다는 것 자체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갖고 있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유교적 이념이 사회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오면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인 혜택에서 제외되고 어른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어떠한 유형의 아동이 어느 영역에서 배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신장되고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이 배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절 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할 때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접근한다(Room, 1995). 이러한 차원에는 정치적 자원, 사회적 차원, 참여적 차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차원을 아동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성장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동의 배제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차원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는 매우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 편수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아동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에 대해서 합의된 것도 없고,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거시지표를 사용하거나, 사례조사를 통해서 배제의 결과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1〉 아동의 사회적 배제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 방법	대상	주요 지표(차원)
Buchanan, A.	2006	문헌 고찰	13세 이하 영국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율 • 보육시설 보급정도 • 교육: 접근성, 학업성취도, 품행장애, 교육수준 • 건강: 영아사망율 • 가족 및 아동보호: 가족지원여부
김재엽 ·노충래 ·최수찬 ·조준범	2005	문헌 고찰	위기 아동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경제활동(취업율, 실업율) • 아르바이트 업종 • 아르바이트시 임금비수령 경험여부 • 아르바이트 관련 제도 및 법적 장치 • 가출 경험 • 아르바이트의 학업피해
Ambrosio, J & Gradin, C.	2003	패널자료 2차 분석	스페인과 이태리의 전체인구와 아동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 ①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가구에 사는 인구비율 ② 주거, 공공요금 지체가구비율 • 기본생활보장: ③ 고기, 생선, 닭고기 등을 2일에 1회 먹지 못하는 인구 비율 ④ 옷을 사지 못하는 인구비율 ⑤ 1주간 휴가비용이 없는 인구비율 • 주거상태: ⑥ 목욕탕이 없는 인구비율 ⑦ 습기 찬 곳에 사는 인구비율 ⑧ 좁은 공간에 사는 인구비율 • 내구성 소비재: ⑨ 자동차 없는 인구비율 ⑩ TV 없는 인구비율 ⑪ 컬러TV 없는 인구비율 • 소득(빈곤율)
Klasen, S.	2001	문헌고찰	영국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 학력, 수학성적
Ridge, T & Millar J.	2000	사례조사 (16명)	공공보호 빈곤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 • 사회관계

제3절 아동의 사회적 배제 실태

1. 아동의 사회적 배제 측정지표

아동이 사회적 배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속한 가구의 상황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아동의 배제 실태가 분석되는 작업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본 고에서는 배제영역을 핵심지표와 부가지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핵심지표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로서 아동의 경우도 사용하였다. 단, 아동의 경우는 핵심지표의 대상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고, 부가지표는 18세 미만 아동가구 및 아동 당사자의 배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와 2차 및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배제실태 파악을 위해 선정된 영역과 지표는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핵심지표에는 다른 대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개의 소득영역(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50% 기준), 노동시장영역(취업여부), 주거영역(단독 수세식 화장실 여부), 의료영역(주관적 건강상태)이 포함된다. 부가지표에는 아동을 위한 사교육비 수준, 학교생활 적응수준, 자존감 수준 등이 포함된다.

〈표 10-2〉 아동의 사회적 배제 측정지표

구분	지표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조작적 정의
핵심지표 (18세 미만 가구주)	소득영역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50% 미만
	노동시장영역	• 15세이상 가구주 미취업 • 중위임금 및 중위사업소득의 60% 미만
	주거영역	• 단독주택 화장실 없음 • 임대료 연체여부
	의료영역	•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 자부담 의료비가 가구소득의 40% 이상
고유지표 (부가지표) (18세 미만 아동)	사교육비*	• '07년 월평균 사교육비 22만원 미만
	학교생활적응도**	• 낮은 학교생활 적응도 (평균 2.5 미만)
	자존감**	• 낮은 자존감 (평균 2.5 미만)

*: '07년 전체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으로 집계되어 이를 기준으로 사회적 배제 및 비배제 집단을 구분함.

** : 학교생활적응도와 자존감은 4점 척도로 측정되어 항목의 평균이 중간미만인 2.5 미만을 배제 및 비배제의 기준선으로 하였음.

2. 아동의 사회적 배제 실태

가. 핵심지표 영역에서의 아동의 사회적 배제 실태

1) 소득영역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영역별(최저생계비, 중위소득 50%) 사회적 배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지표인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 변수를 고려하였다. 자료를 한국복지패널조사 1,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하였고, 분석결과 1, 2차 패널간 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고려한 두개의 핵심지표간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가구와 그 미만인 가구로 구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그룹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 비율은 각 4.98%이고(2차 조사: 4.59%), 여성가구주 비율은 36.88%(2차 조사: 32.26%)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면서, 아동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인 여성가구주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을 비교해 보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경우 20~30대는 4.42%(2차 조사: 4.24%)인 반면, 60대 이상인 가구는 28.17%(2차 조사: 28.57%)로 고연령일수록 배제의 위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경우 중졸이하가 25.44%(2차 조사: 22.95%)인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1.94%(2차 조사: 2.44%)로 저학력 일수록 배제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유형은 일반가구의 경우가 배제 될 가능성이 낮고, 한부모가구와 기타가구(소년소녀가정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가구는 소득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율이 무려 65.59%(2차 조사: 59.57%)나 되어 과반수 이상이 배제의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소득영역으로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4개의 변수가 모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서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으며(남성 대비 여성, 1차 조사: 7.09%, 41.83%, 2차 조사: 7.96%, 36.44%), 가구주연령은 더 높게 나타나고, 가구주 교육수준 또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비교해보면 일반가구의 비율이 낮은 반면 한부모가구와 기타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와 거의 유사한 분포형태를 보인다.

종합하면 아동가구의 소득영역의 경우 배제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여

성가구주 가구, 고연령 가구, 저학력 가구, 해체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년도별로도 거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영역(최저생계비)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구분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	합계 (사례수)	χ^2
사례수		(229)	(2,775)	(3,004)	
전체		7.62	92.38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4.98	95.02	100.00 (2,754)	330.6609***
	여성	36.88	63.12	100.00 (240)	
가구주 연령	20-30대	4.42	95.58	100.00 (1,399)	105.1478***
	40대	8.39	91.61	100.00 (1,307)	
	50대	12.75	87.25	100.00 (169)	
	60대 이상	28.17	71.83	100.00 (129)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25.44	74.56	100.00 (388)	237.3590***
	고졸이하	8.25	91.75	100.00 (1,266)	
	전문대졸 이상	1.94	98.06	100.00 (1,350)	
가구유 형	일반가구	5.91	94.09	100.00 (2,850)	256.3278***
	한부모가구	35.15	64.85	100.00 (133)	
	기타가구	65.59	34.41	100.00 (21)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영역(최저생계비)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구분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	합계	χ^2
사례수		(196)	(2,613)	(2,809)	
전체		6.97	93.03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4.59	95.41	100.00 (2,568)	260.6364***
	여성	32.26	67.74	100.00 (241)	
가구주 연령	20-30대	4.24	95.76	100.00 (1,350)	116.6442***
	40대	6.89	93.11	100.00 (1,180)	
	50대	14.04	85.96	100.00 (155)	
	60대 이상	28.57	71.43	100.00 (124)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22.95	77.05	100.00 (364)	183.2460***
	고졸이하	6.85	93.15	100.00 (1,190)	
	전문대졸 이상	2.44	97.56	100.00 (1,255)	
가구유형	일반가구	5.27	94.73	100.00 (2,665)	247.1463***
	한부모가구	34.74	65.26	100.00 (119)	
	기타가구	56.57	43.43	100.00 (25)	

* $p < .05$, ** $p < .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표 10-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영역(중위소득 50%)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구분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합계	χ^2
사례수		(299)	(2,705)	(3,004)	
전체		9.95	90.05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7.09	92.91	100.00 (2,754)	307.7744***
	여성	41.83	58.17	100.00 (250)	
가구주 연령	20-30대	6.23	93.77	100.00 (1,399)	223.9313***
	40대	9.70	90.30	100.00 (1,307)	
	50대	14.87	85.13	100.00 (169)	
	60대 이상	47.03	52.97	100.00 (129)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32.16	67.84	100.00 (388)	264.2377***
	고졸이하	9.41	90.59	100.00 (1,266)	
	전문대졸 이상	4.14	95.86	100.00 (1,350)	
가구 유형	일반가구	8.09	91.91	100.00 (2,850)	284.1534***
	한부모가구	36.97	63.03	100.00 (133)	
	기타가구	93.48	6.52	100.00 (21)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영역(중위소득 50%)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구분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 이상	합계		χ^2
사례수		(292)	(2,517)	(2,809)		
전체		10.40	89.60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7.96	92.04	100.00	(2,568)	191.9070***
	여성	36.44	63.56	100.00	(241)	
가구주 연령	20-30대	6.04	93.96	100.00	(1,350)	213.0368***
	40대	10.87	89.13	100.00	(1,180)	
	50대	15.52	84.48	100.00	(155)	
	60대 이상	47.29	52.71	100.00	(124)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34.00	66.00	100.00	(364)	260.7939***
	고졸이하	9.01	90.99	100.00	(1,190)	
	전문대졸 이상	4.89	95.11	100.00	(1,255)	
가구 유형	일반가구	9.00	91.00	100.00	(2,665)	185.8988***
	한부모가구	26.58	73.42	100.00	(119)	
	기타가구	84.90	15.10	100.00	(25)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다음으로 소득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들이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여부, 거주지역 등으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10-7〉 소득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1 (최저생계비 기준)		model 2 (중위소득 50% 기준)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종속 변수	최저생계비	0= 최저생계비 이상 1=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 소득 (경상소득기준)	0= 중위소득 50% 이상 1= 중위소득 50% 미만
독립 변수	가구주 성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성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연령	실제 연령	가구주 연령	실제 연령
	가구주 교육	0=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교육	0=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경제활동참여 여부	0= 예 1= 아니오	가구주 경제활동참여 여부	0= 예 1= 아니오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분석결과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모형(model 1)과 중위 소득 50% 기준 모형(model 2)간의 분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해 보면, 우선 모형 1을 통해 가구주가 여성이면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교육 수준이 낮거나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의 경우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가구가 농산어촌에 거주할 수록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차 조사

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단 2차 조사에서는 모형 2에서 거주지역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 년도 모두에서 연령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연령별 사회적 배제여부 상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표 10-8〉 소득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조사)

변수	model 1 (최저생계비)		model 2 (중위소득 50%)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1.4757**		-2.3644***	
가구주 성별	1.1332***	3.106	0.9909***	2.694
가구주 연령	-0.0146	0.985	0.0102	1.010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1.0402***	0.353	-1.0290***	0.357
전문대졸 이상	-2.2012***	0.111	-1.5059***	0.222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	1.8554***	6.394	1.9585***	7.089
가구유형	1.2126***	3.362	1.3481***	3.850
거주지역	0.2529	1.288	0.4986*	1.646
-2LL	1620.996		1950.802	
χ^2	425.5329*** (df=7)		490.3030*** (df=6)	
R^2	0.1618		0.1840	
max rescaled R^2	0.3305		0.3317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9〉 소득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차 조사)

변수	model 1 (최저생계비)		model 2 (중위소득 50%)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2.2190***		-1.9991***		
가구주 성별	0.9315***	2.538	0.7018***	2.017	
가구주 연령	-0.00365	0.996	0.00608	1.006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0.9136***	0.401	-1.1167***	0.327
	전문대졸 이상	-1.6249***	0.197	-1.4987***	0.223
경제활동참여여부	1.6954***	5.449	2.0398***	7.689	
가구유형	1.4055***	4.078	0.7949**	2.214	
거주지역	0.1852	1.203	0.4288	1.535	
- 2LL		1.203		1876.488	
χ^2		295.8044*** (df =7)		357.2233*** (df =7)	
R^2		0.1424		0.1743	
max rescaled R^2		0.2996		0.3039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최저생계비 기준과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일반가구보다는 한부모나 기타가구(소년소녀가정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소득영역에 있어 아동가구의 사회적 배제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영역에서 고려한 핵심지표로서 최저생계비 기준과 중위소득 50% 기준은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소득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이 중에서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는 두 핵심지표간에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거주지역은 중위소득 50% 관련기준지표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차 조사에 한함).

2) 노동시장영역

아동가구에 대한 노동영역별(가구주 취업여부, 중위 임금 및 사업소득의 60%) 사회적 배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지표인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 변수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1, 2차 패널간 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우선 15세 이상 가구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5세 이상의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와 미취업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에 있어서 두 그룹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구주가 미취업한 가구의 경우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6.44%(2차 조사: 6.55%)로 여성 29.87%(2차 조사: 32.98%)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 가구주의 연령의 경우 가구주가 미취업한 가구의 경우는 20~30대는 3.02%(2차 조사: 4.25%)로 매우 낮은 반면, 60대 이상의 미취업율은 57.88%(2차 조사: 56.5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주가 미취업한 가구의 경우는 고졸이하 중졸이하가 25.76%(2차 조사: 27.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졸이하로 7.98%(2차 조사: 7.49%), 전문대졸 이상 4.06%(2차 조사: 4.53%)의 순을 보이고 있다. 즉, 저학력일수록 미취업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유형은 일반가구비율이 낮고(1차: 7.52%; 2차: 7.74%) 반대로 한부모

가구(1차: 15.77%; 2차: 20.15%)나 기타(소년소녀가정 가구)가구(1차: 77.35%; 2차: 71.28%)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영역(고용여부)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구분		15세 이상 가구주 미취업	15세 이상 가구주 취업	합계	χ^2
사례수		(230)	(2,506)	(2,736)	
전체		8.40	91.6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6.44	93.56	100.00 (2,508)	149.2966***
	여성	29.87	70.13	100.00 (228)	
가구주 연령	20-30대	3.02	96.98	100.00 (1,274)	442.2974***
	40대	7.95	92.05	100.00 (1,191)	
	50대	17.92	82.08	100.00 (154)	
	60대 이상	57.88	42.12	100.00 (117)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25.76	74.24	100.00 (353)	169.5589***
	고졸이하	7.68	92.32	100.00 (1,153)	
	전문대졸 이상	4.06	95.94	100.00 (1,230)	
가구 유형	일반가구	7.52	92.48	100.00 (2,594)	132.9057***
	한부모가구	15.77	84.23	100.00 (122)	
	기타가구	77.35	22.65	100.00 (20)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영역(고용여부)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구분		15세 이상 가구주 미취업	15세 이상 가구주 취업	합계	χ^2
사례수		(224)	(2,315)	(2,539)	
전체		8.82	91.18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6.55	93.45	100.00 (2,321)	173.1607***
	여성	32.98	67.02	100.00 (218)	
가구주 연령	20-30대	4.25	95.75	100.00 (1,221)	366.4825***
	40대	7.80	92.20	100.00 (1,067)	
	50대	18.31	81.69	100.00 (140)	
	60대 이상	56.59	43.41	100.00 (111)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27.98	72.02	100.00 (329)	178.4588***
	고졸이하	7.49	92.51	100.00 (1,076)	
	전문대졸이상	4.53	95.47	100.00 (1,134)	
가구 유형	일반가구	7.74	92.26	100.00 (2,409)	128.8107***
	한부모가구	20.15	79.85	100.00 (108)	
	기타가구	71.28	28.72	100.00 (22)	

* p < .05, ** p < .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중위 임금 및 사업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면 임금 및 사업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는 남성가구주에 비해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고(1차 남: 11.97%, 여: 59.50%; 2차 남: 13.44%; 여: 62.61%), 가구주의 연령은 더 높으며(60대 이상, 1차: 90.84%, 2차: 93.93%),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더 낮고(중졸, 1차: 52.21%, 2차: 55.86%),

가구유형은 일반가구비율이 낮고 반대로 한부모가구나 기타(소년소녀가정 가구)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5세 이상 가구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특히 가구 유형 중에서는 기타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0-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영역(중위임금 및 중위사업소득)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구분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미만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이상	합계	χ^2
사례수		(436)	(2,300)	(2,736)	
전체		15.93	84.07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11.97	88.03	100.00 (2,508)	352.5870***
	여성	59.50	40.50	100.00 (228)	
가구주 연령	20-30대	7.61	92.39	100.00 (1,274)	593.5263***
	40대	15.17	84.83	100.00 (1,191)	
	50대	33.00	67.00	100.00 (154)	
	60대 이상	90.84	9.16	100.00 (117)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52.21	47.79	100.00 (353)	427.0592***
	고졸이하	14.65	85.35	100.00 (1,153)	
	전문대졸 이상	6.70	93.30	100.00 (1,230)	
가구유형	일반가구	13.92	86.08	100.00 (2,594)	189.6586***
	한부모가구	45.23	54.77	100.00 (122)	
	기타가구	100.00	0.00	100.00 (20)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영역(중위임금 및 중위사업소득)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구분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미만	중위 임금 및 중위 사업소득의 60% 이상	합계	χ^2
사례수		(449)	(2,090)	(2,539)	
전체		17.68	82.32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13.44	86.56	100.00 (2,321)	331.5228***
	여성	62.61	37.39	100.00 (218)	
가구주 연령	20-30대	7.79	92.21	100.00 (1,221)	589.1879***
	40대	17.70	82.30	100.00 (1,067)	
	50대	42.51	57.49	100.00 (140)	
	60대 이상	93.93	6.07	100.00 (111)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55.86	44.14	100.00 (329)	402.3844***
	고졸이하	15.98	84.02	100.00 (1,076)	
	전문대졸 이상	8.18	91.82	100.00 (1,134)	
가구유형	일반가구	15.58	84.42	100.00 (2,409)	169.9358***
	한부모가구	48.11	51.89	100.00 (108)	
	기타가구	96.04	3.96	100.00 (22)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한편,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 변수가 핵심지표로 고려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제외하고 소득영역에서 고려한 독립변수들로 구성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10-14〉 노동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1 (취업여부)		model 2 (근로 및 사업소득)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종속 변수	고용여부	0= 고용 1= 미고용	저소득여부	0= 60% 이상 1= 60% 미만
독립 변수	가구주 성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성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연령	실제 연령	가구주 연령	실제 연령
	가구주 교육	0=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교육	0=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 구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 가구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두 모형 모두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그리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차 조사에 대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해석해 보면, 먼저 모형 1의 경우 가구주가 여성이고, 연령이 많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졸에 비해서 전문대졸의 경우, 가구주가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의 경우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즉, 가구주가 여성이고, 가구주 연령이 많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가구주가 미취업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5〉 노동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조사)

변수	model 1 (취업여부)		model 2 (근로 및 사업소득)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6.2999***		-5.1877***		
가구주 성별	1.1181***	3.059	1.6765***	5.347	
가구주 연령	0.0910***	1.095	0.0960***	1.101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0.2426	0.785	-0.9859***	0.373
	전문대졸 이상	-0.5793*	0.560	-1.4283***	0.240
가구유형	0.4321	1.540	0.9001***	2.460	
거주지역	-0.4317	0.649	0.1178	1.125	
-2LL	1576.683		2399.277		
χ^2	307.0788*** (df =6)		657.4093*** (df =6)		
R^2	0.1195		0.2386		
max rescaled R^2	0.2491		0.3786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16〉 노동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차 조사)

변수	model 1 (취업여부)		model 2 (근로 및 사업소득)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5.6157***		-5.4415***	
가구주 성별	1.1734***	3.233	1.7053***	5.503
가구주 연령	0.0798***	1.083	0.1048***	1.110
가구주 고졸	-0.4973*	0.608	-0.9730***	0.378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0.6415**	0.526	-1.2508***	0.286
가구유형	0.6030*	1.828	0.8585***	2.360
거주지역	-0.4717	0.624	0.00698	1.007
-2LL	1515.693		2367.980	
χ^2	254.3252*** (df =6)		417.4308*** (df =6)	
R^2	0.1238		0.2585	
max rescaled R^2	0.2489		0.3924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가구주 고용여부와 임금 및 사업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주가 여성이고, 연령이 많을수록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영역에 있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영역에서 고려한 핵심지표로서 가구주 고용여부와 저소득여부 기준은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영역의 배제를 결정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가구유형은 1차의 취업여부 모

형을 제외한 다른 모델에서는 유의하여 일반가구에 비하여 결손가족의 배제의 위험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거영역

주거영역별(단독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 임대료 연체여부) 사회적 배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지표인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 변수를 고려하였다. 우선 화장실 사용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유형이 그룹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임대료 연체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만이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2차 조사에서는 가구유형만이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독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단독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가구주인 비율이 높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유형은 한부모가구나 기타 가구(소년소녀가정 가구)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2%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10-1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영역(단독수세식 화장실)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구분		단독수세식 화장실 없음	단독수세식 화장실 있음	합계	χ^2
사례수		(44)	(2,768)	(2,812)	
전체		1.56	98.44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1.36	98.64	100.00 (2,595)	8.2819**
	여성	3.87	96.13	100.00 (217)	
가구주 연령	20-30대	0.90	99.10	100.00 (1,309)	62.3762***
	40대	1.09	98.91	100.00 (1,230)	
	50대	4.81	95.19	100.00 (152)	
	60대 이상	9.21	90.79	100.00 (121)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8.70	91.30	100.00 (350)	134.9462***
	고졸이하	0.85	99.15	100.00 (1,175)	
	전문대졸 이상	0.25	99.75	100.00 (1,287)	
가구 유형	일반가구	1.38	98.62	100.00 (2,678)	52.1361***
	한부모가구	2.13	97.87	100.00 (114)	
	기타가구	21.51	78.49	100.00 (20)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영역(단독수세식 화장실)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구분		단독수세식 화장실 없음	단독수세식 화장실 있음	합계	χ^2
사례수		(54)	(2,742)	(2,796)	
전체		1.93	98.07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1.72	98.28	100.00 (2,556)	7.7933**
	여성	4.31	95.69	100.00 (240)	
가구주 연령	20-30대	1.42	98.58	100.00 (1,342)	44.7620***
	40대	1.48	98.52	100.00 (1,175)	
	50대	3.79	96.21	100.00 (155)	
	60대 이상	9.65	90.35	100.00 (124)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8.69	91.31	100.00 (364)	102.9857***
	고졸이하	1.39	98.61	100.00 (1,180)	
	전문대졸 이상	0.49	99.51	100.00 (1,252)	
가구유형	일반가구	1.73	98.27	100.00 (2,654)	35.6347***
	한부모가구	3.27	96.73	100.00 (117)	
	기타가구	18.10	81.90	100.00 (25)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주거 임대료 연체여부에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만 유의하였다. 주거임대료는 고졸이하의 경우 연체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1차 조사). 성, 연령, 가구유형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1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영역(임대료 연체여부)의 사회적 배제 정도 (1차 조사)

구분		주거 임대료 연체함	주거 임대료 연체안함	합계	χ^2
사례수		(102)	(1,032)	(1,134)	
전체		9.02	90.98	100.00	761.9686***
가구주 성별	남성	8.72	91.28	100.00 (1,068)	2.0104
	여성	13.87	86.13	100.00 (66)	
가구주 연령	20-30대	7.05	92.95	100.00 (483)	5.7519
	40대	11.11	88.89	100.00 (541)	
	50대	6.23	93.77	100.00 (64)	
	60대 이상	8.95	91.05	100.00 (46)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11.27	88.73	100.00 (141)	18.6521***
	고졸이하	12.66	87.34	100.00 (478)	
	전문대졸 이상	5.02	94.98	100.00 (515)	
가구 유형	일반가구	9.12	90.88	100.00 (1,095)	1.6049
	한부모가구	4.39	95.61	100.00 (34)	
	기타가구	19.86	80.14	100.00 (5)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2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거영역(임대료 연체여부)의 사회적 배제 정도 (2차 조사)

구분		주거 임대료 연체함	주거 임대료 연체안함	합계		χ^2
사례수		(79)	(1,115)	(1,194)		
전체		6.63	93.37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6.32	93.68	100.00	(1,123)	2.8049
	여성	11.43	88.57	100.00	(71)	
가구주 연령	20-30대	5.96	94.04	100.00	(561)	2.0937
	40대	6.73	93.27	100.00	(520)	
	50대	10.21	89.79	100.00	(74)	
	60대 이상	8.12	91.88	100.00	(39)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10.67	89.33	100.00	(132)	5.19021
	고졸이하	6.99	93.01	100.00	(527)	
	전문대졸 이상	5.27	94.73	100.00	(535)	
가구 유형	일반가구	6.24	93.76	100.00	(1,151)	9.3937**
	한부모가구	15.26	84.74	100.00	(38)	
	기타가구	29.68	70.32	100.00	(5)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주거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수가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여부, 거주지역으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10-21〉 주거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1 (단독수세식 화장실)		model 2 (임대료 연체)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종속 변수	단독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	0= 사용 1= 미사용	임대료 연체여부	0= 임대료 미연체 1= 임대료 연체
독립 변수	가구주 성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성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연령	실제 연령	가구주 연령	실제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0=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교육	0=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여부	0= 예 1= 아니오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여부	0= 예 1= 아니오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 구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 타가구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 시 1= 농산어촌

분석결과 단독수세식 화장실 여부에서는 1차 조사에서는 어떠한 요인도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과 거주지역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중졸이하에 비해서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단독수세식 화장실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낮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서 농산어촌 가구의 사회적 배제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2차 조사에서도 동일하다.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여부, 가구유형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2차 조사의 경우는 단독수세식 화장실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졸이 고졸 및 전문대졸 가구주에 비해 수

세식 화장실에서의 배제 확률이 높았고, 농산어촌 거주가구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가구주에 비해서 배제될 확률이 높았다. 임대료 연체에 있어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여부, 거주지역이 유의하였다. 여성가구주, 저연령, 중졸이하, 경제활동 비참여 가구주, 농산어촌 가구주의 경우가 주거임대료 연체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0-22〉 주거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조사)

변수	model 1 (단독수세식 화장실)		model 2 (임대료 연체)	
	$\hat{\beta}$	<i>odds ratio</i>	$\hat{\beta}$	<i>odds ratio</i>
상수	-4.5050		-2.0346*	
가구주 성별	0.5505	1.734	0.6406	1.898
가구주 연령	0.00926	1.009	-0.00495	0.995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1.2359	0.291	0.2543	1.290
전문대졸 이상	-17.5969	<0.001	-0.7417	0.476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	0.5118	1.668	0.6538	1.923
가구유형	-0.7182	0.488	-1.3097	0.270
거주지역	0.8458	2.330	0.1957	1.216
-2LL	73.519		687.103	
χ^2	11.3513 (<i>df</i> =7)		25.6628*** (<i>df</i> =7)	
R^2	0.0134		0.0300	
max rescaled R^2	0.1602		0.0538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23〉 주거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차 조사)

변수	model 1 (단독수세식 화장실)		model 2 (임대료 연체)		
	$\hat{\beta}$	odds ratio	$\hat{\beta}$	odds ratio	
상수	-3.0738***		1.1337***		
가구주 성별	-0.2814	0.755	0.4835**	1.622	
가구주 연령	0.00815	1.008	-0.0151**	0.985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1.7282***	0.178	-0.3442*	0.709
	전문대졸 이상	-2.6954***	0.068	-0.2374	0.789
경제활동참여여부	0.0140	1.014	0.4196**	1.521	
가구유형	0.8086	2.245	0.3726	1.451	
거주지역	1.3178***	3.735	0.9474***	2.579	
-2LL	534.766		3760.901		
χ^2	83.6896*** (df =7)		63.9229*** (df =7)		
R^2	0.0380		0.0323		
max rescaled R^2	0.1756		0.0394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특히 지표 중에서 단독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고, 농산어촌에 사는 가구일 경우 주거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았다. 임대료 연체에 있어서는 여성가구주, 저연령자, 저학력자, 농산어촌 거주자가 불리한 상황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4) 의료영역

의료영역별(주관적 건강상태, 자부담 의료비) 사회적 배제 정도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지표인 가구주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구유형 변수를 고려하였다. 자부담 의료비의 경우 2차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차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관적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동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룹을 나누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 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 모든 변수에서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이 남성가구주는 19.00%(2차 조사: 26.77%)에 비해서 여성가구주 비율이 48.10(2차 조사: 64.6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는 가구의 경우 20~30대는 13.73%(2차 조사: 22.09%)이고 60대 이상은 68.75%(2차 조사: 78.90%)로 연령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고연령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비율이 많았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룹의 경우 중졸이하가 51.26%(3차 조사: 61.58%), 고졸이하가 21.50%이고(2차 조사: 30.43%), 전문대졸 이상이 12.78%(2차 조사: 20.48%)로 나타나,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유형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에 있어서 일반가구의 비율은 낮고(20.26%, 28.38%) 한부모가구(36.08%, 55.67%)나 기타가구(84.54%, 84.22%)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가구의 경우는 조부모가 소년소녀 가장과 함께 사는 조손가족인데 거의 대부분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 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의 시급하게 요청된다.

〈표 10-24〉 의료영역(주관적 건강 상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1차 조사)

구분		건강하지 않음	건강함	합계		χ^2
사례수		(587)	(2,150)	(2,737)		
전체		21.44	78.56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19.00	81.00	100.00	(2,509)	105.1021***
	여성	48.10	51.90	100.00	(228)	
가구주 연령	20-30대	13.73	86.27	100.00	(1,274)	228.2533***
	40대	22.83	77.17	100.00	(1,191)	
	50대	38.17	61.83	100.00	(154)	
	60대 이상	68.75	31.25	100.00	(118)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51.26	48.74	100.00	(353)	241.3308***
	고졸이하	21.50	78.50	100.00	(1,154)	
	전문대졸 이상	12.78	87.22	100.00	(1,230)	
가구 유형	일반가구	20.26	79.74	100.00	(2,595)	64.1328***
	한부모가구	36.08	63.92	100.00	(122)	
	기타가구	84.54	0.14	100.00	(120)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25〉 의료영역(주관적 건강 상태)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2차 조사)

구분		건강하지 않음	건강함	합계		χ^2
사례수		(762)	(1,777)	(2,539)		
전체		30.01	69.99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26.77	73.23	100.00	(2,321)	136.0624***
	여성	64.63	35.37	100.00	(218)	
가구주 연령	20-30대	22.09	77.91	100.00	(1,220)	185.0179***
	40대	31.72	68.28	100.00	(1,067)	
	50대	47.16	52.84	100.00	(140)	
	60대 이상	78.90	21.10	100.00	(112)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61.58	38.42	100.00	(329)	205.2512***
	고졸이하	30.43	69.57	100.00	(1,076)	
	전문대졸 이상	20.48	79.52	100.00	(1,134)	
가구 유형	일반가구	28.38	71.62	100.00	(2,409)	67.9765***
	한부모가구	55.67	44.33	100.00	(108)	
	기타가구	84.22	15.78	100.00	(22)	

* p < .05, ** p < .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전체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의료비 지출액의 백분율[(의료비/전체소비지출총액 - 식료품비)×100]로 산정한 자부담의료비의 경우 2차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조사결과로만 제시하였는데, 분석결과 가구주 연령과 교육수준만이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그룹은 연령면에서는 고연령, 교육수준에서는 저교육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아동가구의 경우 소수(1.10%)만이 의료비 부담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고 있었다. 성별, 가구유형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기서 해석상 주의를 요하는 점은 여성이나 결손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아동가족의 경우 지출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여 의료비 부담의 비중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적은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표 10-26〉 의료영역(자부담 의료비)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1차 조사)

구분		의료비 부담 비율 40% 초과	의료비 부담 비율 40% 이하	합계		χ^2
사례수		(33)	(2,971)	(3,004)		
전체		1.10	98.90	100.00		
가구주 성별	남성	1.01	98.99	100.00	(2,754)	2.2256
	여성	2.04	97.96	100.00	(240)	
가구주 연령	20-30대	0.75	99.25	100.00	(1,399)	14.5061**
	40대	0.99	99.01	100.00	(1,308)	
	50대	2.96	97.04	100.00	(168)	
	60대 이상	3.61	96.39	100.00	(129)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이하	2.80	97.20	100.00	(388)	16.6824**
	고졸이하	1.31	98.69	100.00	(1,266)	
	전문대졸 이상	0.41	99.59	100.00	(1,350)	
가구 유형	일반가구	1.12	98.88	100.00	(2,850)	0.3009
	한부모가구	0.89	99.11	100.00	(133)	
	기타가구	0.00	100.00	100.00	(21)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의료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수가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여부, 거주지역으로 구성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27〉 의료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1 (주관적 건강상태)		model 2 (자부담 의료비 비율)	
	내용	설명	내용	설명
종속 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0= 미건강 1= 건강	자부담 의료비 비율	0= 40% 초과 1= 40% 이하
독립 변수	가구주 성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성	0= 남성 1= 여성
	가구주 연령	실제 연령	가구주 연령	실제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0=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교육	0=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여부	0= 예 1= 아니오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여부	0= 예 1= 아니오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model 1)로 한 모형에서 1, 2차 조사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여부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

해서 가구주가 여성이고, 가구주 연령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았다. 2차 조사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일반가구에 비해 한부모 가구 및 기타 가구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 의료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model 2)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이상 졸업인 경우와 경제활동참여여부 변수만이 자부담 의료비 40% 초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인 가구주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2차 조사의 결과는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하였는데, 여성 가구주, 고연령, 중졸이하, 경제활동 미참여, 결손가구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많았다. 지역별 차이는 없었다.

〈표 10-28〉 의료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조사)

변수	model 1 (주관적 건강상태)		model 2 (자부담의료비 비율)	
	$\hat{\beta}$	<i>odds ratio</i>	$\hat{\beta}$	<i>odds ratio</i>
상수	-2.3601***		-4.8817***	
가구주 성별	0.5619***	1.754	0.1017	1.107
가구주 연령	0.0391***	1.040	0.0163	1.016
가구주 고졸	-0.7430***	0.476	-0.2517	0.778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1.1929***	0.303	-1.3543*	0.258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	1.0700***	2.916	1.2544**	3.506
가구유형	0.3333	1.396	-1.1698	0.310
거주지역	0.0760	1.079	0.2243	1.251
-2LL	2843.353		363.870	
χ^2	352.6783*** (<i>df</i> =7)		27.2252*** (<i>df</i> =7)	
R^2	0.1360		0.0112	
max rescaled R^2	0.1964		0.0802	

* $p < .05$, ** $p < .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1차 데이터

〈표 10-29〉 의료영역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차 조사)

변수	model 1 (주관적 건강상태)		
	$\hat{\beta}$	odds ratio	
상수	-1.9526***		
가구주 성별	0.8549***	2.351	
가구주 연령	0.0413***	1.042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0.7155***	0.489
	전문대졸 이상	-1.0566***	0.348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여부	0.6519***	1.919	
가구유형	0.4727*	1.604	
거주지역	-0.3858	0.680	
- 2LL	3103.113		
χ^2	264.1460*** (df =7)		
R^2	0.1402		
max rescaled R^2	0.1856		

* p <.05, ** p<.01, *** p < .001

* 한국복지패널자료 2차 데이터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아동가구에서 가구주가 여성이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으며,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영역에 있어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유형은 불안정한 결과를 보여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나. 고유지표 영역에서의 아동의 사회적 배제 실태

아동영역에서의 고유지표로 사교육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 아동의 자존감 3지표를 선정하였다. 사교육비는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을 기준으로 평균 22만원 미만과 그 이상으로 나누어 배제와 비배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도와 자존감은 1차 부가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학교생활적응은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1, 2는 부정적 응답이고 3, 4는 긍정적 응답임), 자존감은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2 지표는 문항을 합해서 평균을 구한 뒤 2.5미만의 경우는 배제집단으로 2.5이상은 비배제집단으로 하였다.

1) 사교육비

사교육비에 있어서 아동의 학력과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아동이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가 사교육비에서의 배제비율이 높았고, 가구유형별로는 한부모 및 기타 가구유형 아동의 경우가 배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한부모 및 기타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체 평균미만인 경우가 72.42%나 되어 대부분이 배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학력별로는 중학교 재학아동이 사교육비에서의 배제가 가장 낮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저학년과 고학년은 교육의 투자가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 오히려 중간수준이 중학생에 대한 투자를 가족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아동의 성별,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3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교육비의 사회적 배제의 정도 (2차 조사)

구분		사교육비 22만원 미만	사교육비 22만원 이상	합계		χ^2
사례수		(974)	(1,013)	(1,987)		
전체		49.04	50.96	100.00		0.7352
아동 성별	남	50.04	49.96	100.00	(1,045)	0.8891
	여	47.92	52.08	100.00	(942)	
아동 학력 수준	초등학교 재학	53.64	46.36	100.00	(1,130)	55.5003***
	중학교 재학	33.84	66.16	100.00	(461)	
	고등학교 재학	53.62	46.38	100.00	(396)	
가구 유형	일반가구	48.12	51.88	100.00	(1,912)	17.0777***
	한부모,기타가구	72.42	27.58	100.00	(75)	
거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48.48	51.52	100.00	(1,843)	3.2123
	농산어촌	56.23	43.77	100.00	(1,444)	

사교육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해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정의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사교육비영역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력, 가구형태로 파악되었다. 중학생에 비해서 초등학생이, 그리고 일반가구에 비해서 한부모 및 기타 가구가 사교육비에서의 배제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아동의 성, 거주지역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31〉 사교육비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내용	설명
종속변수	사교육비	0= 22만원 이상 1= 22만원 미만
독립변수	아동의 성별	0= 남 1= 여
	학력수준	0= 초등학교 재학 1= 중학교 재학 2= 고등학교 재학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표 10-32〉 사교육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부가조사)

변수	model 1		
	$\hat{\beta}$	odds ratio	
상수	0.1237		
아동 성별	-0.0810	0.922	
아동 학력수준	중학교 재학	-0.8179***	0.441
	고등학교 재학	-0.00154	0.998
가구유형	1.0547***	2.871	
거주지역	0.3273	1.387	
- 2LL	2753.377		
χ^2	77.9093*** (df =5)		
R^2	0.0465		
max rescaled R^2	0.0571		

종합하면 사교육비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결손가족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집단을 위한 사교육 기회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교생활적응도

학교생활적응도는 1차 부가조사의 대상인 초등학교 4~6학년 재학 아동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적응도 문항은 총 9개로 여기에는 등이 포함된다. 문항에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내가 비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수업이나 자율학습시간에 허락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등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서는 문항을 합하여 평균을 내었다. 문항 합산시 부정적인 문항은 역순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도록 하였다. 배제의 기준은 중간값인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소수만이 학교생활적응도에서 사회적 배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학교생활적응도에서의 사회적 배제정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가구유형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 결과 남아가 여자보다 학교생활적응도에서 배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남아는 5.24%인데 비해, 여아는 2.03%이다. 가구유형별로는 배제된 집단의 비율이 일반가구는 3.35%인데 비해서 한부모 및 기타가구의 배제비율이 8.8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0-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학교생활적응도 사회적 배제의 정도
(1차 부가조사)

구분		학교생활 적응도 2.5 미만	학교생활 적응도 2.5 이상	합계		χ^2
사례수		(30)	(784)	(814)		
전체		3.74	96.26	100.00		
아동 성별	남	5.24	94.76	100.00	(432)	5.8111*
	여	2.03	97.97	100.00	(382)	
가구 유형	일반가구	3.35	96.65	100.00	(756)	4.4146*
	한부모, 기타가구	8.80	91.20	100.00	(58)	
거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3.83	96.17	100.00	(757)	0.2572
	농산어촌	2.50	97.50	100.00	(57)	

주: 학교생활적응도 평균 - 3.26

다음에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기서도 아동의 성과 가구유형이 유의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도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한부모가구 및 기타 가구 아동이 사회적 배제율이 높았다. 따라서 남자아동과 결손가족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10-34〉 학교생활적응도 영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내용	설명
종속변수	학교생활적응도	0= 2.5 이상 1= 2.5 미만
독립변수	아동의 성별	0= 남 1= 여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표 10-35〉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부가조사)

변수	model 1	
	β	<i>odds ratio</i>
상수	-2.9868***	
아동 성별	-0.9716*	0.378
가구유형	1.0114*	2.750
거주지역	-0.3916	0.676
- 2LL		259.606
χ^2		9.5757* (df =3)
R^2		0.0128
max rescaled R^2		0.0434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생활적응에서의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있는 아동이 반정도 되므로 다각적인 지원 및 정책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자존감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존감에서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였다. 자존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3개로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뛰든지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등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서는 문항을 합하여 평균을 내었다. 문항 합산시 부정적인 문항은 역순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도록 하였다. 배제의 기준은 중간값인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도 1차 부가조사 대상인 초등학교 4-6학년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자존감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긍정적인 비율이 88.55%로 대부분의 아동이 자존감 면에서 낮은 사회적 배제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11.5%를 넘는 아동이 자존감이 낮아 이러한 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자존감은 성, 가구유형,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0-3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존감 사회적 배제의 정도
(1차 부가조사)

구분		자존감 2.5 미만	자존감 2.5 이상	합계	χ^2
사례수		(93)	(719)	(812)	
전체		11.45	88.55	100.00	
아동 성별	남	9.46	90.54	100.00 (429)	3.5510
	여	13.68	86.32	100.00 (383)	
가구 유형	일반가구	11.06	88.94	100.00 (754)	1.5408
	한부모, 기타가구	16.43	83.57	100.00 (58)	
거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11.13	88.87	100.00 (755)	1.0233
	농산어촌	15.55	84.45	100.00 (57)	

주: 자존감 평균- 2.97

이번에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분석 결과, 자존감 모델은 유의하지 않았고, 어떠한 변수도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37〉 자존감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model	
	내용	설명
종속변수	자존감	0= 2.5 이상 1= 2.5 미만
독립변수	아동의 성별	0= 남 1= 여
	가구유형	0= 일반가구 1=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거주지역	0= 대도시, 중소도시 1= 농산어촌

〈표 10-38〉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차 부가조사)

변수	model 1	
	$\hat{\beta}$	<i>odds ratio</i>
상수	-2.3266***	
아동 성별	0.4147	1.514
가구유형	0.4653	1.593
거주지역	0.3646	1.440
$-2LL$	577.699	
χ^2	5.8286 (<i>df</i> =3)	
R^2	0.0078	
max rescaled R^2	0.0145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아동은 자존감에서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고, 집단별로 자존감의 배제 수준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아직까지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집단이 특정집단에 몰려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4절 정책적 제언

이상에서 아동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살펴보았다. 핵심지표로써 소득, 노동시장, 주거, 의료 영역을 살펴보았고, 고유지표로써 사교육비, 학교생활적응도, 자존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동가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핵심지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여성가구주, 고연령, 저학력, 한부모 및 기타가족(결손가족) 가구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각 핵심지표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고유지표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핵심영역에서보다는 집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사교육비 영역에서 아동의 학력과 가구유형이 유의하여 초등 및 고등학생과 결손가족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적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도와 자존감 영역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다만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학교생활적응도가 낮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아동집단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이 속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와 결손 가족 중 소년소녀가정인 조손세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90%나 넘는 대부분의 아동가족은 비배제 상태인데 비해서, 이러한 아동가족은 상당수가 배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구소득이 낮은 여성가구주 가구 및 소년소녀가정 가구(조손세대)에 대한 지원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물질적 빈곤은 다른 주거 및 의료 분야에서의 빈곤을 초래하므로 물질적 빈곤에

서 벗어나도록 하는 탈빈곤 정책이 필요하다. 최대의 탈빈곤 정책은 취업 지원이 되겠으나,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취업이 가능한 가구도 상당수 있겠으나, 취업이 어려운 조손세대의 경우는 취업이 어려우므로 기초생활이 유지되도록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정위탁 지원제도 등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가족의 탈사회적 배제 위해서 보충급여나 특별 수당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이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취약집단의 경우 사회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2개의 부가지표에서는 배제의 결과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동 중 10%미만의 소수만이 배제되고 있었고, 대부분은 가족의 물리적 상황과 무관하게 사회적 적응 및 개인적 자존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배제 상태가 지속되면 아직까지는 별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현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심리적인 침체는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resilience(적응유연성)를 낮추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배제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핵심지표에서 드러나 배제 집단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동 및 아동이 속한 가족의 사회심리적인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제11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양상의 역동성과 다차원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 계층의 내부구성과 배제의 동태적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의 축을 마련하였다. 경제적 자원의 결핍에 집중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부족과 자원 결핍의 동태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동태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 박탈이나 수입의 부족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물질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과정이나 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 자체보다는 기제 혹은 과정의 배제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의 결핍을 기존의 경제적 측면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즉 개인의 생계유지와 이의 충족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족 뿐 만 아니라 노동영역, 의료영역, 주거영역 등 다양한 자원의 부재 혹은 결핍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 개념의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은 사회적 배제를 경제, 노동,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는 필수적인 자원 부족 현상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과 다차원성에 기반한 배제의 현황 및 과정을 파악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제 대상별 세부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경험적 측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연구의 핵심을 이루던 소득빈곤의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근로,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대상별 분석을 바탕으로

각 영역과 대상에 대한 핵심지표와 고유지표를 생산하고 생산된 지표를 기초로 사회적 배제 현황을 소개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동태성 분석은 복지패널조사 등 각 영역별로 선정한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각 영역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각 영역의 핵심지표들은 차후 대상별 분석에 적용되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부족에 직면해 있는 대상들의 다차원적인 배제 현상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과 다차원성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각 영역별·대상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지표(최저생계비, 중위소득 50%)를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2003년 이후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그 변화폭은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분배지수인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별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개인들이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수준이 개선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지속성을 통해 살펴볼 때는 3년중 1년 이상 절대빈곤율 이하의 경우가 6~7%, 2년 이상 절대빈곤율 이하가 4%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문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전체 근로가능인구집단 중 많은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전체 고용률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실업률은 2007년 3.0%를 나타내는 등 빠른 감소치를 보이며 외환위기 이전으로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비노동 집단이 존재하지만, 실망실업 등으로 인해 상당수 인구 집단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노동으로부터의 배제 문제는 결국 가구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직결된다.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동태적으로 살펴 보면 빈곤율의 증가속도에 비해 근로빈곤층의 증가율은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이후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유연한 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료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의료비과부담 지출비율, 규범적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미충족의료,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의 4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정도를 살펴보았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4가지 건강영역의 불평등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건강 영역의 의료적 배제가 다른 차원의 사회적 배제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거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물리적 주거빈곤과 경제적 주거빈곤의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주거배제는 완화되고 있으나,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임대료 연체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계층에 따라 감소폭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감소정도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거배제를 보여주는 지표인 홈리스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쪽방 거주인, 그리고 지하거주 가구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주거로부터 심각하게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의 배제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의 경우 고령의 노인일 수록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배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

은 노인의 경우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배제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특성 요인에 따라 배제를 경험하는 영역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 또한 노인 집단 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보다 예각화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장애가 가지는 신체적 제한으로 인하여 다른 여타 인구집단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첨예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노동, 소득, 주거, 그리고 의료의 4개 핵심 영역 모두에서 장애인의 배제는 뚜렷이 나타나며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한부모와 단독가구일 때 그 정도가 보다 심하게 나타났다.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점과 더불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배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장애 인구의 분절화 현상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집단 내에서의 배제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통합 지원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노인, 장애인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 지칭되는 아동의 경우 거의 모든 사회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되고 아동보다는 성인의 입장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개입이 빈곤의 예방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분석 결과 아동가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여성가구주, 고연령, 저학력, 결손가족 가구주의 아동들로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소득, 노동, 의료, 주거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배제의 심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사

회적 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고유지표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영역에서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결혼가족의 경우 배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집단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한 사교육 기회의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배제를 보여주는 또 다른 고유지표인 학교생활적응도와 자존감의 경우 아동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나 아동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전통적 빈곤 집단과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학계에서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에 집중하게 되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이 가지는 이론적 장점인 한 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결핍, 자원들 간의 관계성 그리고 이에 대한 동태적 접근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빈곤 논의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상당 부분 이론적 논의에 그쳐 사회적 배제의 경험적이고 실태적인 측면이 간과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 드러나는 대표적 영역인 소득, 노동, 주거, 의료 등의 영역과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 각 영역과 대상의 경험적 실태 파악을 위해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들의 동태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분석에 집중하였으며, 대표적 사회적 배제 대상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배제 현상들의 다차원성 분석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 영역과 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최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배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구,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2000년 이후 새로운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것은 연

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차후 세밀화되고 분화된 보다 다양한 사회적 배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는 대표적 사회 배제 계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신욱·김안나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이병희, 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추이 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강신욱, 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호, pp9-32.
- 국가인권위원회, 2008,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_____,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 _____, 2003,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 국토연구원, 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 김수정, 2008, 「우리나라 성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안나, 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가을/겨울:227-330
- 김욱,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 14호, pp.97-118.
- 김태완 외, 2007, 『2007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박지혜, 2008,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한 장애인 가구의 주거빈곤 실태 및 함의」, 제1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남원석·전홍규, 2004, 「사회적 배제와 주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19호,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185-219.
- 박영미, 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권 4호, pp11-41.
- 배미애, 2007,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4집 1호, pp151-191.
- 배지연·노병일·곽현근·유현숙, 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33호, pp.7-28.
- 배화옥, 2008,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제1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서병수, 2005,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21-741.
- 손낙구, 2008,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 신호성, 김명기, 김진숙, 2004, 「가구 소득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보건행정학회지, 14(2), pp.17-33.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4권, pp178-208.
- 양봉민, 김진현, 이태진, 김윤희, 김정희, 최숙자, 2006, 『건강보험의 목표 보장률 및 실현 방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Vol.21, pp.319-339.
-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1991, 『빈곤론』, 나남출판사.
- 이정우, 1997, 『소득분배론』, 비봉사.
- 이준구, 200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 정경희 외,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건강형평성 측정 방법론』.
- 허순임, 신호성, 강민아, 김태일, 김창보, 2007,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ngus Cameron, 2006,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social inclusion and exce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3): 396-404
- Barnes, C, et al., 1999,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 Barnes, C., and Mercer, G, 2003, *Disability: key concept*. Polity.
- Corker, M. and Thomas, C, 2002, "A journey around the social model" in M. Corker and T. Shakespeare (eds) *Disability / Postmodernity: Embodying Disability Theory*. Continuum.
- David G. Mayes, Jos Berghman, Robert Salais (eds.), 2001,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ward Elgar.
- EuroHealthNet, 2003, *Health, poverty and social inclusion in Europe: EuroHealthNet*.
- Finkelstein, V, 2001, "A personal journey into disability politics", *The Disability Studies Archive UK*, www.leeds.ac.uk/disability_studies/archiveuk accessed 22 March 2004.
- Graham H, 2000, *Understanding health inequalitie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Hales, G, 1996, *Beyond Disability: Towards an Enabling Society*. London: Sage.
- Jehoel-Gijsbers, G., Vrooman, C, 2007, *Explaining social exclusion. A theoretical model tested in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scp*.
- Maurice Blanc, 1998, "Social integration and exclusion in France: some introductory remarks from a Social transaction perspective." *Housing studies*, 13(6): 7811-792.
- O'Grady et. al., 2004,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the consequential experience of justicible problems", *Disability & Society* 19(3)
- OECD, 2008, *Growing Unequal-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London: Macmillan.
- Peace, R, 2001, "Social Exclusion : A Concept in Need of Definition?",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Issue 16, July 2001
- Reijnveld, S. A., Verheij, R. A., de Bakker, D. H, 2000, The impact of area deprivation on differences in health: does the choice of the geographical classification matter?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4(4), pp.306-313.
- Room. G, 1999. "Social exclusion, solidarit and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199. 8: 166-174
- Siciliani, L., Hurst, J, 2005, "Tackling excessive waiting times for elective surgery: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in 12 OECD countries". *Health policy*, 72, pp.201-215.
- Silver, Hilary,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33(5~6): 531-578.

Tamsma N, Berman PC, 2005, The role of the health care sector in tackl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European Health Management Association

Thomas, C, 1999, Female Forms: Experiencing and Understanding Disabi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Whitehead M, 1992,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Int J Health Service 22(3):429-445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미정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8,000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김유경	14,000
연구 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5,000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08-23-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미정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미정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미정
연구 08-24-1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미정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미정
연구 08-24-5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미정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미정
연구 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미정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11)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육구 측정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i>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삼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